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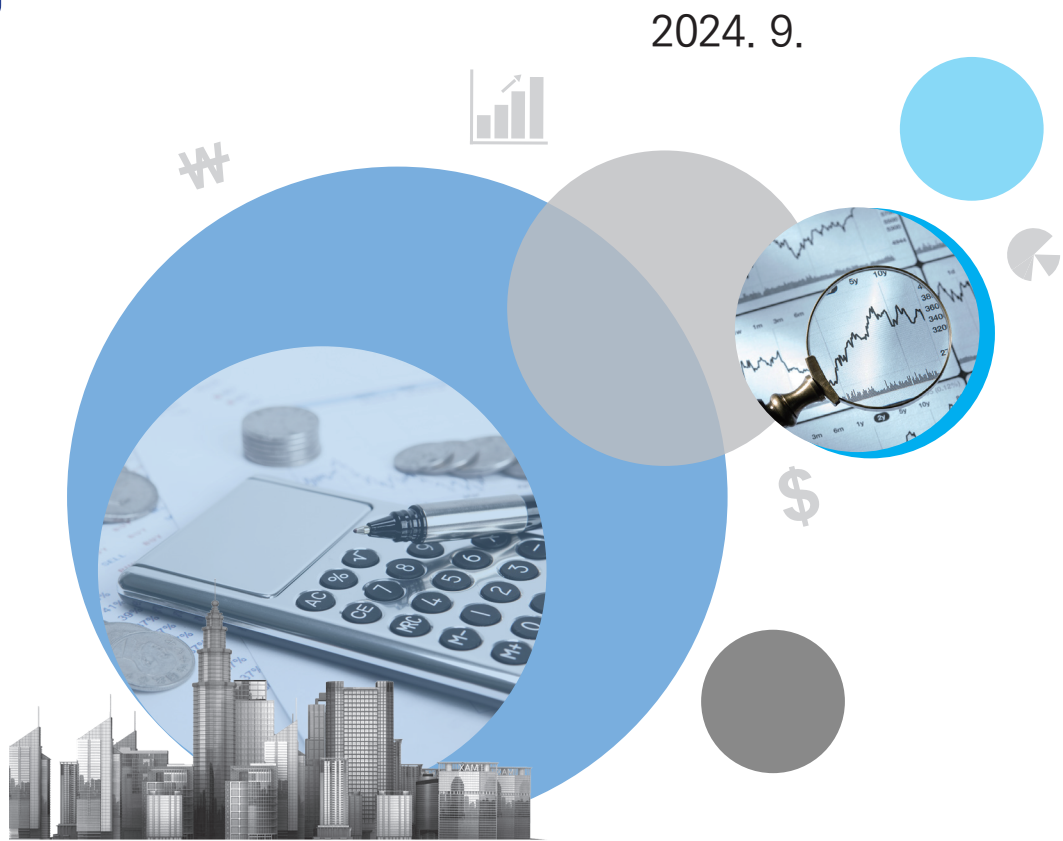
2024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 공장자동화 물품에 대한 관세감면

2024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 공장자동화 물품에 대한 관세감면

2024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
공장자동화 물품에 대한 관세감면

2024. 9.

기획재정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4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 공장자동화 물품에 대한 관세감면

2024. 9.

제 출 문

기획재정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공장자동화 물품에 대한 관세감면』 연구용역에 관한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연구책임자: 정재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공동연구자: 강희우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송헌재 서울시립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2024년 9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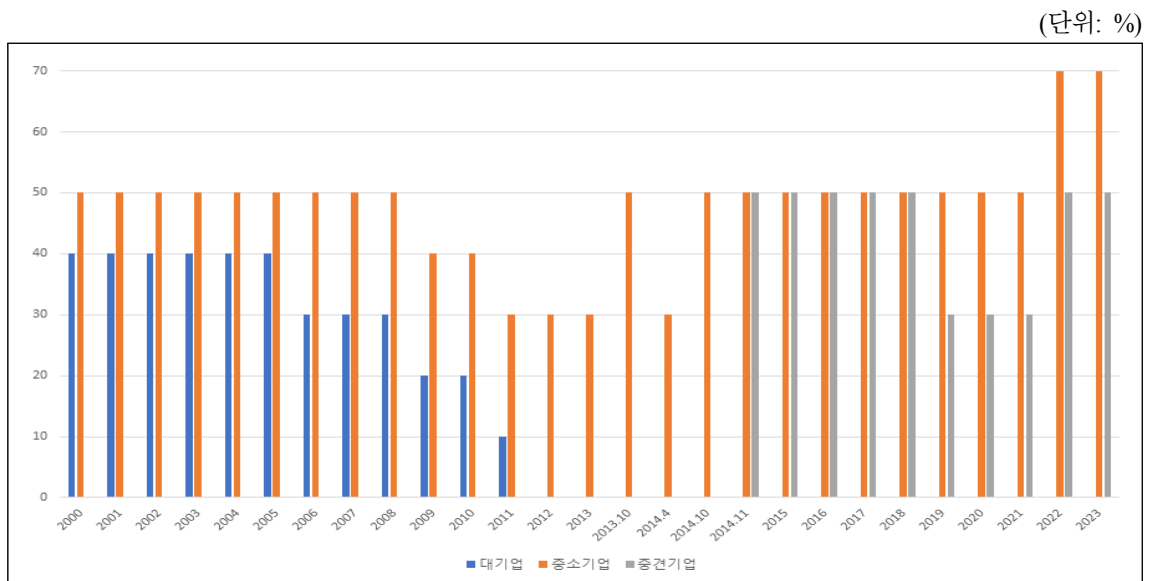
원 장 김 재 진

요 약

1. 특례제도 개요

- 공장자동화 물품에 대한 관세감면제도는 「관세법」 제95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공장자동화 기계·기구·설비 및 그 핵심부품으로서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공장자동화 물품이 수입될 때 그 관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임
-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공장자동화 물품에 한해 조세지원을 해줌으로써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실시하고 있음
- 본 제도의 정책대상자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중견기업
 - 2012년 이후 대기업 제외(중소기업만 남음)
 - 2014년 이후 중견기업 포함
- 관세 감면율은 30~70%로 경제 여건에 따라 변경되었음
 - 2022년 이후 COVID-19 등으로 인해 관세감면율을 상향하여 중소기업은 70%, 중견기업은 50%를 적용하고 있음

[그림 1] 공장자동화물품 관세감면 감면율 추이



자료: 법령 조문 내용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 관세감면 대상 공장자동화용 물품은 새로운 관세감면 수요 반영 등을 위해 매년 조정하고 있으며, 2024년 관세감면 대상 물품 수는 총 46개임

<표 1> 관세감면 대상 공장자동화용 물품 수

(단위: 개)

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물품 수	66	56	44	62	59	79	68	49	44	52	43	43	46

자료: 「관세법 시행규칙」 각 연도 제정·개정문

- 공장자동화 물품에 대한 관세감면 규모는 최근 3년 평균 약 60억원 정도임
 - 대기업이 포함되었던 2005년에는 관세감면 규모가 약 1,234억원에 이르기도 하였음
 - 2012년 대기업이 제외된 이후 관세감면 규모는 60억원으로 감소하였음
 - 2023년 관세감면 규모는 약 42.9억원으로 추정됨

<표 2> 공장자동화 관세감면 조세지출 규모

(단위: 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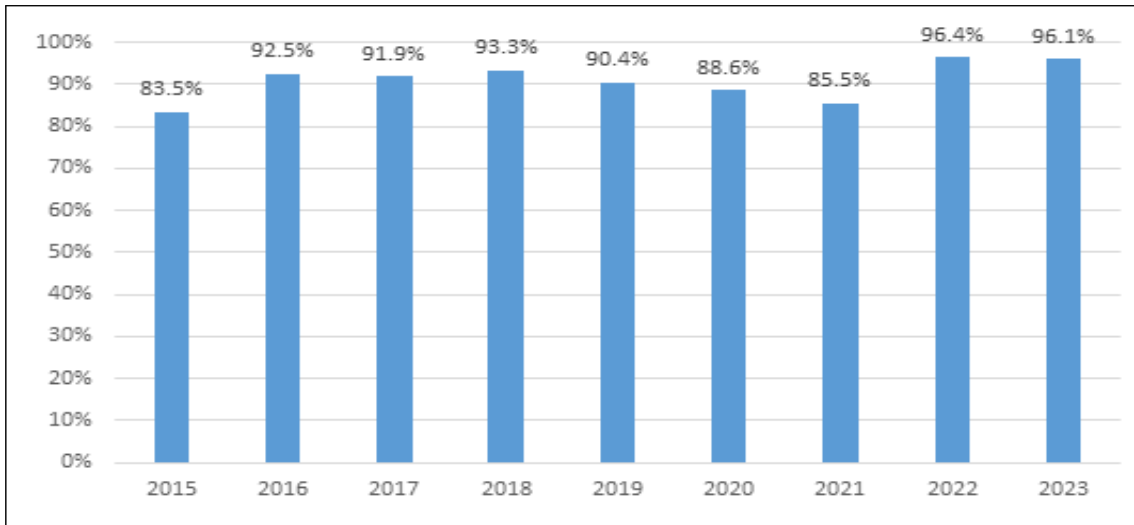
구분	2005	...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전망)	2024 (전망)
관세	1,234	...	61	59	36	30	60	63	66	68

자료: 기획재정부, 『조세지출예산서』, 각 연도

- 관세감면 대상 물품은 기계류(HS 제84류)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이 밖에 전자기기(HS 제85류)와 정밀기기(HS 제90류)가 일부 있음
 - 2023년 관세감면이 적용된 공장자동화 물품 16개 중 15개가 제84류의 기계였으며, 1개의 물품만이 제85류의 전기제품이었음
 - 제90류의 광·정밀기기는 2020년부터 공장자동화 물품 관세감면을 적용받지 않고 있음
- 관세감면이 적용된 공장자동화 물품은 거의 일본에서 수입함
 - 관세감면이 적용된 공장자동화 물품의 수입액 기준으로 90% 이상이 일본에서 수입하고 있음

- 이 밖에 독일, 중국, 대만 등이 있음
 - 2015년부터 계속하여 공장자동화 물품 관세감면 적용 물품이 수입된 국가는 일본, 독일, 대만, 중국 4개국임
 - 한-EU FTA와 한-중 FTA 발효로 독일, 중국의 감면 비중이 감소하고 상대적으로 일본의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보임

[그림 2] 공장자동화 물품 관세감면 적용물품의 일본 수입 비중



자료: 관세청 내부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2. 분석내용 및 결과

가. 타당성 분석

- (타당성 분석) 공장자동화 물품에 대한 관세감면은 일반적인 관세감면 기준으로 보면 타당성은 낮으나,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 등을 위해 관세를 감면해 주는 정부의 산업지원 측면에서는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
 - 일반적인 관세감면 기준: 국제관례, 관세 적용원칙, 외부효과, 형평성, 편의성 등
 - 외교관물품, 재수입면제, 장애인물품, 여행자휴대품 등
 - (정부 역할 적정성)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 등을 목적으로 정부 정책으로 수행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됨

- (타당성 분석) 공장자동화 물품에 대한 관세감면 혜택은 우리 기업뿐만 아니라 해외생산자(일본)에 귀착되는 효과가 있고, 자원배분의 인위적 왜곡을 발생시킬 수 있어, 감면 대상 물품 및 지원 대상을 보수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음
 - 공장자동화 물품 관세감면액 중에서 원산지가 일본인 수입품의 관세감면액이 거의 대부분임(2023년 기준으로 96.1%)
 - 공장자동화 물품처럼 중간 투입재에 대한 조세감면 혜택은 해당 중간재를 사용하는 구매자(국내 기업)뿐만 아니라 중간재 생산자(해외 기업)와 감면받은 중간재를 이용해 생산된 최종재의 소비자(가격 인하)에게도 혜택이 돌아감
 - 관세감면 대상이 국내에서 제작 곤란한 물품이기에 해외생산자(일본)의 독점성이 강할 수 있고 중간재 생산자의 독점성이 강할수록 관세감면 혜택이 해외생산자(일본)에도 상당 부분 귀착될 가능성이 높음
 - 정부에서 인위적으로 관세감면 대상을 한정하여 자원배분의 왜곡을 발생시킴으로써 시장 중립적인 관세율 정책에 반함
 - 국내 제작이 곤란하기에 국내 산업 보호라는 관세 본연의 기능을 통해 해당 국내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음
 - 중견기업도 대기업과 마찬가지로 상계관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계속해서 감면액을 주시할 필요가 있음

나. 효과성 분석

- (효과성 분석: 자료) 관세청과 국세청에서 제공한 자료에 KoDATA(한국기업자료) 자료를 병합하여 분석하였음
 - 분석기간은 2021년과 2022년임
- (효과성 분석) 최소제곱 회귀분석 추정결과, 공장자동화 물품 관세감면이 기업의 투자 및 고용을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남
 - 관세감면액이 1% 증가할 때 자산과 고용 모두 0.02% 증가
 - 다만, 탄력성이 1보다 작아 감면효과는 제한적임

<표 3> 공장자동화 물품 관세감면 혜택이 기업활동에 미친 영향(OLS)

(단위: 백만원, %, 명)

구분	ln자산총계	ln연구투자	자기자본 증가율	ln 피보험자 수	순이익 증가율	매출액 증가율
관세감면여부	0.336*** (0.0618)	-0.0353 (0.383)	-21.39 (108.5)	0.327** (0.158)	-251.0 (583.1)	-64.76 (163.1)
ln관세감면금액	0.0155*** (0.00308)	0.00112 (0.0191)	-1.200 (5.435)	0.02** (0.008)	-11.67 (29.20)	-4.060 (8.169)

관측치 수: 3,399 기업 수: 3,127

주: 1. 로그를 취한 매출액과 부채비율, 연도더미, 연간 공장자동화 물품 수입횟수, 연간 총공장자동화 물품 과세가격(미화), 연간 총공장자동화 물품 관세를 포함하여 분석하였으나 보고는 생략함

2. *, **, ***은 각각 10%, 5%,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

자료: 관세청 내부자료, 국세청 내부자료, KoDATA

□ 하지만 고정효과모형 회귀분석 추정결과에서는 투자 및 고용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4> 공장자동화 물품 관세감면 혜택이 기업활동에 미친 영향(FE)

(단위: 백만원, %, 명)

구분	ln자산총계	ln연구투자	자기자본 증가율	ln 피보험자 수	순이익 증가율	매출액 증가율
관세감면여부	-0.0833 (0.0801)	0.178 (0.684)	10.60 (405.7)	0.490 (0.461)	-229.7 (1,370)	38.20 (92.27)
ln관세감면금액	-0.00596 (0.00426)	0.0143 (0.0364)	-1.239 (21.62)	0.0333 (0.0245)	-7.747 (72.96)	-0.0411 (4.775)

관측치 수: 3,399 기업 수: 3,127

주: 1. 로그를 취한 매출액과 부채비율, 연도더미, 연간 공장자동화 물품 수입횟수, 연간 총공장자동화 물품 과세가격(미화), 연간 총공장자동화 물품 관세를 포함하여 분석하였으나 보고는 생략함

2. *, **, ***은 각각 10%, 5%,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

자료: 관세청 내부자료, 국세청 내부자료, KoDATA

□ 효과성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관세감면제도가 투자와 고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효과의 크기가 제한적이고 효과가 없다는 분석결과도 있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있음

○ 최소제곱 회귀분석 추정결과, 관세감면액이 1% 증가할 때 자산과 고용 모두 0.0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다만, 탄력성이 1보다 작아 감면효과는 제한적이고, 분석방법을 달리할 경우 그 효과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다. 예산 사업 중복 여부

- (예산 사업 중복 여부) 공장자동화 물품에 대한 관세감면 수혜대상이 중소기업으로, 현재 다수의 중소기업 지원 사업과 중복될 가능성은 높지만, 공장자동화 물품 도입에 대한 지원제도를 유지한다면, 관세감면제도가 다른 지원제도에 비해 장점이 있음
 - 직접적인 공장자동화 물품 설치 등에 대한 다른 조세지원 및 재정지원 제도는 없음
 - 공장자동화 물품에 대한 관세감면제도는 조세지원제도 중에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통합투자세액공제 등과 중복될 수 있음
 - 다만, 다른 조세지원제도는 법인세와 연계되어 납부할 세액이 있을 경우에만 유효한 제도이지만, 관세감면은 법인세와 상관없이 적용됨
 - 그래서 다른 조세지원제도와 달리 관세감면은 물품 구매비용을 직접 낮추기(가격 할인) 때문에 기업(납세자)들이 선호할 수밖에 없음
 - 공장자동화 물품을 설치한 기업에 재정지원을 할 경우에는 기업 확인 및 물품 확인 등의 행정비용이 발생하지만, 관세감면은 신청 기업 및 물품 확인이 기존 수입신고를 통해 추가적인 행정비용 없이 이루어진다는 장점이 있음

3. 결론 및 정책시사점

- 공장자동화 물품에 대한 관세감면제도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 등 정부의 산업지원 측면에서는 타당성이 있지만, 관세감면 혜택이 우리 기업뿐만 아니라 해외생산자(일본)에 귀착되는 효과가 있고, 자원배분의 인위적 왜곡을 발생시킬 수 있어, 감면 대상 물품 및 지원 대상을 보수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음
 - 효과성 분석 결과, 관세감면제도가 투자와 고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결과가 도출되었으나, 효과의 크기가 제한적이고 효과가 없다는 분석결과도 있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있음
 - 국내 제작이 곤란하기에 국내산업 보호라는 관세 본연의 기능을 이용해 해당 국내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음
 - 감면대상에서 대기업을 제외된 이유 중 하나는 상계관세 문제이며, 중견기업

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서 지속적으로 감면액을 주시할 필요가 있음

- 제도를 보수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우선 2022년에 감면율을 상향 조정한 사유 (COVID-19)가 없어졌기 때문에, 기존의 관세감면율(50% 및 30%)을 적용하는 것을 검토

□ (예산 사업 중복 여부) 공장자동화 물품에 대한 관세감면 수혜대상이 중소·중견 기업으로, 현재 다수의 중소·중견기업 지원 사업과 중복될 가능성은 높지만 공장자동화 물품 도입에 대한 지원제도를 유지한다면, 관세감면제도가 다른 지원 제도에 비해 장점이 있음

- 다른 조세지원제도는 법인세와 연계되어 혜택을 받지만, 관세감면은 물품 구매비용을 직접 낮추기 때문에 기업(납세자)들이 선호할 수밖에 없음
 - 공장자동화 물품을 설치한 기업에 재정지원을 하면 기업 확인 및 물품 확인 등의 행정비용이 발생하지만, 관세감면은 이런 확인을 수입신고를 통해 이루어져 추가적인 행정비용 없다는 장점이 있음

□ (제도 운용) RCEP에 의해 관세가 즉시 철폐 혹은 미양허 품목인 일본산 물품과 장기간 감면 실적이 없는 품목 등에 대해서는 감면 대상 지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RCEP으로 일본산 물품의 관세가 즉시 철폐되는 품목이 HS 10단위 기준 28개이고 미양허 품목이 31개임
 - 미양허 품목 31개, 발효 10~20년 이후 관세철폐 품목 92개는 일본과의 협상에서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품목들인데, 현재 이 품목들에 관세감면이 적용되는 모순된 상황
- 감면 대상 품목 중 HS 6단위 기준 6개 품목군은 최근 9년간 감면 실적이 없음
 - 2015~2023년까지 HS 6단위 기준 21~37개 품목군에서 감면 실적이 없음

목 차

I. 서론	15
II. 관세감면제도 운영 현황	21
1. 우리나라 관세감면제도	23
가. 법률적 근거에 따른 관세감면	24
나. 국제관례 및 관세 적용 원칙에 의한 관세감면제도	30
다. 관세감면세 유형 및 감면율	33
2. 주요국의 관세감면제도	35
가. 미국	35
나. EU	38
다. 중국	40
라. 일본	42
마. 호주	47
바. 캐나다	48
3. 관세감면의 이론적 논의	51
가. 관세감면과 기타 조세감면과의 차이점	51
나. 부분균형 분석	52
III. 공장자동화 물품 관세감면제도	55
1. 관세감면제도 현황	57
가. 제도 개요	57
나. 도입목적	57
다. 정책대상자	58
라. 수혜내용	60
마. 사후관리	62

마. 감면대상 품목	63
사. 조세지출 규모	63
아. 제도 연혁	64
2. 공장자동화 물품의 관세감면 실적 분석	66
가. 관세감면 규모	66
나. 기업 유형별 분석	68
다. 국가별 수입	70
라. 관세감면 품목별 분석	72
3. 관세감면 적용대상 분석	88
가. 중소기업 현황	88
나. 중견기업 현황	92
IV. 타당성 평가	95
1. 정부 역할로서의 적절성	97
2. 수혜대상의 적절성	99
3. 유사 중복 여부	101
V. 효과성 평가	103
1. 분석 자료	105
2. 분석에 활용한 변수	106
3. 분석 방법	108
가. 최소제곱회귀분석모형	108
나. 확률효과모형과 고정효과모형	109
4. 효과성 분석	110
가. 기초통계	110
나. 계량 분석: 관세감면 여부	115
다. 계량 분석: 증가율	117
5. 소결	122

VI. 결론 및 제도 개선방안	125
1. 제도 운영 결과 평가	127
2. 제도의 목적 달성 여부 평가	131
3. 향후 제도 개선 방안	132
참고문헌	134

표 목 차

<표 II-1> 관세가 면세되는 물품	33
<표 II-2> 관세감면을 현황	34
<표 II-3> 미국 HTSUS 제98류에 따른 관세감면 종류	37
<표 II-4> EU 관세감면 종류	39
<표 II-5> 중국의 관세감면 종류	41
<표 II-6> 일본 「관세정률법」의 규정에 의한 감면	43
<표 II-7> 일본 「관세잠정조치법」의 규정에 의한 감면	46
<표 II-8> 호주 관세감면 종류	48
<표 II-9> 캐나다 관세율표 제98류·제99류에 따른 관세감면 종류	49
<표 III-1> 「관세법」 제95조(환경오염방지물품 등에 대한 감면)	57
<표 III-2> 중소기업의 범위	59
<표 III-3> 중견기업의 범위	60
<표 III-4> 공장자동화 물품 관세감면 변경사항	61
<표 III-5> 관세감면 대상 공장자동화용 물품 수	63
<표 III-6> 공장자동화 관세감면 조세지출 규모	64
<표 III-7> 공장자동화 물품 관세감면 변경사항	65
<표 III-8> 관세감면 대상 공장자동화 물품의 수입액 비중	67
<표 III-9> 공장자동화 물품 관세감면을 받은 기업 수	69
<표 III-10> 업체유형별 업체당 공장자동화 물품 관세감면액 수준	70
<표 III-11> 관세감면 대상 공장자동화 물품의 수입국 수	70
<표 III-12> 관세감면 적용 공장자동화 물품 품목의 원산지별 수입액 및 비중	72
<표 III-13> 관세감면 관련 공장자동화 물품의 수 및 관세감면액	72
<표 III-14> 관세감면 적용 공장자동화 물품 품목당 과세가격 및 관세감면액	73
<표 III-15> 관세감면 적용 공장자동화 물품의 수	74
<표 III-16> 관세감면 적용 공장자동화 물품의 관세감면액	74

<표 III-17> HS 2단위별 관세감면 적용 공장자동화 물품당 평균 관세감면액	75
<표 III-18> 관세감면 대상 공장자동화 물품 품목에 대한 일본 원산지물품의 RCEP 양허유형	76
<표 III-19> 관세감면 대상 공장자동화 물품 품목의 일본 원산지물품 감면실적	81
<표 III-20> 관세감면 대상 공장자동화 물품 중 미적용 품목	87
<표 III-21> 중소기업 수 현황	88
<표 III-22> 중소기업 기본 현황	89
<표 III-23> 중소기업 재무상태	90
<표 III-24> 중소기업 자산 및 설비투자 현황	91
<표 III-25> 중소기업 설비투자 비중	91
<표 III-26> 중견기업 기본 현황	92
<표 III-27> 중견기업 재무상태	93
<표 III-28> 중견기업 관심 투자 분야	93
<표 III-29> 중견기업 설비투자 현황	94
<표 V-1> 기초통계	111
<표 V-2> 관세감면 여부에 따른 기초통계	112
<표 V-3> 자료별 기초통계	114
<표 V-4> 공장자동화 물품 외 관세감면 혜택 여부가 기업활동에 미친 영향 1 ..	116
<표 V-5> 공장자동화 물품 외 관세감면 혜택 여부가 기업활동에 미친 영향 2 ..	116
<표 V-6> 공장자동화 물품 외 관세감면 혜택 여부가 기업활동에 미친 영향 3 ..	117
<표 V-7> 공장자동화 물품 외 관세감면이 기업활동에 미친 영향 1	118
<표 V-8> 공장자동화 물품 외 관세감면이 기업활동에 미친 영향 2	119
<표 V-9> 공장자동화 물품 외 관세감면이 기업활동에 미친 영향 3	120
<표 V-10> 공장자동화 물품 외 관세감면이 기업활동에 미친 영향 4	120
<표 V-11> 공장자동화 물품 외 관세감면이 기업활동에 미친 영향 5	121
<표 V-12> 공장자동화 물품 외 관세감면이 기업활동에 미친 영향 6	122
<표 VI-1> 공장자동화 물품 관세감면 혜택이 기업활동에 미친 영향(OLS)	129
<표 VI-2> 공장자동화 물품 관세감면 혜택이 기업활동에 미친 영향(FE)	130

그림 목 차

[그림 II-1] 생산자 및 소비자잉여	53
[그림 III-1] 공장자동화 물품 관세감면율 추이	61
[그림 III-2] 공장자동화 물품의 관세감면 규모(2015~2023년)	67
[그림 III-3] 공장자동화 물품의 기업유형별 관세감면 규모(2015~2023년)	68
[그림 III-4] 관세감면 적용 공장자동화 물품 품목의 일본 수입 비중	71
[그림 IV-1] 공장자동화 물품 관세감면율 추이	101

I. 서론



I. 서론

- 공장자동화 물품에 대한 관세감면제도는 「관세법」 제95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공장자동화 기계·기구·설비 및 그 핵심부품으로서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공장자동화 물품이 수입될 때 그 관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임
 -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공장자동화 물품에 한해 조세 지원을 해줌으로써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경쟁력을 향상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음

- 감면 대상 물품은 국내 제작이 곤란한 공장자동화 기계, 기구, 설비 및 핵심부품으로 매년 관세감면 대상물품을 「관세법 시행규칙」에 고시하고 있음
 - 관세감면 대상 물품은 경제환경 및 관세감면 수요 등을 반영하여 매년 조정하고 있음
 - 2024년 관세감면 대상 물품 수는 총 46개임

- 정책대상자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중견기업이며, 2012년 이후 정책대상에서 대기업은 제외되었으며, 2014년 이후 중견기업이 포함됨
 - 대기업은 WTO 보조금협정에 따른 통상분쟁 가능성이 있어서 2012년부터 제외함
 - 대기업은 공장자동화 물품에 대한 관세감면제도 이외에 투자 관련 다른 조세 공제제도 등과 중복될 여지도 있음
 -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공장자동화 물품의 관세 감면율은 30~70%로 경제 여건에 따라 변경됨
 - 2022년 이후 COVID-19 등으로 인해 관세 감면율을 중소기업은 기존 50%에서 70%로, 중견기업은 30%에서 50%로 상향하여 적용하고 있음

- 공장자동화 물품에 대한 관세감면 제도의 조세지출 규모는 최근 3년 평균 약 60억원 정도임
 - 2023년 관세감면 규모는 약 42.9억원으로 추정됨

- 공장자동화 물품에 대한 관세감면 제도는 2013년 일몰제가 폐지된 이후 지금까지 관세감면이 적용되고 있음
 - 중소기업에 대한 관세감면과 감면율 30%는 일몰이 폐지되었고, 관세감면율은 경제 여건에 따라 상향 조정되고 있음
 - 2014년 중견기업이 포함되면서, 중견기업의 관세감면은 1~2년 단위로 기한이 연장되고 있음

- 본 연구에서는 공장자동화 물품에 대한 관세 감면 제도의 타당성 및 효과성을 평가하고, 예산 사업 중복 여부 등을 살펴본 후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심층평가 중 타당성 분석에서는 공장자동화 물품에 대한 관세 감면 제도에 대한 정부 역할로서의 적절성, 수혜대상자의 적절성, 그리고 제도 간 유사 중복 여부 등을 분석함
 - 타당성 분석을 위해 관세감면제도 전반에 대해 검토함
 -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관세 감면제도 분석
 - 관세감면제도의 이론적 검토
 - 관세감면이 적용된 품목의 수입 특징 분석
 - 관세감면이 적용된 품목의 수입 비중
 - 관세감면이 적용된 품목의 수입국
 - 해당 품목들의 FTA 협정세율 등 FTA 협정과의 관계
 - 관세감면 대상 중 미적용 품목 등
 - 관세감면 수혜 기업별 특징 분석
 - 중소·중견기업 재무상태, 투자 현황 등
 - 중소·중견기업별 관세감면 규모

- 효과성 분석에서는 공장자동화 물품에 대한 관세 감면 제도가 해당 기업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함
 - 관세감면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유사한 물품을 수입하였으나 관세를 감면받은 기업과 감면받지 않은 기업 비교
 - 생산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투자와 매출 및 순이익 변화, 고용의 변화

등이 수반되기에 이들 변수의 변화에 대해 분석

- 관세청과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이용하여 최소제곱회귀분석모형, 고정효과모형, 확률효과모형 등을 이용해 분석할 예정

- 앞선 타당성 및 효과성 분석 등의 결과를 바탕으로 종합적인 제도 운영 평가 의견 및 향후 제도 개선 방안 등을 제시함

-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공장자동화 물품에 대한 관세감면제도 개선에 정책적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공장자동화 물품에 대한 관세감면제도의 향후 정책 방향과 제도 정비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함

II. 관세감면제도 운영 현황



II. 관세감면제도 운영 현황

1. 우리나라 관세감면제도

- 관세감면이란 특정한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관세법」에서 산출된 관세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는 것을 말함
 - 수입물품은 「관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나 수입물품이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특별히 그 수입자에 대하여 관세납부의 의무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함
 - 납부의무를 일부 면제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일부 면제하는 것은 감세
 - 납부의무를 전부 면제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전부 면제하는 것은 면세라고 함

- 관세감면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납세의무자가 관세감면을 신청한 경우에 한해 적용 가능하다는 것임
 - 관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춘 물품을 수입하더라도 수입신고 수리 전에 감면신청을 하지 않으면 관세감면을 받을 수 없음
 -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감면 요건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와 함께 감면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함¹⁾
 - 다만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해당 물품이 보세구역에서 반출되지 않았다면 수리일로부터 15일 이내 감면을 신청할 수 있음²⁾

- 관세감면은 크게 무조건 감면세와 조건부 감면세로 구분할 수 있음
 - 무조건 감면세는 수입 당시의 특정한 사실에 의거 감면하는 제도로서 수입 후에 특정한 사실에 변경이 있더라도 감면세의 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아니

1) 「관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1항

2) 「관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2항

하는 것을 말함

- 즉, 무조건 감면세의 적용을 받은 물품이 수입 후 용도를 달리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감면한 관세를 추징하지 아니하고 사후관리도 하지 않음
- 무조건 감면세의 종류로는 외교관 면세, 정부용품 면세, 손상물품 감면세 및 재수입 면세 등이 있음
- 조건부 감면세는 수입신고 수리 시에 특정한 조건을 붙여 감면하는 것으로서, 그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관세의 감면분을 추징하는 감면을 말함
 - 조건부 감면세를 받은 물품은 사후관리 대상이 되며, 수입 후 감면을 받은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면 감면한 관세를 추징함
 - 그 종류로는 항공기제조용 원료품 등 세율불균형물품의 면세, 학술연구용품 감면, 종교·자선·장애인용품의 면세, 특정 물품의 면세, 환경오염방지물품의 감면, 재수출 면세, 재수출 감면세 등이 있음

가. 법률적 근거에 따른 관세감면

- 현재 관세감면의 근거 법률로는 「관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그리고 국제기구, 외국과의 조약·협정 등이 있음
 - 「관세법」에서는 제88조 내지 제101조에 감면을 규정하고 있음
 - 「조세특례제한법」의 관세감면 관련 조항으로는 제118조, 제121의3조, 제140조 등이 있음

1) 「관세법」상 관세감면

- 외교관용 물품 등의 면세(「관세법」 제88조)는 국제관례에 따라 외교관용 물품 등에 대한 면세를 규정함
 - 비엔나 협약에 따라 모든 가입국이 실시하고 있는 면세로 외국의 대사관, 공사관 등의 업무용품, 외국의 대사·공사 등과 그 가족이 사용하는 물품 등에 대해 면세하고 있음
- 세율불균형물품의 면세(「관세법」 제89조)는 관세율이 불균형한 물품³⁾에 대해 그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 관세를 면제하고 있음

- 중소기업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조 또는 수리하기 위해 사용하는 부분품과 원재료에 대해서 관세를 면제함
 - 항공기 및 부분품
 - 반도체 제조용 장비 및 부속기기
- 다만 중소기업이 아닌 자가 항공기 및 부분품을 제조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부분품과 원재료에 대하여는 그 관세를 감면함
 - 「민간항공기 무역에 관한 협정」 대상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감면율은 100분의 100에서 연차적으로 인하하여 2028년까지 100분의 20으로 낮아질 예정임
 - 그 외의 물품은 2024년까지 수입신고분은 100분의 40, 2025년까지 수입신고분은 100분의 20의 감면율이 적용됨
- 학술연구용품의 감면세(「관세법」 제90조)는 공공성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기업부설연구소가 행하는 R&D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관세감면 대상품목은 별도로 고시하고 있음
 - 학술연구용품 감면 대상품목의 감면율은 100분의 80이며, 공공의료기관 및 학교부설의료기관에서 사용할 물품에 대한 감면율은 100분의 50으로 함
- 종교용품·자선용품·장애인용품 등의 면세(「관세법」 제91조)는 사회복지 향상 등의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음
 - 교회·사원 등 종교단체의 예배용품, 자선 또는 구호 목적으로 기증되는 물품, 장애인용 물품 및 의료용구 등에 적용됨
- 정부용품 등의 면세(「관세법」 제92조)로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증된 물품, 정부가 수입하는 군수품, 국가안전보장상 긴요한 물품 등이 포함됨
- 특정물품의 면세(「관세법」 제93조)는 정책목표에 따른 독립적인 감면제도를 설정하기 곤란한 면세 대상을 모아 놓은 규정임

3) 일반적으로 관세율은 원재료는 낮게, 완제품은 높게 책정되지만 일부 품목의 경우 오히려 원재료의 관세율이 높은 경우가 있는데 이에 해당되는 품목을 세율 불균형물품이라 함(관세청, <https://www.customs.go.kr/kcs/ad/tr/trTermView.do?mi=2902&s=&termId=1509>, 검색일자: 2024. 3. 6.)

- 특정 물품의 면세에는 다음과 같은 물품 등이 포함됨
 - 동식물의 번식·양식 및 종자개량을 위한 물품
 - 박람회 등의 사용물품
 - 핵사고 또는 방사능 긴급사태 시 복구지원과 구호를 목적으로 기증된 물품
 - 우리나라 선박이 외국 영해에서 채집 또는 포획한 수산물 등
 - 우리나라와 외국 간에 건설될 교량·통신시설·해저통로 등의 건설 또는 수리에 소요되는 물품
 - 우리나라 수출물품 첨부용 증표
 - 우리나라의 선박 또는 항공기의 해외사고 혹은 하자보수로 인한 수리물품
 - 국제올림픽, 장애인올림픽, 농아올림픽 및 아시아운동경기, 장애인아시아운동경기 종목에 해당하는 운동용구
 - 보석의 원석 및 나석 등

□ 소액물품 등의 면세(「관세법」 제94조)에는 표창장 및 상패, 기록문서, 상업용견본품 또는 광고용품, 우리나라 거주자가 수취하는 소액물품 등이 포함됨

- 상업용견본품 또는 광고용품은 상태·형상·성질·형질로 보아 견본품으로 인정되거나 미화 250달러 이하로 견본품으로 인정되는 물품 등을 말함
- 소액물품은 미화 150달러 이하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물품, 박람회 등의 행사에서 참가자에게 무상제공하는 미화 5달러 이하의 물품임

□ 환경오염방지물품 등에 대한 감면세(「관세법」 제95조)는 특정 물품에 대한 감면제도 중 감세제도를 모아 놓은 규정임

- 해당 규정에 따라 공장자동화 기계·기구·설비 및 그 핵심부품의 관세가 감면되며 감면율은 다음과 같음
 - 중소기업업체가 수입하는 경우 100분의 30(2024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70)
 - 중견기업으로서 제조업을 경영하는 업체가 2024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경우 100분의 50

□ 여행자휴대품·이사물품 등의 감면세(「관세법」 제96조)는 여행자나 승무원의 휴대품, 이사물품 등에 대한 감면세로 여행자의 입국사유·체재기간·직업 기타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범위가 결정됨

- 면세대상을 제외한 여행자 휴대품 또는 별송품을 자진신고하는 경우 20만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관세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함

□ 재수출면세(「관세법」 제97조)는 일시적으로 반입한 뒤 일정 기간 내에 다시 반출하는 경우에 당해 물품에 대한 관세를 면제하고 있음

- 통상 재수출기간은 1년 이내로 세관장이 정하며, 이 기한 내에 재수출하지 아니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됨

□ 이와 달리 재수출감면세(「관세법」 제98조)는 장기간에 걸쳐 사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그 수입이 임대차계약 등에 의해 국내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수입하는 물품에 적용됨

- 재수출기간에 따라 관세액의 100분의 85 내지 100분의 30이 경감됨

□ 재수입면세(「관세법」 제99조)는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이 2년 내에 다시 수입되거나, 수출물품의 용기 등이 재수입되는 경우 관세를 면제하는 규정임

- 수출 후 재수입되는 물품이 해당 물품 또는 원자재에 대해 감면을 받거나 수출에 따른 환급을 받은 경우 관세를 면제할 수 없음
 - 환급을 받은 물품의 재수입면세 시 환급액을 납부해야 함

□ 손상감세(「관세법」 제100조)는 수입신고한 물품이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변질 또는 손상된 때 그만큼 관세를 경감하는 규정임

- 또는 「관세법」이나 기타 법률, 조약, 협정 등에 따라 관세를 감면받은 물품에 대해 관세를 추징하는 경우 그 가치저하분에 대해 관세를 경감함

□ 해외임가공물품 감세(「관세법」 제101조)는 원재료 등을 수출하여 제조·가공 또는 수리한 다음 수입하는 해외임가공물품 등에 대한 관세경감 규정임

- 임가공물품 중 관세감면 대상이 되는 것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한정됨
 - 원재료 등을 수출하여 관세율표 제85류 및 제90류 중 제9006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제조하거나 가공한 물품

- 가공 또는 수리 목적으로 수출한 물품으로서 수출 당시의 HS 10단위와 수입 당시의 HS 10단위가 일치하는 물품

- 이 밖에 관세감면 물품의 사후관리(「관세법」 제102조)와 관련하여 「관세법」은, 관세를 감면받은 물품은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3년 내에는 감면받은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양도(임대 포함)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양도한 경우 감면된 관세는 다시 징수하게 된다고 명시함

2) 「조세특례제한법」상 관세감면

- 「관세법」 이외에도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관세감면이 시행되고 있음
-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는 국내 제작이 곤란한 물품에 대해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해당 규정에 따른 감면율은 100분의 50으로 하며, 다음과 같은 물품이 대상에 포함되어 한시적으로 관세를 경감 받음
 - 2026년 12월 31일까지 중소·중견기업이 수입하는 신·재생에너지의 생산용기자재 및 이용기자재, 전력계통 연계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기자재⁴⁾(동기자재 제조용 기계 및 기구 포함)
 - 이 밖에 포물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 등 구체적인 국제경기에 한하여 대회 관련 시설의 제작, 건설, 경기운영에 사용되는 물품
-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의2는 해외 진출기업의 국내 복귀에 대해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국내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기 위해 2024년 12월 31일까지 수입하는 자본재
 - 국외에서 2년 이상 계속해서 경영하던 사업장을 국내로 이전하는 경우 감면율은 100분의 100

4)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것

- 국외 사업장을 부분 축소 또는 유지하면서 국내로 복귀하는 경우 감면율은 100분의 50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3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해 도입되는 자본재에 대한 관세면제를 규정하고 있음

-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투자가로부터 출자받은 대외지급수단 또는 내국지급수단으로 도입하는 자본재와, 외국인투자가가 출자목적물로 도입하는 자본재에 대해 관세를 면제함

- 다만,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를 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관세법」에 의한 수입신고가 완료된 것에 한함

□ 「조세특례제한법」 제140조는 「해저광물자원개발법」에 의해 해저조광권을 가진 자가 해저광물의 탐사 및 채취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2025년 12월 31일까지 수입하는 기계·장비 및 자재에 대한 관세면제를 규정하고 있음

- 해저조광권자의 대리인 또는 도급업자가 해저광물의 탐사 및 채취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그 해저조광권자의 명의로 수입하는 기계·장비 및 자재에 대해서도 관세를 면제함

3) 그 밖의 국제기구, 외국과의 조약 및 협정

□ 「관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이외에 국제기구, 외국과의 조약 및 협정에 의해서도 관세가 감면될 수 있음

□ 국제기구 등에 의한 관세감면으로는 다음과 같은 협정 혹은 협약이 있음

- 「국제민간항공협정」, 「국제식물보호협약」, 「외교관계(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포장용기의 일시적 수입에 관한 관세협약」, 「상품건본 및 광고용 물품의 편의를 위한 국제협약」 등

□ 특정 국가와 체결한 협정 혹은 약정도 다수 존재

- 한미 정부 간의 소포우편 협정, 한일 간 항공 협정, 한독 정부 간의 문화협정 등 다수

나. 국제관례 및 관세 적용 원칙에 의한 관세감면제도

- 관세감면 중 국제관례에 의해 관세감면이 적용되거나 혹은 관세 적용의 일반적인 원칙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는 관세감면제도가 다수임

1) 국제관례성 감면

- 외교관용 물품 등의 면세(「관세법」 제88조)는 국제관례에 따라 외교관용 물품 등에 대한 면세를 규정함
 - 「비엔나 협약」에 의해 이에 가입한 모든 국가가 실시하고 있는 면세제도임
- 상업용건본품 또는 광고용품, 우리나라 거주자가 수취하는 소액물품 등에 대한 면세(「관세법」 제94조) 또한 국제협약의 내용을 반영함
 - 상업용건본품 또는 광고용품은 「상품건본 및 광고용물품의 수입편의를 위한 국제협약」의 이행을 위해 관세를 면세함
 - 우리나라 거주자가 수취하는 소액물품으로서 박람회 등에서 관람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수입물품의 면세는 「전시회·전람회·회의 기타 유사한 행사에서의 전시 또는 사용을 위한 물품의 수입상의 편의에 의한 관세협약」에 따름
- 재수입면세(「관세법」 제99조) 규정에 따라 재수입되는 수출물품의 용기 또한 국제협약의 이행을 위한 면세규정임
 - 이는 「포장용기의 일시적 수입에 관한 관세협약」에 규정되어 있음
- 이 밖에 국제조약 중에 감면세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다면, 국내법에 그 규정이 없더라도 조약 자체에 의해 관세의 감면이 이루어짐
 - 현재 우리나라는 100여개가 넘는 국제기구 및 양국 간 협약, 협정 등에 의해 관세감면이 이루어지고 있음
 - 이러한 협약 및 협정 등에 의해 이루어지는 관세감면은 전체 관세감면액의 약 1% 정도로 그 규모는 미미함

2) 관세 적용 원칙에 따른 감면

- 관세는 일국의 관세영역을 통과하는 물품에 대하여 반대급부 없이 법률이나 조약에 의해 부과 징수하는 조세를 의미하기 때문에, 관세부과 원칙에 의해 관세감면이 정당화되는 경우가 있음
 - 일시적으로 물품을 국내로 반입한 뒤 일정 기간 내에 다시 반출하거나,
 - 우리나라에서 수출한 물품이 일정 기간 내에 다시 수입되는 경우,
 - 그리고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변질 또는 손상된 경우 그만큼의 관세경감 등이 있음

- 일시적으로 물품을 반입한 뒤 일정 기간 내에 다시 반출하는 경우 관세를 면제함(「관세법」 제97조)
 - 이 경우 1년의 기간 내에 물품을 재수출해야 하며, 1년을 지나서 수출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물품은 세관장이 정한 기간에 재수출해야 함

- 장기간에 걸쳐 사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그 수입이 임대차계약 등에 의해 국내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수입하는 물품에 감면을(「관세법」 제98조) 적용함
 - 재수출기간에 따라 관세액의 100분의 85 내지 100분의 30이 경감됨

-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이 다시 수입되거나, 수출물품의 용기 등이 재수입되는 경우 관세를 면제함(「관세법」 제99조)
 - 수출 후 해외에서 제조·가공·수리·사용되지 않고 재수입되는 물품은 수출신고 수리일부터 2년 내에 다시 수입되어야 함
 - 수출물품의 용기, 해외시험 및 연구를 목적으로 수출된 후 재수입되는 물품 또한 면세됨

- 수입신고한 물품이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변질 또는 손상된 때 그만큼 관세 경감함(「관세법」 제100조)
 - 또한 법률, 조약, 협정에 따라 관세를 감면받은 물품에 대한 관세를 추징하는 경우 변질, 손상으로 인한 가치 저하분에 대해 관세를 경감함

- 원재료 등을 수출하여 제조·가공 또는 수리한 다음 수입하는 해외임가공물품 등에 대한 관세감면(「관세법」 제101조) 또한 관세부과 원칙에 따른 규정임
 - 제조·가공 후 수입되는 물품은 「관세율표」 제85류 및 제90류 중 제9006호에 해당하는 것에 한함
 - 가공·수리를 위해 수출하는 물품은 가공·수리 후 수입되는 물품과 「품목분류표」상 10단위의 품목번호가 일치해야 함

3) 그 밖의 관세감면

- 국제적 관례 또는 관세의 과세 원칙 이외에 정책적으로 외부경제효과, 형평성, 편의성 등에 의해 다음과 같은 관세감면이 적용되기도 함
 - 학술연구용품의 감면세(「관세법」 제90조)
 - 자선용품·장애인용품 등의 면세(「관세법」 제90조)
 - 정부용품 등의 면세(「관세법」 제92조)
 - 여행자휴대품 및 이사물품 등의 감면(「관세법」 제96조)
- 다수의 국가에서 관세감면이 적용되는 물품들에 대해 우리나라에서도 특정 물품에 대해 면세(「관세법」 제93조)를 적용하고 있음
 - 동식물의 번식·양식 및 종자개량을 위한 물품
 - 박람회 등의 사용물품
 - 핵사고 또는 방사능 긴급사태 시 복구지원과 구호를 목적으로 기증된 물품
 - 우리나라 선박이 외국영해에서 채집 또는 포획한 수산물 등
 - 우리나라와 외국 간에 건설될 교량·통신시설·해저통로 등의 건설 또는 수리에 소요되는 물품
 - 우리나라 수출물품 첩부용 증표
 - 우리나라의 선박 또는 항공기의 해외사고 혹은 하자보수로 인한 수리물품 등이 포함
 - 국제올림픽, 장애인올림픽, 농아올림픽 및 아시아운동경기, 장애인아시아운동경기 종목에 해당하는 운동 용구

다. 관세감면세 유형 및 감면을

- 관세감면은 감세와 면세로 나눌 수 있는데, 관세감면 중 납부세액을 일부 면제하는 것을 감세라고 하고 전부를 면제하는 것을 면세라고 함
- 관세가 면세되는 물품은 다음과 같음
 - 외교관용 물품
 - 종교용품, 자선용품, 장애인용품, 정부용품
 - 동식물의 번식·양식용 물품 등의 특정물품
 - 소액물품, 여행자휴대품, 이사물품
 - 재수출 및 재수입 면세
 -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해 도입되는 자본재
 - 「해저광물자원개발법」에 의해 해저광물의 탐사 및 채취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기계 및 장비 등

<표 II -1> 관세가 면세되는 물품

근거	조문	분야
「관세법」	제88조	• 외교관용 물품 등의 면세
	제91조	• 종교용품·자선용품·장애인용품 등의 면세
	제92조	• 정부용품 등의 면세
	제93조	• 특정 물품의 면세 • 동식물의 번식·양식용 물품, 항공기의 발착 및 항행의 안전에 필요한 물품, 우리나라 선박이 외국정부의 허가를 받아 외국 영해에서 채집 또는 포획한 수산물 등
	제94조	• 소액물품 등의 면세 ① 상용견품 또는 광고용 물품 ② 우리나라 거주자가 수취하는 자가사용 소액물품
	제96조	• 여행자휴대품·이사물품 등의 감면 ¹⁾
	제97조	• 재수출면세
	제99조	• 재수입면세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	•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해 도입되는 자본재
	제140조	• 「해저광물자원개발법」에 의해 해저광물의 탐사 및 채취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기계 및 장비

주: 1) 면제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여행자 휴대품 또는 별송품은 자진신고에 한해 관세를 경감함
자료: 저자 작성

- 관세납부가 일부 면제되어 감세되는 물품 및 감면율은 다음과 같음
- 세율불균형 물품을 중소기업이 사용하는 경우 관세를 면제하며, 중소기업이 아닌 자가 사용하는 항공기 부분품과 원재료는 관세를 감면함
 - 「민간항공기 무역에 관한 협정」 대상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감면율은 100분의 100, 그 외의 물품은 100분의 40임
 - 학술연구용품에 대한 관세의 감면율은 100분의 80이며, 공공의료기관 및 학교 부설 의료기관에서 사용할 물품의 감면율은 100분의 50임
 - 환경오염방지물품 등에 대한 감면규정에 따른 공장자동화물품의 감면율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 100분의 70, 중견기업 100분의 50이 적용됨
 - 재수출감면 대상 물품은 재수출 기간에 따라 100분의 85 내지 100분의 30의 감면율이 적용됨
 - 손상물품의 경우 저하된 가치에 대하여 관세를 경감하며, 해외입가공물품은 원재료·부분품 또는 가공·수리 물품의 수출신고가격에 상응하는 관세를 경감함
 -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에 따른 관세 감면물품은 해당 관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함
 - 또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에 따른 자본재는 국외 사업장을 국내로 이전하는 경우 100분의 100, 국외 사업장을 축소하면서 국내로 복귀하는 경우 100분의 50의 감면율을 적용함

<표 II -2> 관세감면율 현황

(단위: %)

근거	조문	분야	감면율
「관세법」	제89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율불균형물품의 면세 ① 중소기업이 사용하는 항공기, 반도체 제조용 장비 제조 또는 수리 위한 원재료 및 부분품 ② 중소기업이 아닌 자가 사용하는 항공기 제조 또는 수리 위한 원재료 및 부분품 	면제 민간항공기 100, 기타 40
	제90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술연구용품의 감면세 ① 학술연구용품 및 산업기술연구용품 ② 공공의료기관 및 학교부설의료기관 사용 물품 	80 50
	제95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오염방지물품 등에 대한 감면세 - 공장자동화용 물품 	중소 70, 중견 50
	제98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수출감면세 	30~85 (재수출기간에 따라 경감)

<표 II -2>의 계속

(단위: %)

근거	조문	분야	감면율
「관세법」	제100조	• 손상감세	가치 저하분에 상응하는 관세액
	제101조	• 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세	제조·가공에 사용된 원재료 등, 가공·수리물품의 수출신고가격에 상응하는 관세액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기자재 • 포물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용 물품 등	50
	제118조의2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 감면 ① 국외사업장을 국내로 이전하는 경우 ② 국외사업장 유지하면서 국내 복귀하는 경우	100 50

자료: 저자 작성

2. 주요국의 관세감면제도

가. 미국

1) 관세율의 종류

- 일반 또는 정상 무역관계 국가에 적용되는 일반관세율(General duty)과 자유무역협정 등에 따라 적용되는 특별관세율(Special duty)로 구분
 - 일반특혜관세는 수혜국에서 재배, 생산하거나 제조한 물품을 미국으로 운송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 협정관세는 자유무역협정조약에 의한, 자유무역지역에서의 관세
 - 특정관세는 특정물품에 적용하며 그 예로 민간용으로 사용되는 항공기, 항공기 엔진, 부속품 등이 있음
 - 기타 법률에 따라 적용하는 특별관세가 존재

- 이 외에도 임시 법안, 무역 법안에 따른 잠정관세율이 규정되어 있음

2) 감면 종류

- 미국의 관세감면은 연방 법률과 미국 품목 분류표에 명시되어 있음
 - 미국은 「관세법」을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연방법률에 관세와 관련한 법률을 포함시키고 있음⁵⁾
 - 제19장(19 U.S.C. (Customs Duties))에 관세와 관련한 전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며 제1321조 행정상 예외규정에 소액물품에 대한 면세를 명시하고 있음
 - 이외에도 법적 구속력을 갖는 미국 「관세율표(19 U.S.C 제1202조 Harmonized Tariff Schedule of the U.S.(HTSUS)」에서 관세감면 물품을 정하고 있음
 - 제98류(Chapter): 특정 용도 및 조건을 충족하는 재수입물품, 종교·교육·과학 연구기관이 수입하는 물품 등
 - 제99류(Chapter): 한시적 관세 인하와 관련된 물품, FTA에 의한 물품 등

가) 19 U.S.C에 따른 감면

- 한 사람이 하루에 수입한 물품의 수출국 공정가격 합계가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 관세 및 제세를 면제함⁶⁾
 - 수입물품에 따른 각 면세기준 금액은 다음과 같음
 - 외국에 있는 자가 미국의 거주자에게 보내는 선물의 경우 100달러(버진 군도, 괌, 아메리칸 사모아 거주자가 보내는 것은 200달러)
 - 미국에 도착한 자가 소지한 개인 또는 가정용품으로 제98류에 따른 면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경우 200달러
 - 기타의 경우 800달러
 - 다만, 단일의 주문 또는 계약과 관련된 물품이 면세를 위하여 분할하여 송부된 경우 면세는 적용되지 않음

나) HTSUS에 따른 감면

- 미국은 HTSUS의 제98류에 특정한 요건을 충족한 물품에 대하여 관세의 전부 또

5) 정재호·정재완, 『관세법 체계의 국제비교 연구-조세법적 성격을 중심으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5, p. 17

6) 19 U.S.C. 제1321조

는 일부를 면제하는 물품을 분류하고 있음)

- 재수입물품, 개인용품, 정부·국제기구 또는 종교·교육·과학기관 물품, 비상업 물품, FTA 대상 물품에 대하여 관세감면을 적용함

<표 II -3> 미국 HTSUS 제98류에 따른 관세감면 종류

구분	절	감면대상
재수입 물품	제1절	• 수출 시와 동일한 상태로 재수입하는 물품
	제2절	• 해외에서 물품가치 향상 또는 상태 개선 후 재수입하는 물품
	제3절	• 재반입된 반복사용 가능한 컨테이너 또는 용기
개인용품	제4절	• 해외에서 귀국하는 미국 시민, 미국으로 입국하는 외국인 등이 휴대하거나 수입하는 물품
	제5절	• 미국정부의 명령이나 지시로 미국으로 피난하는 미국 시민의 소지품 등
	제6절	• 외국 정부, 국제기구의 직원, 외국 군인 등의 수하물 및 소지품, 개인 및 가정용품
	제7절	• 외국에서 미국 시민에게 수여하는 메달 등, 외국 시민이 미국 대통령 또는 부통령에게 수여하는 물품
정부·기관물품	제8절	• 미국정부가 직접 수입하는 물품
	제9절	• 외국 정부기관, 국제기구에서 사용하는 물품
	제10절	• 종교·교육·과학·치료 목적으로 설립된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 단체가 사용하는 물품
견본품	제11절	• 주문요청용으로 수입하는 일정량 이하의 주류, 담배, 견본이 분명한 물품
담보제공물품	제12절	• 수입 후 5년 동안 공공기념물 건립 또는 전시회를 위하여 사용하는 것을 요건으로 담보를 제공한 물품
	제13절	• 수입 후 1년 내에 수출하는 것을 요건으로 담보를 제공한 물품
	제14절	• 카페인 또는 화학물질을 제조하는 데 사용하는 것을 요건으로 담보를 제공한 차, 차 찌꺼기·침전물·부스러기
미국국적선박의 생산품	제15절	• 미국 국적의 선박이 공해, 외국 영해에서 채취한 수산물
비상업용 물품	제16절	• 일정금액 이하의 개인 또는 가정용품, 선물 등 비상업용 물품
기타	제17절	•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타 물품
선박 수리용품 및 부분품	제18절	• 입항신고가 필요한 외국 또는 연안무역 선박의 수리용품 또는 부분품

7) CBP, *Tariff Classification*, 2004, p. 32(신상화·박지우·이재선, 『주요교역국의 통관제도_미국편』, 한국 조세재정연구원, 2017, p. 113에서 재인용)

<표 II -3>의 계속

구분	절	감면대상
「무역특별법」에 따른 물품	제19절	• 「아프리카 성장기회법」에 따른 면세물품
	제20절	• 「카리브연안 무역협력법」에 따른 면세물품
FTA에 따른 물품	제22절	• FTA에 따른 물품
	제23절	• USMCA에 따른 물품

자료: HTSUS(2024) 제98류 제1절 내지 제23절 주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나. EU

1) 관세율의 종류

- 유럽관세동맹(European Customs Union)은 1968년 상품의 자유이동 촉진과 단일시장 구축을 목적으로 설립됨
 - 1994년 「유럽공동관세법(Community Customs Code, CCC)」이 시행되기 시작하였음
 - 2013년 기존의 법률을 바탕으로 국제무역 사기 방지, 전자통관 환경을 고려한 「신유럽공동관세법(Union Customs Code, UCC)」을 발표함
 - UCC에 따라 유럽연합 내에서의 관세는 없고 역외는 공동관세가 적용됨

- EU의 관세 종류 중 기본관세율보다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FTA 협정세율, 할당관세, 잠정세율이 있음
 - FTA 협정세율은 자유무역협정 체결국 간 WTO 양허세율보다 낮은 협정세율을 적용함
 - 특정 수입물품에 일정한 수량의 쿼터(Quota)를 설정하여 수입하는 경우 기본관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함
 - 잠정세율은 다음의 물품에 대하여 잠정적으로 기본관세율보다 낮은 관세율을 적용함⁸⁾
 - Autonomous Suspension(Industrial Suspension): 산업 및 제조업 진흥을 위해 일부 원자재, 반제품 및 구성품의 경우에 한해 증명서류를 제출하는 경우⁹⁾
 - Airworthiness Suspension: 항공기의 부분품, 부속품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물

8) EU TAXUD, https://taxation-customs.ec.europa.eu/customs-4/calculation-customs-duties/customs-tariff/suspensions-autonomous-tariff-suspensions_en, 검색일자: 2024. 8. 14.

9) Council Regulation (EU) No 2021/2278

품 수입 시 해당 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¹⁰⁾

2) 감면 종류

- EU는 UCC와 Council Regulation(EC) No.1186/2009에서 특정 상황에서의 관세 면제를 규정하고 있음
 - UCC는 재수입 물품이나 EU 회원국에 등록된 선박에서 채집·가공된 어획물과 같은 일부 특정물품에 대한 관세면제를 규정하고 있음
 - 전반적인 관세감면 규정은 Council Regulation(EC) No.1186/2009에서 정함

<표 II -4> EU 관세감면 종류

구분	근거법령	조항	감면대상
재수입물품	UCC	제203조	• EU 물품을 수출한 후 3년 이내에 재반입된 경우
어획물		제208조	• EU 관세영역 밖에서 EU 등록선박에서 포획·가공된 어획물 및 이들의 생산품
개인물품	Council Regulation (EC) No.1186/2009	제3조	• 제3국에서 EU로 거주지를 이전하는 자의 개인재산
		제12조	• 결혼으로 제3국에서 EU로 거주지를 이전하는 자의 혼수 및 가정용품
		제17조	• EU 거주자가 상속으로 취득한 개인재산
		제21조	• EU에 머무르는 학생의 의류, 교육자료, 가정용품
		제23조	• 제3국에서 발송되는 150유로 이하의 물품
		제25조	• 제3국의 개인이 EU 거주자에게 송부한 45유로 이하의 비상업용 탁송품
사업용물품		제41조	• 여행자의 수하물에 포함된 비상업적 물품
		제28조	• 제3국에서 사업을 중단하고 EU로 이전하는 기업의 자본재, 기타 장비
		제35조	• EU에 인접한 제3국에서 EU의 농부, 어부가 수행한 활동에 따른 농림수산물
		제39조	• EU에 인접한 제3국에서 수행하는 농업을 위한 종자, 비료
과학연구물품		제42조	• 교육적·과학적·문학적 자료
		제53조	• 실험실용 동물, 비상업용의 생물학적·화학적 물질
	제54조	• 인체 기원의 치료물질, 혈액형·조직형 시약	
	제55조	• 비상업적 의료 또는 과학적 목적의 의약품 기기	
	제79조	• 연구목적으로 구성·품질·기술적 특성을 검사, 분석, 시험하기 위한 물품	

10) Council Regulation (EU) 2018/581

<표 II -4>의 계속

구분	근거법령	조항	감면대상
자선·장애물품	Council Regulation (EC) No.1186/2009	제61조	• 무료배포를 위해 수입하는 자선물품
		제66조~ 제68조	• 장애인의 교육·과학·문화발전을 위해 특별히 고안된 물품
		제74조	• 자선단체, 국가기관, 재해구호기관이 수입하는 재해구호물품
국제관례물품		제81조	• 훈장, 메달, 트로피, 기념품 등
		제82조	• 국제관계에 따라 받은 선물
		제85조	• 국가원수에 대한 선물, 사용·소비물품
무역진흥물품		제86조	• 주문요청을 위한 견본
		제87조	• 카탈로그, 가격표, 사용설명서 등 인쇄광고물
지식재산권물품		제90조	• 무역박람회 사용·소비 물품, 무료배포 물품
		제102조	• 저작권, 특허권 보호기관에 제출되는 탁송품
기타 서류 등		제103조	• 관광정보를 수록한 물품
		제104조	• 공공기관 송부 서류, 간행물 등
운송관련물품		제105조	• EU로 운송하는 기간 물품의 보관·보호 물품
	제107조	• EU에 진입하는 차량 등에 포함된 연료, 운할유	
장례용품	제112조	• 제3국 전쟁 희생자의 묘지 및 기념관 건설 물품	
	제113조	• 유골, 관, 화환 등	

자료: UCC 제203조, 제208조; Council Regulation(EC) No.1186/2009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다. 중국

- 중국의 관세감면은 「해관법」에 따라 법정감면(제56조), 특정감면(제57조), 임시감면(제58조)으로 구분
 - 법정감면은 비상업적 목적으로 제공되는 견본 등의 물품, 국제 조직에서 무상으로 증정한 물품, 통관 전 파손된 물품, 관세감면 품목으로 분류된 물품, 중국이 체결한 국제조약에서 감면을 규정한 물품 등에 대해 무조건적으로 감면해 주는 것을 말함
 - 특정감면은 특정 지역이나 기업, 용도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 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것으로 조건부 또는 정책성의 감면을 말함
 - 임시감면은 특수 상황이나 특수 수요에 근거하여 임시적, 개별적으로 감면해

주는 것을 의미하며 면세의 범위, 방법에 관하여는 국무원이 정함

- 법정감면은 무조건 감면으로 중국 『해관법』상에 규정되어 있으며 특정감면 대상은 조건부 감면으로 각각의 특별법과 관세청고시로 규정되어 운영되고 있음
- 특정감면 중 비영리 목적인 과학·교육 관련 용품과 특정산업 설비에 관한 감면이 존재
 - 과학·교육용품 감면세는 정해진 과학 연구기관 또는 교육기관에서 비영리 목적으로 사용할 과학연구, 교육 물품 등을 수입하는 것
 - 국내투자용, 차관사업용 수입설비 감면세는 ‘국가중점발전장려산업’에 속하는 투자사업 중 투자 총액 내에서 수입하는 자의 설비 및 부속품과 예비품을 면세해주는 것

<표 II -5> 중국의 관세감면 종류

법정감면	• 일시적 반입, 반출 물품
	• 재수입하는 물품
	• 재수출하는 물품
	• 파손 등으로 인한 무상 대체품
	• 건당 지수세액 50위안 이하 물품
	• 광고용품
	• 외국정부 등이 무상기증한 물품
	• 손상 또는 손실 물품
	• 선(기)용품, 차량용품
	• 휴대 반입하는 물품
특정감면	• 과학·교육용품 감면세
	• 장애인용품 감면세
	• 가공무역물품 감면세
	• 보세구역 물품 감면세
	• 재난구호용 감면세
	• 구제·자선용 기증물자 감면세
	• 외국인 투자용 수입설비 감면세
	• 국내투자용, 차관사업용 수입설비 감면세
• 집적회로시설 등 감면세	

자료: 정재호·강희우, 『[2018 조세특례 임의 심층평가]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 및 공장자동화 물품 관세 감면』, 기획재정부·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9, p. 98

라. 일본

- 일본은 수입물품에 「관세법」 및 「관세정률법」, 기타 관세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관세를 부과함
 - 수입물품이 일정 조건에 해당하면 관세납부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가 면제되는 경우가 있음

- 일본은 경제, 사회, 문화 및 교육 등의 정책적 요구 또는 국제 관행 등에 따라 관세감면을 시행하고 있음
 - 그 밖에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 지원, 수입촉진 또는 첨단기술 조성 등 국제 협조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도 있음

- 일본도 조세법률주의(헌법 제84조) 원칙에 따라 관세의 영구적 감면세제도에 대해서는 「관세정률법」에 집중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한편 관세는 국가 간 거래에 근거하기 때문에 국제조약 중에 감면세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다면 법률의 규정이 없더라도 그 조약 자체에 의해 관세의 감면이 이루어짐

- 관세의 감면은 그 제도가 영구적인지 또는 잠정적인지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됨
 - 영구적인 감면제도는 「관세정률법」에서 규정하고 있음
 - 잠정적인 감면제도는 「관세잠정조치법」에서 규정하고 있음

- 한편 일본의 관세감면은 수입할 때의 특정한 사실에 의해 관세감면이 확정되는 무조건 감면과, 수입할 때에 조건이 붙는 조건부 감면으로 분류됨
 - 무조건 감면은 수입 후의 사정이 변하더라도 추후에 관세징수 대상이 되는 일은 없음
 - 조건부 감면은 수입 후 일정 기간 내에 붙인 조건을 성취하지 못하면 수입 시의 관세감면효과가 상실되고 감면된 관세를 다시 징수함
 - 조건부 감면세는 다시 일반적인 해제조건부 감면세와 제한적인 해제조건부 감면세로 나뉨

- 일반적인 해제조건부 감면세는 수입할 때 일정한 조건부로 관세를 감면하고 면세조건으로 규정된 용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에는 수입 시 감면한 관세를 징수
- 제한적인 해제조건부 감면은 수입 시 일정한 조건과 함께 수입 후 일정 기간 동안 감면세의 수익자에게 특정행위의 금지를 명하는 것으로 이를 위반한 경우 관세부과와 함께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

1) 「관세정률법」의 규정에 의한 감면

<표 II -6> 일본 「관세정률법」의 규정에 의한 감면

유형	분야	
무조건 감면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변질, 손상 등인 경우의 감세(제10조 제1항) • 생활 관련 물자의 감면(제12조) • 협의의 무조건면세(제14조 제1호~제8호, 제16호~제18호) 	
	재수입감면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공 또는 수선을 위하여 수출된 물품의 감세(제11조) • 재수입면세(제14조 제9호~제11호, 제13호, 제14호) • 재수입감세(제14조의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에서 채포된 수산물 등의 감면세(제14조의3) • 내국원재료로 생산된 제품을 수출한 경우의 면세(대체면세)(제19조의2) • 외교관용물품 등의 면세(자동차, 주류 및 담배 제외)(제16조) 	
일반적 해제조건부 감면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교관용 물품 등의 면세(자동차, 주류 및 담배)(제16조) • 특정용도면세(제15조) 	
	재수출감면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수출면세(제17조) • 재수출감세(제18조)
제한적 해제조건부 감면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조용 원재료 감면세(제13조) • 수출물품 제조용원재료 감면세(제19조) 	

자료: 일본 관세국, https://www.customs.go.jp/tetsuzuki/c-answer/imtsukan/1603_jr.htm, 검색일자: 2024. 3. 11.

가) 무조건 감면세

□ 변질·손상화물의 감세(「관세정률법」 제10조)

- 수입화물이 수입허가 전에 변질 또는 손상된 경우 그 변질 및 손상의 정도에 따라 관세를 경감할 수 있음
- 감세액은 변질 또는 손상에 의한 가치감소분에 따른 관세액과 변질 또는 손상

후의 성질에 따른 관세액 중 많은 금액임¹¹⁾)

□ 생활 관련 물자에 대한 감면(「관세정률법」 제12조)

- 주식(쌀, 벼, 보리, 밀), 돈육, 설탕, 식료품, 의류품 등 기타 생활 관련 물자 등 국민생활과 관련성이 높은 물품은 가격의 폭등, 흉작, 천재지변 등의 경우 국민생활 안정을 위해 감세 또는 면세함
- 그러나 벼, 보리, 대맥, 소맥 등은 「관세잠정조치법」에 따라 무세가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감면이 적용될 수 없음

□ 협의의 무조건 면세(「관세정률법」 제14조)

- 협의의 무조건 면세는 국제관례, 사회통념, 사회정책 등으로 관세를 부과할 필요가 없거나 부과하지 않아야 하는 물품에 대한 면세 규정임¹²⁾
- 일본 왕이 사용하는 물건, 방일 외국원수 등의 물품, 훈장 및 상패 등, 국제연합 등의 기증물품, 박람회 등의 선전용 자료, 기록문서 등 기타 서류, 국가의 전매품, 상품건본, 수출물품용 레이블, 휴대품, 이사화물, 신체장애자용 물품, 뉴스영화용 필름 등, 소액화물(과세가격 합계액이 1만엔 이하 물품) 등이 포함 되어 있음

□ 재수입감면세(「관세정률법」 제11조, 제14조, 제14조의2)

- 가공 또는 수리를 위하여 수출되어 수출허가일로부터 1년 이내에 수입되는 화물은 수출허가 시의 성질에 따른 관세액 범위 내에서 관세를 경감함
- 재외공관에서 반환된 공용품, 수출허가 시의 성질 및 형태로 재수입된 물품, 수출물품의 용기 등은 재수입 시 관세를 면제함
- 보세작업으로 관세가 부과되지 않은 물품이 반송되거나 수출을 조건으로 관세를 경감·면제·환급·공제받은 물품이 수출 후 재수입되는 경우 그 미부과금액, 경감·면제·환급·공제 금액을 초과하는 관세액을 경감함

□ 이 밖에 무조건 감면세

- 외국에서 채포된 수산물 등, 내국원재료로 생산된 제품을 수출한 경우(대체면세),

11) 일본 「관세정률법 시행령」 제2조

12) 강성훈·이재선·노영예·김미정, 『주요교역국의 통관제도_일본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6, p. 112

- 외교관용 물품 등의 면세(자동차, 주류 및 담배 제외) 등
- 단 상호주의 원칙에 의해 외국에 있는 일본 공관에 면세 특권을 부여하지 않는 국가의 공관, 직원에 대하여는 이 면세특권이 주어지지 않음

나) 일반적 해제조건부 감면세

- 외교관용 물품 등의 면세(자동차, 주류 및 담배)(『관세정률법』 제16조 제2항)
 - 외교관용 물품에 대한 면세는 원칙적으로 면시이지만 자동차, 주류 및 담배는 특권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일반적 해제조건부 감면을 시행함¹³⁾
 - 관세를 면제받은 물품이 수입허가일로부터 2년 이내에 용도 외의 용도에 제공되는 경우 그 제공자로부터 면제받은 관세를 즉시 징수함

- 특정용도면세(『관세정률법』 제15조)
 - 다음 등의 특정물품에 대해 수입허가일로부터 2년 이내에 명시된 용도 이외의 용도에 사용되지 않을 것을 전제로 하여 면세를 허용함
 - 공공기관에서 교육, 사회복지, 의료 등 공공 목적의 용도에 사용되는 물품
 - 종교용 물품
 - 국가나 지방 공공단체가 경영하는 학교, 박물관, 전시장, 연구소, 시험소 등 시설에서 이용하는 진열용 표본
 - 학술연구용품, 교육용 물품 등
 - 자선 목적 또는 구호시설 등 사회복지사업을 위한 시설에 사용하는 물품
 - 항공 또는 항해에 필요한 안전부품 등

- 재수출감면세(『관세정률법』 제17조, 제18조)
 - 재수출 면세는 수입허가 후 원칙적으로 1년 이내에 다음 등과 같이 특정한 용도에 사용된 후 다시 재수출되는 화물에 대해 관세를 면제함
 - 단순가공을 한 물건, 시험품, 주문에 필요한 견본
 - 수입물품의 용기, 수출물품의 용기
 - 올림픽 또는 국제회의에 사용되는 물품, 전시회에 출품되는 물품, 일시 입국자가 수입하는 자동차 등

13) 관세청·일본관세연구회, 『일본세관 연수원 교재Ⅱ』, 2012, p. 117

- 재수출 감면은 대차계약 등에 의해 일정기간 사용된 후 다시 수출되는 것으로 잔여가치에 따라 관세를 경감함

다) 제한적 해제조건부 감면세

□ 제조용 원재료 감면세(「관세정률법」 제13조)

- 제조용 원료품으로 수입되어 그 수입허가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세관장의 승인을 받은 공장에서 생산된 다음의 경우 관세를 감세 또는 면세함
 - 배합사료제조용의 옥수수, 수수, 호밀, 바나나 분말, 설탕 등
 - 땅콩유 제조용의 땅콩

□ 수출물품 제조용 원재료 감면세(「관세정률법」 제19조)

- 수출물품 제조에 사용되는 수입원재료에 대해 수입한 지 2년 이내에 이를 원재료로 이용하여 수출할 경우 관세를 경감 또는 면세함

2) 「관세잠정조치법」의 규정에 의한 감면

□ 「관세잠정조치법」은 잠정적으로 감면이 적용되는 임시감면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 무조건 감면(「관세잠정조치법」 제8조)
 - 가공 또는 조립을 위해 수출된 화물을 원료로 한 제품의 감세
- 제한적 해제조건부 감면(「관세잠정조치법」 제4조)
 - 항공기 부분품 등의 면세

<표 II -7> 일본 「관세잠정조치법」의 규정에 의한 감면

유 형	분 야
무조건 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공 또는 조립을 위해 수출된 화물을 원료로 한 제품의 감세(제8조) • 경제연계협정(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에 근거한 가공 또는 수선을 위해 수출된 화물의 면세(제8조의7)
제한적 해제조건부 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공기 부분품, 우주개발 물품 등의 면세(제4조)¹⁾

주: 1) 2026년 3월 31일까지 수입되는 것에 한함
 자료: 일본 관세국, https://www.customs.go.jp/tetsuzuki/c-answer/imtsukan/1603_jr.htm, 검색일자: 2024. 3. 11.

마. 호주

- 호주는 「관세법(Customs Tariff Act 1995)」의 Schedule 4에서 관세가 감면되는 품목을 규정하고 있음
 - 과학적·교육적·문화적 물품, 개인물품, 재수입물품 등 총 58항목에서 정한 품목에 적용되는 관세율을 나열하고 있음

- 특히 제45호 내지 제47호에서는 제조와 관련된 물품의 감면세율을 정하여 특정 장비·기계의 구성요소, 특정 원재료 및 중간재에 대해 감면하고 있음¹⁴⁾
 - 제45호에서는 제84류 내지 제88류, 제89류 내지 제90류의 기계 또는 장비의 구성요소에 대한 감면을 규정함
 - 제46호는 특정 최종제품의 생산에 있어 호주에서 생산된 대체가능 물품에 비해 실질적이고 입증 가능한 성능 우위가 있는 다음에 분류되는 원재료 및 중간재에 적용됨
 - 제28류 내지 제29류, 제32류, 제34류 내지 제35류, 제37류 내지 제38류에 분류되는 화학물품
 - 제39류의 플라스틱과 그 제품
 - 제48류의 종이 및 판지, 그 제품
 - 제47호는 식품포장과 관련하여 호주에서 사용 가능한 원재료 및 물품에 비해 실질적이고 입증 가능한 성능 우위가 있는 다음에 분류되는 원재료 및 중간재에 적용됨
 - 제72류 내지 제82류에 분류되는 금속재료 및 그 제품

14) 호주 「관세법」 Schedule 4

〈표 II -8〉 호주 관세감면 종류

항목	감면대상
제1호 내지 제8호	• 과학적, 교육적, 문화적 성격의 물품
제9호 내지 제14호	• 국제기구를 위한 물품 또는 근해 지역과 관련된 물품
제15호	• 개인 소지품
제16호 내지 제20호	• 호주로 재반입되는 물품
제21호 내지 제22호	• 호주에서 수출된 물품
제23호 내지 제24호	• 기부물품 또는 유증품
제25호	• 트로피, 장식품, 메달, 증서, 상
제26호 내지 제27호	• 소액물품, 견본품
제28호 내지 제30호	• 장애인을 위한 물품
제31호 내지 제33호	• 식물, 의류, 신발
제34호 내지 제41호	• 운송과 관련된 물품
제42호 내지 제43호	• 로봇, 시제품용 물품
제44호 내지 제51호	• 제조와 관련된 물품
제52호 내지 제53호	• 석유 제품책임 부과금이 면제되는 물품
제54호 내지 제58호	• 기타 물품

자료: 호주 「관세법」 Schedule 4

바. 캐나다

- 캐나다는 「관세법(CUstoms Act)」과 「관세율법(Customs Tariff)」에서 관세감면을 규정하고 있음
 - 「관세법」에서는 수입신고 후 반출되기 전 손상, 파손 또는 손실된 물품에 대한 관세경감을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법」은 재수입 물품, 수출용 물품, 여행자 휴대품, 특정 물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물품 및 재료 등에 대한 관세감면을 명시하고 있음

- 「관세율법」 Schedule의 제98류 제1절, 제99류는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과 해당 물품에 적용되는 감면세율을 정하고 있음
 - 제98류 및 제99류는 제1류 내지 제97류에 우선하여 분류되는 특별조항으로 각각 비상업용 물품, 상업용 물품의 감면세율을 명시함

<표 II -9> 캐나다 관세율표 제98류·제99류에 따른 관세감면 종류

구분	호	감면대상
운송수단	제9801호	• 물품이나 승객 운송에 이용되는 제86류 내지 제89류의 운송수단 및 컨테이너
	제9802호	• 캐나다 거주자가 일시적으로 수입하는 운송수단
	제9803호	• 캐나다 비거주자가 일시적으로 수입하는 운송수단
개인·가정용품	제9804호	• 캐나다 거주자 등이 해외에서 획득한 개인·가정용품, 선물
	제9805호	• 캐나다 거주자 등이 해외에서 소유·사용한 개인·가정용품
	제9806호	• 사망한 캐나다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캐나다 거주자에게 상속하는 개인·가정용품
	제9807호	• 이주자가 해외에서 실제 소유·사용한 개인·가정용품
내·외국정부, 국제기구 물품	제9808호	• 외국대표가 개인용 또는 사무용으로 사용하는 물품
	제9810호	• 캐나다에 주둔하는 외국군의 무기, 개인용 물품 등
	제9811호	• 정부가 수입하는 무기, 군수품 등
	제9812호	• UN, NATO 또는 이들 대리인의 출판물
재수입물품	제9813호	• 수출 후 가치향상, 상태개선, 다른 물품과의 결합 없이 재수입된 캐나다 원산지 물품
	제9814호	• 캐나다에서 반출 및 정산 후 수출하여 가치향상, 상태개선, 다른 물품과의 결합 없이 재수입된 물품
자선물품·선물	제9815호	• 자선 목적의 의류·책, 종교·자선·종교협회에 기증되는 물품, 판매용이 아닌 사진
	제9816호	• 해외에서 캐나다로 송부하는 60달러 이하의 선물
소액물품	제9825호	• 개인·가정용으로 우편 또는 택배로 수입되는 500달러 이하의 물품
	제9826호	• 500달러 이하의 여행자 휴대품
	제9827호	• NATO 회원국·영연방국의 군인, 군대의 민간 고용인 등이 수입하는 일정 수량 이하의 알코올제품, 담배류
기타물품	제9817호	• 메달, 트로피, 이와 유사한 물품
	제9818호	• 전시용으로 공공박물관, 공공도서관, 대학, 학교 등이 수입하는 물품
	제9829호	• 특정 계절 동안 거주를 위한 가정용 가구
	제9830호	• 외국협회의 회의, 컨벤션에 사용되는 물품
	제9831호	• 캐나다 거주자가 해외에 있는 동안 노출·가공한 필름
	제9832호	• 관, 유골함
제9833호	• 외국정부 대표가 캐나다 총리, 장관 등에게 기증한 선물	
제조·수리물품	제9901호~제9903호	• 상업적 어업, 해양식물 수확, 농업 또는 원예용으로 사용되는 물품

〈표 II -9〉의 계속

구분	호	감면대상
유대인물품	제9904호~ 제9905호	• 이스라엘·CIFTA 당사국에서 생산된 코셔 와인·발효주, 유월절에 사용되는 물품
식품관련물품	제9906호~ 제9907호	• 특정 요건을 갖춘 연구목적의 식품 및 기타 소비재, 식품 또는 음료의 가공에 사용되는 특정물품
광물탐사물품	제9908호~ 제9910호	• 광물, 칼륨·암염, 석유, 천연가스 등의 탐사, 발견, 개발 등에 사용되는 특정물품
화학물품	제9913호~ 제9920호	• 의약품의 특정 성분, 특정 화학물질, 비료제조용 물품, 향료에 사용되는 특정 휘발성 오일, 살충 등에 사용하는 물품, 수술용 드레싱·붕대 등 제조용 물품
기계제조용물품	제9926호~ 제9927호	• 잔디 깎는 기계, 인쇄 관련 기계
섬유관련물품	제9932호~ 제9939호	• 실·섬유 등의 제조에 사용되는 고무제품·종이제품·제16부 물품·제90류 물품, 스카프, 의류견본, 민족전통 의상, 수공예 의류, 민병대 제복 등
특정기계·장치	제9945호~ 제9950호	• 볼 베어링·보일러·원자로, 벌목 기계, 증기터빈 등의 제조용 물품, 다이오드·트랜지스터, 이와 유사한 반도체 장치 등, 폐수처리 장치 등, 자동지폐지급기·전자계산기·자동자료처리 기계 등, 광섬유·광섬유 다발과 케이블·위성 및 위성 하위 시스템 등
운송수단 관련 물품	제9952호~ 제9975호	• 특정 승용차 제조용 물품, 엔진 및 유압장비 사용물품, 승용차·트럭·버스 등 제조용 부품, 전기도체·제어장치 등, 트랙터·수송용 차량·소방차 등의 수리용 물품, 스노모빌 제조용 물품, 수입되기 25년 전에 제조된 트랙터·수송용 차량·소방차·모터사이클·항공기 등에 사용되는 물품, 선박 등 제조용 물품, 특정 항로 유지관리에 사용되는 준철선·바지선 등, 특정 용도의 선박과 수리·개조 후 재수입된 선박 등, 개인용 선박 제조용 물품, 경전철·지하철 등의 제조·수리·검사 등에 사용되는 물품
의료기기 관련 물품	제9977호~ 제9979호	• 엑스선·알파선·베타선·감마선 등을 사용하는 장치 등, 압력 매트리스·체온계·위생용품 등의 제조용 물품, 정형외과용 기구·산소치료기·수술용 봉합사 등의 제조용 물품, 살균기·엑스레이 필름 등 장애 완화를 위해 특별히 고안된 물품 등
기타물품	제9982호~ 제9994호	• 방위용품, 스포츠 대회용 물품, 종교용 물품, 교육기관용 물품, 골동품, 주문요청용 견본품, 특정국가에서 수리·개조 후 재수입된 물품, 특정 물품의 견본품 등
침구류	제9995호~ 제9996호	• 이불, 깃털침대, 베개 제조용의 물품

자료: 캐나다 「관세율법」 Schedule 제98류 및 제99류 호의 용어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 캐나다에서는 기계제조용물품, 특정기계·장치 등에 관세감면제도를 실시하고 있었음
 - 공장자동화 물품 관세감면처럼 기계에 대해 관세감면을 적용하는 사례임

3. 관세감면의 이론적 논의

가. 관세감면과 기타 조세감면과의 차이점

- 관세감면제도는 관세감면과 함께 관세 적용 후 부과되는 여타 내국세 등도 함께 감면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내국세 감면제도보다 그 파급효과가 크다고 할 수 있음
 - 외국 물품(수입품)에 관세가 부과된 이후에는 국내물품과 동일하게 취급되어 부가가치세 등의 내국세가 적용됨
 - 예를 들어, 1,000원의 수입품에 10% 관세가 부과될 경우, 1,100원(수입액 1,000원 + 관세 100원)에 부가가치세 10%가 부과되어 최종금액은 1,210원(1,100원 + 부가가치세 110원)이 됨
 - 동일한 1,000원짜리 수입품의 관세 100원을 면세할 경우, 1,000원(수입액 1,000원 + 관세 0원)에 부가가치세 10%가 부과되어 최종금액은 1,100원(1,000원 + 부가가치세 100원)이 되어 결과적으로 관세감면으로 인해 관세감면액 100원과, 관세에 적용되던 부가가치세 10원도 함께 감면되면서 추가적인 파급효과가 발생하게 됨
- 따라서 내국세에 대한 조세감면과 달리 수입품에 관세감면이 적용되면 관세감면 혜택과 함께 관세액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등의 내국세 부담이 추가적으로 감소하는 효과가 발생함
 - 내국세에 대한 조세감면 혜택은 물품의 내외국산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물품의 조세감면 혜택만 발생함

나. 부분균형 분석¹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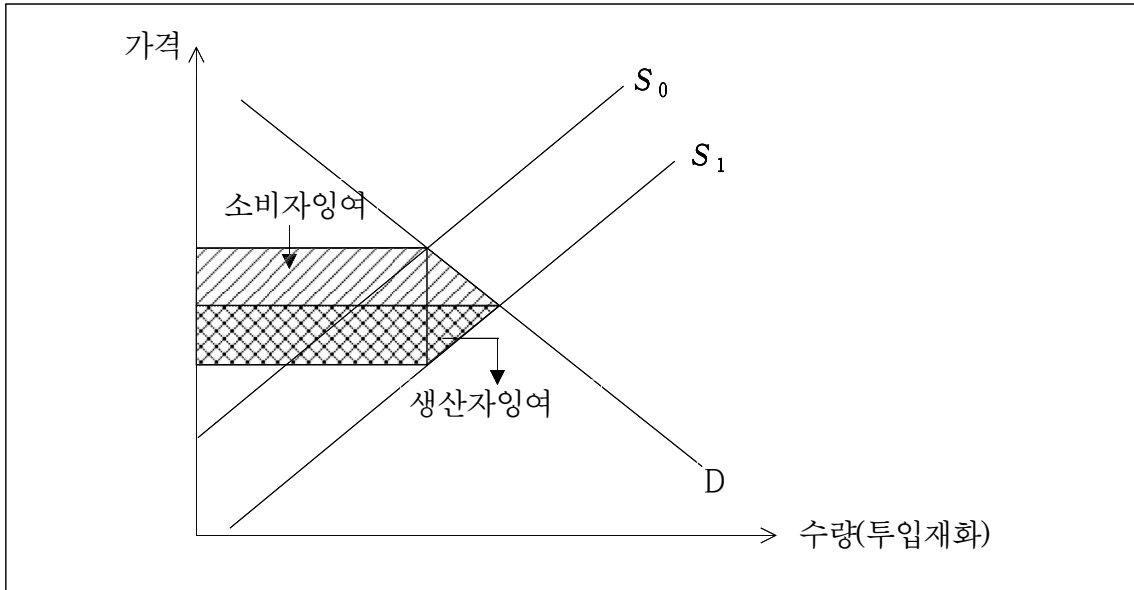
- 이론적으로 조세감면이 있는 경우 해당 분야의 지출이나 산출이 증가하게 되고, 또한 사회적 혜택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그림 II-1]의 빗금친 부분만큼 생산자잉여 및 소비자잉여 발생
 - 최종 소비재 공급자의 비용곡선은 조세감면만큼 하락하게 되어 공급곡선이 원래의 위치(S_0)에서 아래(S_1)로 이동하게 되고, 이로 인해 가격이 하락하여 최종 소비재 판매는 증가하게 됨
 - 따라서 [그림 II-1]의 빗금친 부분만큼 생산자잉여 및 소비자잉여 발생

- 먼저 조세감면이 최종소비재에 대해 행해지는 경우, 조세감면은 소비자에 대해 행해진 것이지만 실제적인 혜택은 최종재 생산업자와 소비자가 나누어 가지게 됨
 - 이에 따라 소비자가 누리는 혜택은 [그림 II-1]에서 네모 모양으로 표시되는 정부의 세수 손실보다 작게 됨
 - 이러한 소비자잉여 및 생산자잉여의 상대적 크기는 가격탄력성에 따라 달라짐
 - 그림은 완전경쟁시장을 상정한 것이지만 만약 경쟁이 제한적이어서 기업이 이윤극대화가 되는 가격을 설정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에는 생산자의 잉여가 더욱 커지게 됨

- 예를 들어, 이러한 이론적 분석을 농업용 면세유에 대한 조세감면에 적용해 보면, 조세감면은 농민에 대해 행해진 것이지만 실제적인 혜택은 면세유 생산업자와 소비자인 농민이 나누어 가지게 됨
 - 따라서 정부의 정책목표가 농민의 소득 증대에 있다면 조세(소비세)감면보다 농민에게 직접 지원(직불제)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

15) 부분균형분석은 박기백·정재호, 『조세감면의 합리화와 효율적 운용방안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03에서 인용

[그림 II -1] 생산자 및 소비자잉여



자료: 저자 작성

□ 다음으로 조세감면 대상 재화가 최종소비재가 아닌 생산의 중간재인 경우를 고려해 보면, 앞선 논의와 마찬가지로 중간재에 조세감면을 적용하면 실제 혜택은 (중간재)생산자와 (중간재)소비자가 나누어 가지게 되고, 추가로 중간재를 사용해서 생산한 최종재 소비자도 혜택을 받게 됨

- 중간재의 가격 하락에 따른 비용절감으로 최종재의 생산비용이 낮아지면서,¹⁶⁾ 최종재의 가격이 인하되어 이 최종재의 소비자가 혜택을 받게 됨
- 중간재 생산자는 해외 생산자이고 중간재 소비자는 국내 기업이 됨
 - 공장자동화 물품의 경우에는 공장자동화 물품이라는 중간재를 생산하는 해외 생산자(중간재 생산자), 해외에서 생산된 공장자동화 물품을 구매한 국내 중소·중견기업(중간재 소비자), 이 공장자동화 물품을 이용해서 생산된 최종재를 구매하는 소비자(최종재 소비자)

□ 따라서 정부가 중간투입재에 대한 조세를 감면하면, 그 혜택은 중간재를 사용하는 구매자뿐만 아니라 중간재 생산자, 최종 소비자 등으로 누출됨

- 이러한 현상은 중간재 생산자의 독점성이 강할수록, 최종재가 가격에 대해 비

16) 중간재 가격하락으로 최종재의 생산비용이 감소하지만, 최종재 생산 증가에 따른 생산비용이 증가하고, 생산 증가로 최종재의 가격이 하락하면서 최종재 가격이 비탄력적이어서 전체 판매액이 감소한다면 중간재를 사용하여 최종재를 생산한 생산자는 전체적으로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음

탄력적일수록 커짐

- 즉, 공장자동화 물품이라는 중간재에 대해 관세감면을 실시하면, 그 혜택은 공장자동화물품 생산자(해외생산자), 공장자동화 물품의 구매자(국내 중소기업), 그리고 공장자동화 물품을 이용해 생산된 최종재의 소비자(국내 소비자)가 됨

- 그리고 관세감면 대상이 국내에서 제작 곤란한 물품이기 때문에 공장자동화 물품 생산자(해외생산자)의 독점성이 강할 수 있어, 관세감면 혜택이 공장자동화 물품 생산자(해외생산자)에게 누출될 가능성이 높음
 - 국내에서 제작 곤란한 물품에 한해 관세감면을 적용하기 때문에 공장자동화 물품 생산자(해외생산자)의 독점성이 강할 가능성이 높음

- 따라서 정부가 특정 정책목표를 위해 조세감면을 하고자 할 때에는 앞에서 분석한 것과 같은 혜택의 누출 문제를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음

Ⅲ. 공장자동화 물품 관세감면제도



Ⅲ. 공장자동화 물품 관세감면제도

1. 관세감면제도 현황

가. 제도 개요

- 공장자동화 물품에 대한 관세감면제도는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공장자동화 물품이 수입될 때 그 관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임
 - 「관세법」 제95조 제1항 제3호

<표 Ⅲ-1> 「관세법」 제95조(환경오염방지물품 등에 대한 감면)

제95조(환경오염방지물품 등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감면할 수 있다.

1. 오염물질(소음 및 진동을 포함한다)의 배출 방지 또는 처리를 위하여 사용하는 기계·기구·시설·장비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2. 폐기물 처리(재활용을 포함한다)를 위하여 사용하는 기계·기구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3. 기계·전자기술 또는 정보처리기술을 응용한 공장 자동화 기계·기구·설비(그 구성기기를 포함한다) 및 그 핵심부분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라 관세를 감면하는 경우 그 감면기간과 감면율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자료: 「관세법」 제95조(환경오염방지물품 등에 대한 감면)

나. 도입목적

- 공장자동화 기계·기구·설비 및 그 핵심부품으로서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품목에 한하여 조세지원을 해줌으로써 생산력을 제고하고 품질 향상을 도모하는 등 국내 제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함

다. 정책대상자

- 정책대상자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임

- 중소기업체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제조업으로 분류되는 업체를 의미함
 -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과 해당 기업의 평균매출액과 연간매출액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기준에 맞을 것
 - 자산총액 5,000억원 미만일 것
 -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 자산총액이 5,000억원 이상인 법인이 주식 등의 30% 이상을 직·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기업이 아닐 것
 - 관계기업에 속한 기업의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의해 산출된 평균매출액 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기준을 만족할 것

- 중견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의4 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제조업으로 분류되는 업체를 의미함
 - 중소기업이 아닐 것
 -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이 아닐 것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경영하지 않을 것
 - 소비성 서비스업
 -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다음에 적합할 것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을 것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기준인 자산총액 이상인 기업 또는 법인이 해당 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30% 이상 소유한 경우로서 최다출자자 기업이 아닐 것
 - 직전 3개 과세연도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3,000억원 미만인 기업일 것

<표 III-2> 중소기업의 범위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 ①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 등(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 가.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 나.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
 3.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

- 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일 것
 - 가.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과 해당 기업의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을 것
 - 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일 것
 2.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일 것
 - 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하되, 비영리법인 및 제3조의2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이 주식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최대출자자인 기업. 이 경우 최대출자자는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소유한 법인 또는 개인으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합산하여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를 말하며, 주식등의 간접소유 비율에 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3항을 준용한다.
 - 1)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임원
 - 2)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인인 경우: 그 개인의 친족
- 다.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제7조의4에 따라 산정한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

자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표 III-3〉 중견기업의 범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의4

- ① 법 제7조의4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1. 중소기업이 아닐 것
 - 1의2.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기관이 아닐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경영하지 않을 것. 이 경우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
 - 가. 제29조 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
 - 나.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2호 각 목의 업종
 3.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1호에 적합할 것
 4. 직전 3개 과세연도의 매출액(매출액은 제2조 제4항에 따른 계산방법으로 산출하며, 과세연도가 1년 미만인 과세연도의 매출액은 1년으로 환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의 평균 금액이 3천억원 미만인 기업일 것

자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의4 제1항

라. 수혜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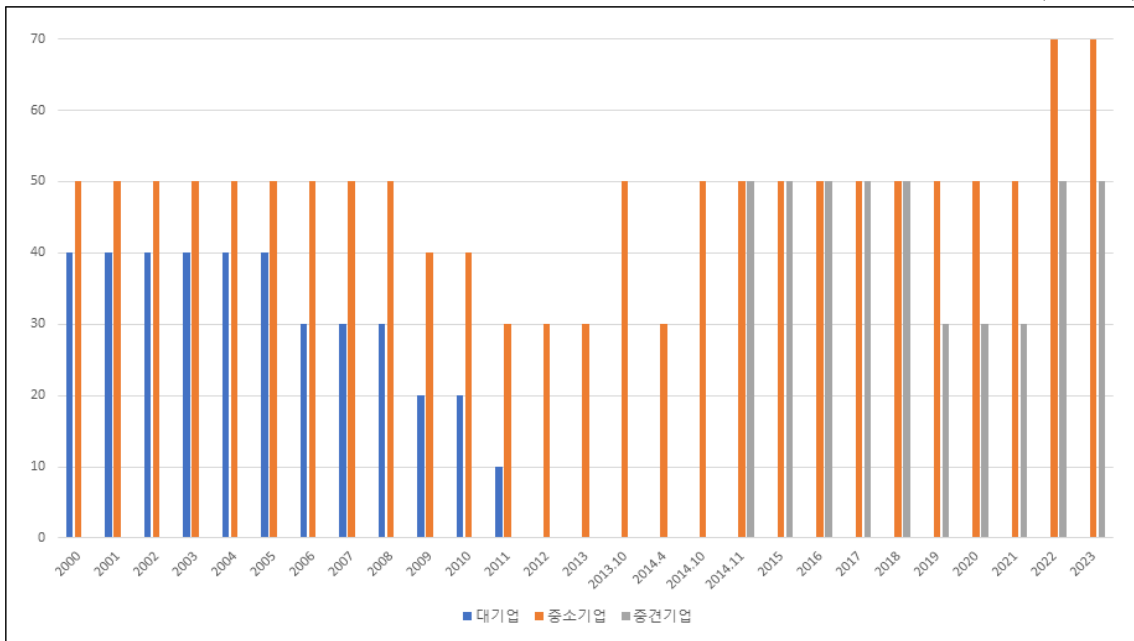
- 국내 제작이 곤란한 공장자동화 기계, 기구, 설비 및 핵심부품 수입 시 관세감면
 - 중소기업이 2024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경우에는 70%의 감면율 적용
 - 중견기업이 2024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경우에는 50%의 감면율 적용

- 공장자동화 물품에 대한 관세감면율은 시기별 그리고 정책대상자별로 지속적으로 조정되었음
 - 대기업의 경우 감면율을 40%에서 10%로 점진적으로 낮추면서 감면 제도를 폐지하였음
 - 2012년부터 대기업에 대한 감면제도 폐지
 -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의 감면율은 30~70%로 경제 여건에 따라 변경되었음
 - 중소기업에 대하여 주로 50%의 감면율을 적용하였으나, 2022년 이후부터 감면율을 70%로 상향하면서 현재 2000년 이후 가장 높은 감면율을 적용하고 있음

- 2014년부터 중견기업이 포함되었으며, 중견기업의 감면율은 30~50%로 경제 여건에 따라 변경되었음

[그림 III-1] 공장자동화 물품 관세감면율 추이

(단위: %)



자료: 「관세법 시행규칙」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표 III-4> 공장자동화 물품 관세감면 변경사항

연도	적용 기간	감면율
1993. 12.	감면조항 신설	
2000. 12.	일몰제 도입 일몰: 2005년 12월 31일까지	대기업: 40% 감면, 중소기업: 50% 감면
2005. 12.	일몰 연장: 2007년 12월 31일까지	대기업: 30% 감면, 중소기업: 50% 감면
2007. 12.	일몰 연장: 2008년 12월 31일까지	대기업: 30% 감면, 중소기업: 50% 감면
2008. 12.	일몰 연장: 2009년 12월 31일까지	대기업: 20% 감면, 중소기업: 40% 감면
2009. 12.	일몰 연장: 2010년 12월 31일까지	대기업: 20% 감면, 중소기업: 40% 감면
2010. 12.	일몰 연장: 2011년 12월 31일까지	대기업: 10% 감면, 중소기업: 30% 감면
2011. 12.	적용대상 축소(중소기업으로 한정) 일몰 연장: 2013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 30% 감면
2013. 10.	일몰제 폐지	중소기업: 30% 감면 (2014년 3월 31일까지는 50% 감면)
2014. 10.	적용대상 확대(중견기업 포함) 기한 연장(2015년 12월 31일까지)	중견기업, 중소기업: 50% 감면

<표 III-4>의 계속

연도	적용 기간	감면율
2015. 12.	기한 연장(2016년 12월 31일까지)	중견기업, 중소기업: 50% 감면
2016. 12.	기한 연장(2018년 12월 31일까지)	중견기업, 중소기업: 50% 감면
2018. 12.	기한 연장(2019년 12월 31일까지)	중견기업: 30% 감면, 중소기업: 50% 감면
2019. 12.	기한 연장(2021년 12월 31일까지)	중견기업: 30% 감면, 중소기업: 50% 감면
2021. 12.	기한 연장(2022년 12월 31일까지)	중견기업: 50% 감면, 중소기업: 70% 감면
2022. 12.	기한 연장(2023년 12월 31일까지)	중견기업: 50% 감면, 중소기업: 70% 감면
2023. 12.	기한 연장(2024년 12월 31일까지)	중견기업: 50% 감면, 중소기업: 70% 감면

자료: 「관세법 시행규칙」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마. 사후관리

- 관세감면을 받은 공장자동화 물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일정 기간 (사후관리기간) 동안 감면받은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양도 및 임대할 수 없음
 - 「관세법」 제102조 제1항

- 사후관리기간은 물품의 내용연수(「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에 의한 기준내용연수)를 기준으로 사후관리기간을 정하고 있음¹⁷⁾
 - 내용연수가 5년 이상인 물품은 3년(다만, 연구개발용 기자재 등 학술연구용품 감면의 경우 2년)
 - 내용연수가 4년인 물품은 2년
 - 내용연수가 3년 이하인 물품은 1년 이내
 - 다른 용도로 사용 가능성이 적은 물품은 1년 이내¹⁸⁾
 - 장애인 등 특정인을 위한 사용 물품과 타 용도 사용이 불가능한 금형 등의 경우에는 수입신고 수리일까지
 - 박람회, 전시회 등 특정 행사에 사용되는 물품은 용도의 소멸일 또는 행사의 종료일까지
 - 원재료, 부분품 또는 견품인 경우 1년 이내¹⁹⁾

17) 「관세법 시행령」 제110조 제1호

18) 「관세법 시행령」 제110조 제2호

- 관세감면물품에 대한 세율에 감면율을 곱한 율을 기준으로 사후관리기간을 정할 수 있음²⁰⁾
 - 관세감면물품의 관세율 × 감면율이 3% 이하는 1년 이내
 - 관세감면물품의 관세율 × 감면율이 7% 이하는 2년 이내

바. 감면대상 품목

- 관세감면 대상 공장자동화용 물품은 새로운 관세감면 수요 반영 등을 위해 매년 조정하고 있음
 - 2024년 관세감면 대상 공장자동화용 물품 수는 총 46개로 전년 43개에 비해 3개 추가
 - 글로벌 경기둔화 등으로 경영 여건이 어려워진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관세가 감면되는 공장자동화 물품에 자동 캔 제조기 등 3개 물품을 추가함²¹⁾

〈표 III-5〉 관세감면 대상 공장자동화용 물품 수¹⁾

(단위: 개)

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물품 수	66	56	44	62	59	79	68	49	44	52	43	43	46

주: 「관세법 시행규칙」 별표 2의4 연번 기준
 자료: 「관세법 시행규칙」 각 연도 제정·개정문

사. 조세지출 규모

- 공장자동화 물품에 대한 관세감면에 따른 조세지출 규모는 최근 3년간 평균 약 60억원으로 추정됨
 - 감면대상에 대기업이 포함되었던 2005년에는 조세지출 규모가 약 1,234억원에 이르기도 하였지만, 대기업이 제외되면서 조세지출규모는 20억~30억원으로 감소하였음
 - 2012년부터 감면대상에서 대기업이 제외되면서 조세지출규모가 약 21억원으

19) 「관세법 시행령」 제110조 제3호

20) 「관세법 시행령」 제110조 제4호

21) 「관세법 시행규칙」 [시행 2024. 1. 1.] [기획재정부령 제1033호, 2023. 1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로 대폭 감소하였음

- 2015년부터 수혜대상으로 중견기업이 포함되면서 조세지출 규모가 약 60억원 수준을 증가하였음
- 2023년도 조세지출규모는 약 42.9억원으로 추정됨(관세청에서 제공한 자료를 취합한 수치)

<표 III-6> 공장자동화 관세감면 조세지출 규모

(단위: 억원)

구분	2005	...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전망)	2024 (전망)
관세	1,234	...	61	59	36	30	60	63	66	68

자료: 기획재정부, 『조세지출예산서』, 각 연도

아. 제도 연혁

- 공장자동화물품의 관세감면 제도는 1993년 말에 제도가 신설된 이후 감면대상, 감면율, 그리고 일몰 여부 등이 여러 차례 변경되었음
 - (일몰) 1993년 말에 제도가 신설되었을 때 일몰 조항이 없었으나, 2000년부터 일몰제가 도입된 이후 6차례에 걸쳐 일몰이 연장된 이후 2013년부터 일몰제가 폐지되었음
 - (수혜대상) 2000년부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감면율을 차등 적용하였으며, 2012년부터는 수혜대상을 중소기업체로 한정하였고, 2014년 이후부터 수혜대상을 중견기업으로 확대하여 현재까지 적용하고 있음
 - 2012년 당시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2개 분류만 있는 상황에서 대기업을 제외하면서 중견기업과 같이 제외되어 중소기업체만 남았음
 - 2014년에 중견기업의 투자를 확대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중견제조업체를 공장자동화 물품 관세감면 적용대상자에 추가함²²⁾
 - (감면율) 대기업의 경우 감면율을 40%에서 10%로 점진적으로 낮추면서 감면제도를 폐지하였음.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체의 감면율은 30~70%로 경제 여건에 따라 변경되었음

22) 「관세법 시행규칙」 [시행 2014. 11. 1.] [기획재정부령 제440호, 2014. 10.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중소기업에 대하여 주로 50%의 감면율을 적용하였으나, 2022년 이후부터 감면율을 70%로 상향하면서 현재 2000년 이후 가장 높은 감면율을 적용하고 있음
- 2022년에는 COVID-19로 경영 여건이 어려워진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설비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공장자동화 물품 관세감면율을 상향조정함²³⁾

<표 III-7> 공장자동화 물품 관세감면 변경사항

연도	주요 변경사항
1993.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면조항 신설(「관세법」 제28조의7 제1항 제4호) 및 대상물품 규정(「관세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제2항) - 기계·전자기술 또는 정보처리기술을 응용한 공장자동화 기계·기구·설비 및 동 물품의 핵심부분품으로서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물품을 수입할 경우 관세 감면
2000.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법」 전문개정에 따라 조문 변경(「관세법」 제95조 제1항 제4호로 이관) 및 일몰제 도입(「관세법 시행규칙」 제46조 제3항 제2호) - 2005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분에 한하여 40% 감면(중소제조업체: 50% 감면)
2005.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면율 인하 및 일몰 연장 - 2007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분에 한하여 30% 감면(중소제조업체: 50% 감면)
2007.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몰 연장 - 2008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분에 한하여 30% 감면(중소제조업체: 50% 감면)
2008.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면율 인하 및 일몰 연장 - 2009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분에 한하여 20% 감면(중소제조업체: 40% 감면)
2009.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면대상물품 별표 통합(별표에 따른 지정품목으로 변경) 및 일몰 연장 - 2010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분에 한하여 20% 감면(중소제조업체: 40% 감면)
2010.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면율 인하 및 일몰 연장 - 2011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분에 한하여 10% 감면(중소제조업체: 30% 감면)
2011.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문 변경(「관세법」 제95조 제1항 제3호로 이관)
2011.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용대상 축소(중소제조업체로 한정) 및 일몰 연장 - 2013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이 수입신고하는 분에 한정하여 30% 감면
2013.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몰제 폐지 및 한시적 감면율 확대(50%) 적용 - 중소기업이 수입신고하는 분에 한정하여 30% 감면(2014년 3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분에 대하여는 50% 감면)
2014.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시적 적용대상 확대(중견기업 포함, 감면율 50%) 적용 - 중소기업이 수입신고하는 경우: 30% 감면(2015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경우: 50% 감면) - 중견기업이 2015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경우: 50% 감면
2015.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시적 감면율 확대기한 연장(2016년 12월 31일까지)

23) 「관세법 시행규칙」 [시행 2022. 1. 1.] [기획재정부령 제881호, 2021.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표 III-7>의 계속

연도	주요 변경사항
2016. 12.	○ 한시적 감면을 확대기한 연장(2018년 12월 31일까지)
2018. 12.	○ 한시적 감면을 확대기한 연장(2019년 12월 31일까지) ○ 중견기업의 감면을 축소 - (기존) 50% → (개정) 30%
2019. 12.	○ 한시적 감면을 확대기한 연장(2021년 12월 31일까지)
2021. 12.	○ 한시적 감면을 확대기한 연장(2022년 12월 31일까지) ○ 한시적 감면을 확대(감면을 개정) - 중소기업: (기존) 50% → (개정) 70% - 중견기업: (기존) 30% → (개정) 50%
2022. 12.	○ 한시적 감면을 확대기한 연장(2023년 12월 31일까지)
2023. 12.	○ 한시적 감면을 확대기한 연장(2024년 12월 31일까지)

자료: 「관세법 시행규칙」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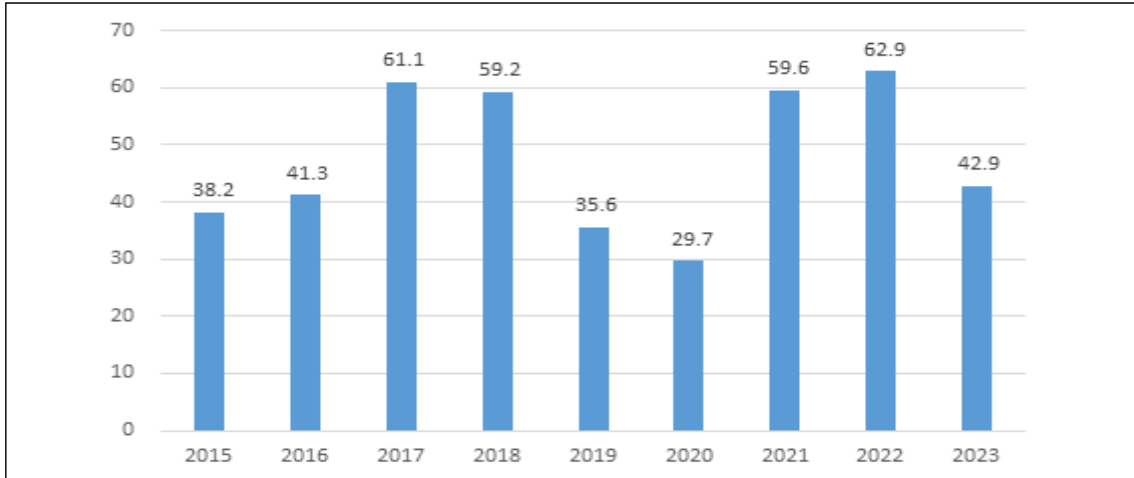
2. 공장자동화 물품의 관세감면 실적 분석

가. 관세감면 규모

- 공장자동화 물품에 대한 관세감면 규모는 2015년부터 2023년까지 등락을 거듭하였으며, 2023년에는 약 42.9억원의 관세가 감면됨
 - 2015~2016년 약 40억원 규모이던 공장자동화 물품 관세감면은 2017~2018년 약 60억원으로 규모가 커짐
 - 2019년 중견기업의 관세감면율이 30%로 하향됨에 따라 감면규모도 2019년 약 35.6억원, 2020년 약 29.7억원으로 감소함
 - 2021년 약 59.6억원이던 관세감면 규모는 2022년 약 62.9억원으로 증가하였다가 2023년에는 약 42.9억원으로 감소함

[그림 III-2] 공장자동화 물품의 관세감면 규모(2015~2023년)

(단위: 억원)



자료: 관세청 내부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공장자동화 물품 감면대상 물품의 전체 수입액 대비 감면적용 물품의 수입액은 2015년부터 2023년까지 약 1.1~2.6%의 수준임
 - 관세감면 규모가 컸던 2017~2018년에는 감면 적용 수입액이 감면 대상 전체 수입액의 약 2.2%, 2.6%를 차지하였음
 - 감면대상 전체 수입액은 공장자동화 물품 감면대상으로 지정된 HS 6단위로 분류되는 물품의 전체 수입액을 말함
 - 감면적용 수입액은 감면대상 물품 중 수입 시 감면을 적용받은 신고 건의 수입액을 말함
 - 감면 적용물품의 수입액 비중은 감면 규모과 유사한 추이를 보이면서 2023년에는 약 1.1%의 비중을 나타냄

<표 III-8> 관세감면 대상 공장자동화 물품의 수입액 비중

(단위: 억원, %)

연도	전체 감면대상 품목 수입액 ¹⁾	감면 혜택(적용) 물품 수입액 ²⁾	비중
2015	82,644.5	973.9	1.2
2016	68,437.1	1,057.9	1.5
2017	72,348.2	1,626.7	2.2
2018	66,589.5	1,745.9	2.6
2019	67,471.7	928.5	1.4
2020	66,963.9	812.6	1.2

<표 III-8>의 계속

(단위: 억원, %)

연도	전체 감면대상 품목 수입액 ¹⁾	감면 혜택(적용) 물품 수입액 ²⁾	비중
2021	73,406.4	1,233.9	1.7
2022	76,519.4	1,207.9	1.6
2023	76,082.0	843.7	1.1
합계	650,462.8	10,430.9	1.6

주: 1) 공장자동화 감면 대상 품목(HS 6단위)의 전체 수입액

2) 공장자동화 감면 대상 품목(HS 6단위) 중 공장자동화 감면을 적용받은 물품의 수입액

자료: 관세청 내부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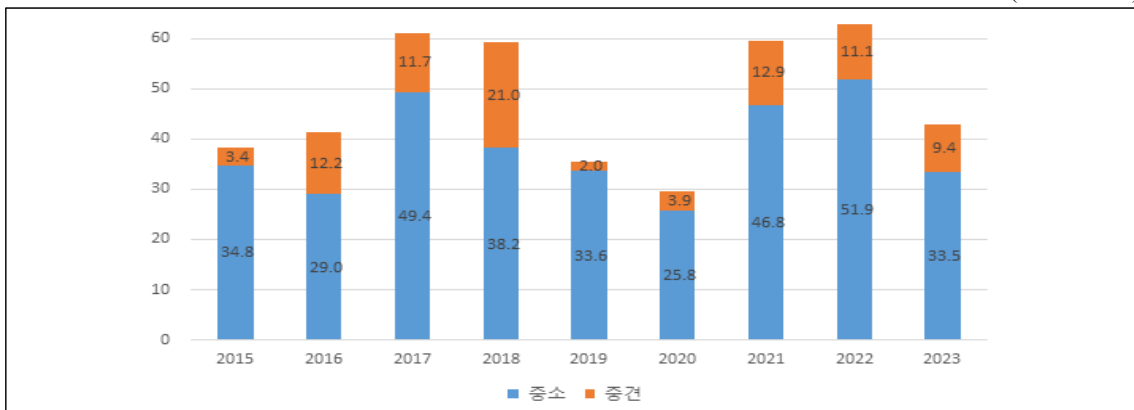
나. 기업 유형별 분석

- 중견기업의 관세감면액은 2015년 약 3.4억원에서 2016년 약 12.2억원으로 증가했으며, 2018년에는 약 21억원까지 증가했지만, 감면을 인하로 인해 2019년부터는 감소하였음
 - 2019년 중견기업에 대한 관세감면율이 30%로 줄어들어 따라 관세감면액도 약 2억원으로 대폭 감소하였음

- 2023년에는 중견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감면규모가 감소하여 각각 약 9.4억원과 약 33.5억원의 관세감면을 적용받음
 - 관세감면 규모가 큰 폭으로 증가한 2021년에는 중소기업의 혜택은 전년대비 약 21억원 늘어난 약 46.8억원이었으며, 중견기업은 약 12.9억원의 혜택을 받음

[그림 III-3] 공장자동화 물품의 기업유형별 관세감면 규모(2015~2023년)

(단위: 억원)



자료: 관세청 내부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공장자동화 물품 관세감면을 받는 업체의 대부분은 중소기업이었음
 - 2023년 총 91개 업체 중에서 중소기업이 80개, 중견기업이 11개
 - 2015년부터 2023년까지 평균 89.2% 정도가 중소기업이었고, 10.8%만이 중견기업이었음

<표 III-9> 공장자동화 물품 관세감면을 받은 기업 수

(단위: 개)

연도	전체	중소기업	중견기업
2015	140	130	10
2016	104	90	14
2017	139	122	17
2018	156	136	20
2019	118	110	8
2020	72	64	8
2021	129	115	14
2022	132	118	14
2023	91	80	11

자료: 관세청 내부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2015년부터 2023년까지 9년간 업체당 평균 관세감면액은 약 4,010만원임
 - 업체당 평균 최소 감면액은 약 90만원이고, 평균 최대감면액은 약 4.27억원임
- 중견기업의 업체당 평균 관세감면액은 약 6,950만원으로, 중소기업의 업체당 평균 관세감면액인 약 3,610만원보다 거의 2배에 가까운 약 3,340만원 더 많이 감면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중소·중견기업의 관세감면율이 50%로 동일했던 2015년부터 2018년까지의 중견기업 평균 관세감면액은 약 7,390만원으로 더 많았음
 - 2021년 중견기업 중에서 관세감면액이 가장 큰 기업의 감면액은 8.6억원이었음
 - 참고로 2021년 전체 관세감면액은 59.6억원으로 전체의 14.4%를 차지함

<표 III-10> 업체유형별 업체당 공장자동화 물품 관세감면액 수준

(단위: 백만원)

연도	전체			중소기업			중견기업		
	평균	최소	최대	평균	최소	최대	평균	최소	최대
2015	27.3	0.3	136.5	26.7	0.3	136.5	34.4	12.9	65.8
2016	39.7	0.5	424.0	32.3	0.5	258.4	87.2	3.2	424.0
2017	44.0	0.5	926.1	40.5	0.5	926.1	68.8	3.1	367.0
2018	38.0	0.7	457.7	28.1	0.7	356.9	105.0	9.6	457.7
2019	30.1	0.5	189.0	30.5	0.5	189.0	24.7	1.6	58.9
2020	41.2	3.0	256.0	40.3	3.0	256.0	48.8	10.4	199.5
2021	46.2	0.8	855.6	40.7	0.8	257.8	92.1	3.9	855.6
2022	47.7	0.5	322.0	43.9	0.5	189.1	79.1	6.0	322.0
2023	47.1	1.1	276.1	41.8	1.1	158.9	85.8	1.7	276.1

자료: 관세청 내부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다. 국가별 수입

- 2023년 공장자동화 관세감면 적용 물품이 수입된 국가는 총 6개 국가였으며, 2015년부터 관세감면 적용물품은 4-8개 국가에서만 수입됨
 - 2015년부터 계속하여 공장자동화 물품 관세감면 적용물품이 수입된 국가는 일본, 독일, 대만, 중국 4개국임
 - 그 외에 미국, 이탈리아, 세르비아, 체코, 튀르키예, 영국, 벨기에, 인도, 캐나다 등에서도 공장자동화 물품 관세감면 적용물품이 수입된 적이 있음

<표 III-11> 관세감면 대상 공장자동화 물품의 수입국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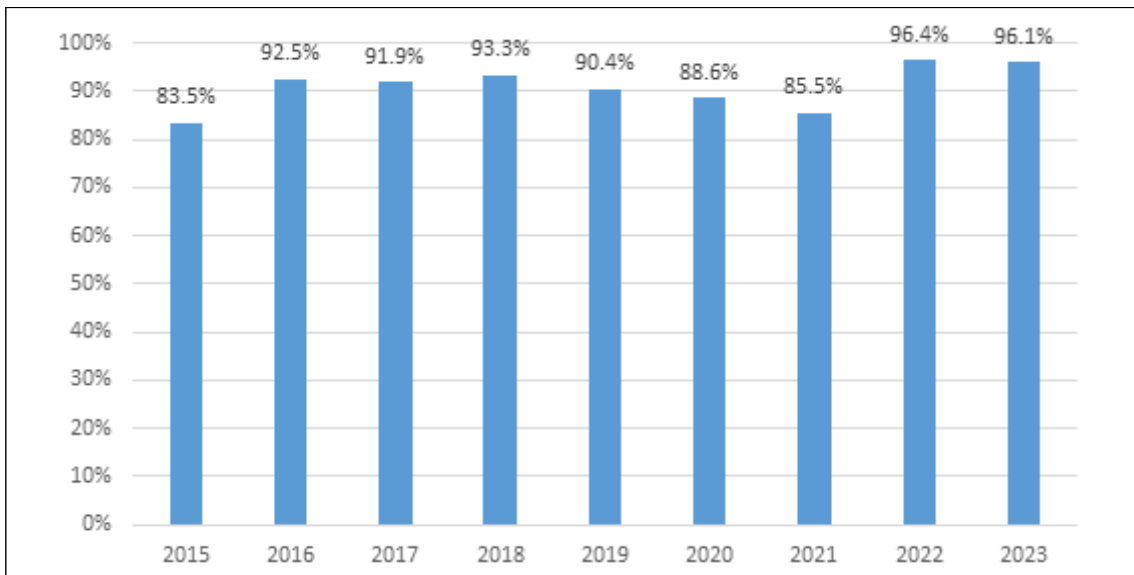
연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국가 수	5	8	5	5	5	5	7	4	6

자료: 관세청 내부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공장자동화 물품 감면 적용물품은 2015년 이후 80% 이상이 일본에서 수입되었으며 독일, 대만에서 5% 안팎으로 수입됨
 - 2022년 이후 일본에서의 수입 비중이 증가하여 2022년과 2023년의 공장자동화 감면 적용물품의 96.4%와 96.1%가 일본에서 수입됨

- 중국의 경우 2015년 약 10%의 감면 적용 공장자동화 물품이 수입되었으나 한·중 FTA의 영향으로 2016년 이후에는 그 비중이 1% 정도로 감소함
- 독일에서는 약 1~3%의 감면 적용 공장자동화 물품이 수입되고 있음
 - 2021년에는 제8441호 종이 가공기계가 수입되면서 일시적으로 비중이 약 7.5%로 증가하였지만, 2022년 이후 약 1% 정도를 유지하고 있음
- 대만도 약 2~4%의 비중을 보이고 있으며, 2023년 약 1.4%로 감소하였음
 - 2020년에는 제8441호 종이 가공기계와 제8460.24호 연삭기가 수입되면서 그 비중이 8%로 일시적으로 증가하기도 하였음

[그림 III-4] 관세감면 적용 공장자동화 물품 품목의 일본 수입 비중



자료: 관세청 내부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관세감면 적용 공장자동화 물품의 일본 수입 비중은 2015년, 2020년, 2021년에 90% 미만으로 감소하였는데, 이는 다른 국가에서 큰 금액의 물품이 수입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비중이 감소한 것으로 보임
 - 2015년에는 중국에서 수입한 금액이 10억원이 넘는 제8417.80호의 자동열처리로, 제8445.30호의 연삭기가 수입되었음
 - 2020년에 대만에서 약 20억원의 제8441호 종이 가공기계와 약 10억원의 제 8460.24호 연삭기가 수입됨
 - 2021년에는 독일에서 약 11억~18억원의 제8441호 종이 가공기계가 수입됨

<표 III-12> 관세감면 적용 공장자동화 물품 품목의 원산지별 수입액 및 비중

(단위: 억원, %)

국가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일본	812.8	978.6	1,495.6	1,629.7	839.1	719.9	1,055.4	1,165.0	810.8
	(83.5)	(92.5)	(91.9)	(93.3)	(90.4)	(88.6)	(85.5)	(96.4)	(96.1)
독일	41.7	24.8	42.9	44.1	39.3	17.1	93.0	13.9	6.4
	(4.3)	(2.3)	(2.6)	(2.5)	(4.2)	(2.1)	(7.5)	(1.2)	(0.8)
대만	20.6	35.0	29.3	59.6	42.4	65.3	29.2	24.5	11.9
	(2.1)	(3.3)	(1.8)	(3.4)	(4.6)	(8.0)	(2.4)	(2.0)	(1.4)
중국	98.3	8.7	57.1	10.9	6.5	-	48.8	4.4	5.5
	(10.1)	(0.8)	(3.5)	(0.6)	(0.7)	(0.0)	(4.0)	(0.4)	(0.7)
기타	(0.6)	10.8	1.8	1.6	1.2	10.4	7.6	-	9.1
	(0.1)	(1.0)	(0.1)	(0.1)	(0.1)	(1.3)	(0.6)	(0.0)	(1.1)
합계	973.9	1,057.9	1,626.7	1,745.9	928.5	812.6	1,233.9	1,207.9	843.7

주: 기타 국가에는 체코, 미국, 세르비아, 인도, 프랑스 등이 포함됨
 자료: 관세청 내부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라. 관세감면 품목별 분석

1) HS 6단위 기준

- 2023년 공장자동화용 물품으로 관세감면을 받은 물품은 HS 6단위 기준 총 16개이며, 감면 적용 물품은 2015년부터 20개 안팎을 유지하고 있음
- 최근 9년간 감면 규모가 가장 컸던 2017년과 2018년은 감면을 적용받은 물품의 수가 31개로 가장 많았음

<표 III-13> 관세감면 관련 공장자동화 물품의 수 및 관세감면액

(단위: 개, %, 억원)

연도	감면 대상 물품 수 ¹⁾	감면 받은 물품 수 ²⁾	비율	관세감면액
2015	62	25	40.3	38.2
2016	59	22	37.3	41.3
2017	79	31	39.2	61.1
2018	68	31	45.6	59.2
2019	49	20	40.8	35.6

<표 III-13>의 계속

(단위: 개, %, 억원)

연도	감면 대상 물품 수 ¹⁾	감면 받은 물품 수 ²⁾	비율	관세감면액
2020	44	16	36.4	29.7
2021	52	16	30.8	59.6
2022	43	21	48.8	62.9
2023	43	16	37.2	42.9

주: 1) HS 6단위 기준으로 「관세법 시행규칙」 별표 2의4 연번 기준

2) HS 6단위 기준

자료: 관세청 내부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2023년 관세감면을 적용받은 공장자동화 물품 품목당 평균 수입액은 약 52.7억원이며, 평균 관세감면액은 약 2.7억원임
- 물품당 평균 관세감면액은 2015년부터 약 1.5억원에서 약 2억원의 수준을 유지하다가 2021년 약 3.7억원으로 상승하였으며, 2023년은 약 2.68억원으로 감소함

<표 III-14> 관세감면 적용 공장자동화 물품 품목당¹⁾ 과세가격 및 관세감면액

(단위: 억원)

연도	과세가격	관세감면액
2015	38.96	1.53
2016	48.09	1.88
2017	52.47	1.97
2018	56.32	1.91
2019	46.43	1.78
2020	50.79	1.85
2021	77.12	3.73
2022	57.52	3.00
2023	52.73	2.68

주: 1) HS 6단위 기준

자료: 관세청 내부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관세감면을 받은 공장자동화 물품은 대부분 제84류의 기계류로 분류되는 물품이며, 그 외에 제85류와 제90류의 물품이 관세감면을 적용받음
- 2023년 관세감면 적용 공장자동화 물품 품목은 16개 중 15개가 제84류의 기계였으며, 1개의 물품만이 제85류의 전기제품이었음

- 제90류의 광·정밀기기는 2020년부터 공장자동화 물품 관세감면을 적용받지 않음

<표 III-15> 관세감면 적용 공장자동화 물품의 수

(단위: 개)

HS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제84류	22	19	27	27	18	14	15	21	15
제85류	2	2	1	3	1	2	1	0	1
제90류	1	1	3	1	1	0	0	0	0
합계	25	22	31	31	20	16	16	21	16

자료: 관세청 내부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따라서 관세감면에 따른 공장자동화 물품의 감면액 또한 제84류로 분류되는 품목이 대부분을 차지함
 -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제84류 외의 물품에 적용된 관세감면액은 약 1억~3억원 수준이었으나 2022년 이후 1억원에도 미치지 못함

<표 III-16> 관세감면 적용 공장자동화 물품의 관세감면액

(단위: 억원)

HS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제84류	35.0	39.9	59.2	56.1	34.4	28.7	59.4	62.9	42.9
제85류	2.9	0.6	1.3	2.9	1.1	1.0	0.3	-	0.0
제90류	0.3	0.8	0.7	0.2	0.1	-	-	-	-
합계	38.2	41.3	61.1	59.2	35.6	29.7	59.6	62.9	42.9

자료: 관세청 내부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HS 6단위 기준 물품당 평균 관세감면액을 HS 2단위별로 살펴보면 제84류의 평균 관세감면액이 2021년 이후 큰 폭으로 상승함
 - 제84류의 물품당 평균 관세감면액은 2015년부터 약 1.5억~2억원을 유지하다가 2021년 약 4억원으로 증가하였고, 2022년부터 약 3억원의 수준을 보임
 - 제85류의 물품당 평균 관세감면액은 증감을 반복하면서 2016년 약 3천만원 수준으로 하락하였다가 2017년 1억원대로 회복한 후 2020년 이후 다시 하락하여 2023년에는 200만원이 됨

- 제90류 물품의 물품당 평균 관세감면액은 2015년부터 1억원에 못 미치다가 2020년 이후로는 관세감면을 적용받은 금액이 없음

<표 III-17> HS 2단위별 관세감면 적용 공장자동화 물품당 평균 관세감면액
(단위: 억원)

HS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제84류	1.59	2.10	2.19	2.08	1.91	2.05	3.96	3.00	2.86
제85류	1.44	0.28	1.27	0.97	1.07	0.49	0.26	-	0.02
제90류	0.31	0.83	0.22	0.21	0.11	-	-	-	-
합계	1.53	1.88	1.97	1.91	1.78	1.85	3.73	3.00	2.68

자료: 관세청 내부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2) RCEP 특혜관세 품목

- 2022년에 RCEP이 발효된 이후 공장자동화 물품 감면 대상으로 지정된 품목은 HS 6단위 기준 48개(10단위 기준 127개)임
 - 2022년 공장자동화 물품 감면 대상 품목은 HS 6단위 기준 45개(HS 10단위 기준 120개)임
 - 2023년의 공장자동화 물품 감면 대상 품목 개수는 HS 6단위 기준 47개(HS 10단위 기준 126개)임
 - 2024년에는 HS 6단위 기준 46개(HS 10단위 기준 123개) 품목이 공장자동화 물품 감면 대상으로 지정됨

- 공장자동화 물품 감면 대상 품목 중에서 RCEP에서 일본산 물품으로 미양허된 품목 31개와 10~20년 이후 관세가 철폐되는 92개 품목은 일본과의 RCEP 협상에서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공산품임에도 관세 철폐 기간을 10~20년으로 설정한 품목들인데, 이 품목들에 대해 관세감면을 적용하는 것은 모순된 상황임
 - 발효 10년차에 관세가 철폐되는 품목은 29개, 15년차 철폐 품목은 5개, 20년차 철폐 품목은 58개임
 - 관세가 즉시 철폐되는 HS 10단위 기준 28개 품목은 여타 FTA 협정세율도 0% 이기에 공장자동화 감면 대상 물품에서 제외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음

- 다만, 일부 품목들은 동일한 HS 10단위에서도 용도 및 규격에 따라 FTA 협정세율도 0%가 아닌 경우가 있음
- 이들 품목들을 감면 대상 공장자동화 물품에서 제외하지 않아도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님

<표 III-18> 관세감면 대상 공장자동화 물품 품목에 대한 일본 원산지물품의 RCEP 양허유형

품목번호		감면 여부			양허유형	관세철폐시기
6단위	10단위	2022년	2023년	2024년		
842240	8422404000	○	○	○	15단계	2036. 1. 1.
842240	8422409010	○	○	○	미양허	-
842240	8422409020	○	○	○	20단계	2041. 1. 1.
842240	8422409030	○	○	○	15단계	2036. 1. 1.
842240	8422409090	○	○	○	미양허	-
842290	8422901000	○	○	○	10단계	2031. 1. 1.
842290	8422902000	○	○	○	20단계	2041. 1. 1.
842290	8422909000	○	○	○	20단계	2041. 1. 1.
842430	8424301000	○	○	○	20단계	2041. 1. 1.
842430	8424302000	○	○	○	20단계	2041. 1. 1.
842430	8424309000	○	○	○	20단계	2041. 1. 1.
843920	8439201000	○	○	○	20단계	2041. 1. 1.
843920	8439202000	○	○	○	20단계	2041. 1. 1.
843920	8439209000	○	○	○	20단계	2041. 1. 1.
843930	8439301000	○	○	○	20단계	2041. 1. 1.
843930	8439302000	○	○	○	20단계	2041. 1. 1.
843930	8439303000	○	○	○	20단계	2041. 1. 1.
843930	8439309000	○	○	○	15단계	2036. 1. 1.
844110	8441100000	○	○	○	20단계	2041. 1. 1.
844130	8441300000	○	○	○	미양허	-
844180	8441801000	○	○	○	20단계	2041. 1. 1.
844180	8441809000	○	○	○	20단계	2041. 1. 1.
844311	8443110000	○	○	○	20단계	2041. 1. 1.
844313	8443130000	○	○	○	미양허	-
844400	8444001000	○	○	×	10단계	2031. 1. 1.
844400	8444002000	○	○	×	10단계	2031. 1. 1.

<표 III-18>의 계속

품목번호		감면 여부			양허유형	관세철폐시기
6단위	10단위	2022년	2023년	2024년		
844400	8444003000	○	○	×	10단계	2031. 1. 1.
844400	8444009000	○	○	×	10단계	2031. 1. 1.
844511	8445110000	○	○	○	즉시철폐	2022. 2. 1.
844512	8445120000	○	○	○	즉시철폐	2022. 2. 1.
844513	8445130000	○	○	○	10단계	2031. 1. 1.
844519	8445191000	○	○	○	즉시철폐	2022. 2. 1.
844519	8445199000	○	○	○	즉시철폐	2022. 2. 1.
844520	8445201010	○	○	○	10단계	2031. 1. 1.
844520	8445201090	○	○	○	즉시철폐	2022. 2. 1.
844520	8445202000	○	○	○	즉시철폐	2022. 2. 1.
844520	8445203000	○	○	○	즉시철폐	2022. 2. 1.
844520	8445209000	○	○	○	즉시철폐	2022. 2. 1.
844530	8445301000	○	○	○	10단계	2031. 1. 1.
844530	8445302000	○	○	○	즉시철폐	2022. 2. 1.
844530	8445309000	○	○	○	10단계	2031. 1. 1.
844540	8445401000	○	○	○	10단계	2031. 1. 1.
844540	8445409000	○	○	○	즉시철폐	2022. 2. 1.
					10단계	2031. 1. 1.
844630	8446301010	○	○	○	즉시철폐	2022. 2. 1.
844630	8446301090	○	○	○	즉시철폐	2022. 2. 1.
844630	8446302000	○	○	○	10단계	2031. 1. 1.
					즉시철폐	2022. 2. 1.
					미양허	-
844630	8446303000	○	○	○	즉시철폐	2022. 2. 1.
					미양허	-
844630	8446309000	○	○	○	즉시철폐	2022. 2. 1.
844811	8448111000	○	○	○	즉시철폐	2022. 2. 1.
844811	8448112000	○	○	○	즉시철폐	2022. 2. 1.
844811	8448119000	○	○	○	즉시철폐	2022. 2. 1.
844819	8448191000	○	○	○	즉시철폐	2022. 2. 1.
844819	8448199000	○	○	○	즉시철폐	2022. 2. 1.
844832	8448320000	○	○	○	즉시철폐	2022. 2. 1.
					10단계	2031. 1. 1.

<표 III-18>의 계속

품목번호		감면 여부			양허유형	관세철폐시기
6단위	10단위	2022년	2023년	2024년		
845180	8451801000	○	○	○	20단계	2041. 1. 1.
845180	8451802000	○	○	○	즉시철폐	2022. 2. 1.
845180	8451803000	○	○	○	즉시철폐	2022. 2. 1.
845180	8451809010	○	○	○	즉시철폐	2022. 2. 1.
845180	8451809020	○	○	○	즉시철폐	2022. 2. 1.
845180	8451809030	○	○	○	즉시철폐	2022. 2. 1.
845180	8451809050	○	○	○	10단계	2031. 1. 1.
845180	8451809090	○	○	○	즉시철폐	2022. 2. 1.
					10단계	2031. 1. 1.
845611	8456111000	○	○	○	미양허	-
845611	8456119000	○	○	○	미양허	-
845690	8456900000	○	○	○	20단계	2041. 1. 1.
845710	8457104000	○	○	○	미양허	-
845710	8457109010	○	○	○	미양허	-
845710	8457109020	○	○	○	미양허	-
845710	8457109030	○	○	○	미양허	-
845710	8457109090	○	○	○	미양허	-
845811	8458110000	○	○	○	미양허	-
845891	8458910000	○	○	○	미양허	-
845970	8459701000	○	○	○	20단계	2041. 1. 1.
845970	8459709000	○	○	○	10단계	2031. 1. 1.
846023	8460230000	○	○	○	미양허	-
					20단계	2041. 1. 1.
846024	8460241000	○	○	○	미양허	-
					20단계	2041. 1. 1.
846024	8460242000	○	○	○	20단계	2041. 1. 1.
846024	8460249000	○	○	○	미양허	-
					20단계	2041. 1. 1.
846029	8460291000	○	○	○	20단계	2041. 1. 1.
					20단계	2041. 1. 1.
846029	8460292000	○	○	○	10단계	2031. 1. 1.
					20단계	2041. 1. 1.

<표 III-18>의 계속

품목번호		감면 여부			양허유형	관세철폐시기
6단위	10단위	2022년	2023년	2024년		
846029	8460293000	○	○	○	20단계	2041. 1. 1.
					20단계	2041. 1. 1.
846029	8460294000	○	○	○	10단계	2031. 1. 1.
					20단계	2041. 1. 1.
846029	8460299000	○	○	○	20단계	2041. 1. 1.
846031	8460310000	×	○	○	미양허	-
846040	8460401000	○	○	○	20단계	2041. 1. 1.
846040	8460402000	○	○	○	20단계	2041. 1. 1.
846090	8460900000	○	○	○	20단계	2041. 1. 1.
846140	8461401010	○	○	○	미양허	-
846140	8461401090	○	○	○	20단계	2041. 1. 1.
846140	8461402000	○	○	○	20단계	2041. 1. 1.
846150	8461500000	○	○	○	미양허	-
846190	8461900000	○	○	○	미양허	-
846290	8462900000	○	○	○	20단계	2041. 1. 1.
					미양허	-
					20단계	2041. 1. 1.
					20단계	2041. 1. 1.
					20단계	2041. 1. 1.
					10단계	2031. 1. 1.
					미양허	-
					20단계	2041. 1. 1.
					15단계	2036. 1. 1.
					미양허	-
846390	8463900000	×	×	○	20단계	2041. 1. 1.
846420	8464201000	○	○	○	20단계	2041. 1. 1.
846420	8464202000	○	○	○	20단계	2041. 1. 1.
846420	8464209000	○	○	○	20단계	2041. 1. 1.
847982	8479821000	×	○	○	미양허	-
847982	8479822000	×	○	○	20단계	2041. 1. 1.
847982	8479823000	×	○	○	20단계	2041. 1. 1.
847982	8479824000	×	○	○	20단계	2041. 1. 1.

<표 III-18>의 계속

품목번호		감면 여부			양허유형	관세철폐시기
6단위	10단위	2022년	2023년	2024년		
847982	8479829000	×	○	○	20단계	2041. 1. 1.
847989	8479891010	○	○	○	10단계	2031. 1. 1.
847989	8479891090	○	○	○	20단계	2041. 1. 1.
847989	8479892010	○	○	○	미양허	-
847989	8479892090	○	○	○	미양허	-
847989	8479899010	○	○	○	20단계	2041. 1. 1.
847989	8479899020	○	○	○	10단계	2031. 1. 1.
847989	8479899030	○	○	○	20단계	2041. 1. 1.
847989	8479899050	○	○	○	20단계	2041. 1. 1.
847989	8479899060	○	○	○	미양허	-
847989	8479899080	○	○	○	20단계	2041. 1. 1.
847989	8479899091	○	○	○	15단계	2036. 1. 1.
847989	8479899099	○	○	○	20단계	2041. 1. 1.
					미양허	-
851419	8514191000	○	○	○	10단계	2031. 1. 1.
851419	8514192000	○	○	○	10단계	2031. 1. 1.
851419	8514193000	○	○	○	10단계	2031. 1. 1.
851419	8514199000	○	○	○	10단계	2031. 1. 1.
851580	8515801000	○	○	○	20단계	2041. 1. 1.
851580	8515802000	○	○	○	20단계	2041. 1. 1.
851580	8515803000	○	○	○	20단계	2041. 1. 1.
851580	8515809000	○	○	○	20단계	2041. 1. 1.
854330	8543301000	○	○	○	10단계	2031. 1. 1.
854330	8543309000	○	○	○	10단계	2031. 1. 1.
902910	9029101000	○	○	○	즉시철폐	2022. 2. 1.
902910	9029102000	○	○	○	10단계	2031. 1. 1.
902910	9029109000	○	○	○	10단계	2031. 1. 1.

주: RCEP이 발효된 2022년 이후 공장자동화 물품 감면 대상
 자료: 저자 작성

□ RCEP 협정이 발효된 2022년 이후 일본이 원산지이면서 감면을 적용받은 품목은 HS 10단위 기준 28개이며, 대부분이 RCEP 미양허 품목 또는 장기 관세철폐 품

목입24)

- 해당 28개 품목은 모두 RCEP 협정에 따른 일본산 물품에 대한 관세가 2024년 현재 유지되고 있음
- 이 중 13개 품목은 관세를 양허하지 않음
 - 2개 품목은 즉시철폐, 7개 품목은 10단계, 2개 품목은 15단계, 15개 품목은 20단계에 거쳐 관세가 철폐될 예정임²⁵⁾
- 관세감면 실적이 있는 품목 중 2개는 관세 즉시철폐와 단계철폐 또는 미양허가 적용되는 품목임
 - 이들 품목은 하나의 품목번호에 여러 양허유형이 적용되는 경우로서 감면을 적용받은 물품이 즉시철폐가 적용되는 세부 품목인지는 알 수 없음
- 이 중에서 RCEP 협정에서 미양허된 품목이지만, 공장자동화 관세 대상에는 포함되면서 관세감면 실적도 다른 품목에 비해 월등히 많은 품목이 있음
 - HS 8443.13.0000(그 밖의 오프셋(offset) 인쇄기계)은 RCEP 협정에서 미양허된 품목이지만, 관세감면 실적이 다른 품목들보다 월등히 많은 20억~30억원을 상회하고 있음

<표 III-19> 관세감면 대상 공장자동화 물품 품목의 일본 원산지물품 감면실적

(단위: 백만원)

품목번호		양허유형	관세감면액	
6단위	10단위		2022년	2023년
842240	8422404000	15단계	-	-
842240	8422409010	미양허	-	22.6
842240	8422409020	20단계	-	-
842240	8422409030	15단계	-	-
842240	8422409090	미양허	15.5	-
842290	8422901000	10단계	-	-
842290	8422902000	20단계	-	-
842290	8422909000	20단계	-	-
842430	8424301000	20단계	-	-
842430	8424302000	20단계	-	-
842430	8424309000	20단계	-	-

24) 28개 품목 중 9개 품목은 하나의 품목번호에 2개 이상의 양허유형이 적용되고 있음

25) 28개 품목 중에는 하나의 품목번호에 2개 이상의 양허유형이 적용되고 있어, 중복 카운트되었음

<표 III-19>의 계속

(단위: 백만원)

품목번호		양허유형	관세감면액	
6단위	10단위		2022년	2023년
843920	8439201000	20단계	-	-
843920	8439202000	20단계	-	-
843920	8439209000	20단계	-	136.0
843930	8439301000	20단계	-	-
843930	8439302000	20단계	-	-
843930	8439303000	20단계	-	-
843930	8439309000	15단계	324.5	-
844110	8441100000	20단계	66.2	55.0
844130	8441300000	미양허	120.7	-
844180	8441801000	20단계	-	-
844180	8441809000	20단계	49.0	-
844311	8443110000	20단계	103.1	24.8
844313	8443130000	미양허	3,279.2	2,227.7
844400	8444001000	10단계	-	-
844400	8444002000	10단계	-	-
844400	8444003000	10단계	18.9	16.1
844400	8444009000	10단계	-	-
844511	8445110000	즉시철폐	-	-
844512	8445120000	즉시철폐	-	-
844513	8445130000	10단계	-	-
844519	8445191000	즉시철폐	-	-
844519	8445199000	즉시철폐	-	-
844520	8445201010	10단계	13.4	-
844520	8445201090	즉시철폐	-	-
844520	8445202000	즉시철폐	-	-
844520	8445203000	즉시철폐	-	-
844520	8445209000	즉시철폐	-	-
844530	8445301000	10단계	-	-
844530	8445302000	즉시철폐	-	-
844530	8445309000	10단계	-	-
844540	8445401000	10단계	-	-
844540	8445409000	즉시철폐	-	-
		10단계		

<표 III-19>의 계속

(단위: 백만원)

품목번호		양허유형	관세감면액	
6단위	10단위		2022년	2023년
844630	8446301010	즉시철폐	-	-
844630	8446301090	즉시철폐	-	-
844630	8446302000	10단계	34.5	113.5
		즉시철폐		
		미양허		
844630	8446303000	즉시철폐	128.0	89.5
		미양허		
844630	8446309000	즉시철폐	-	-
844811	8448111000	즉시철폐	-	-
844811	8448112000	즉시철폐	-	-
844811	8448119000	즉시철폐	-	-
844819	8448191000	즉시철폐	-	-
844819	8448199000	즉시철폐	-	-
844832	8448320000	즉시철폐	-	-
		10단계		
845180	8451801000	20단계	-	-
845180	8451802000	즉시철폐	-	-
845180	8451803000	즉시철폐	-	-
845180	8451809010	즉시철폐	-	-
845180	8451809020	즉시철폐	-	-
845180	8451809030	즉시철폐	-	-
845180	8451809050	10단계	-	-
845180	8451809090	즉시철폐	-	-
		10단계		
845611	8456111000	미양허	-	-
845611	8456119000	미양허	-	-
845690	8456900000	20단계	-	-
845710	8457104000	미양허	-	-
845710	8457109010	미양허	292.7	43.1
845710	8457109020	미양허	-	-
845710	8457109030	미양허	-	-
845710	8457109090	미양허	84.7	119.6

<표 III-19>의 계속

(단위: 백만원)

품목번호		양허유형	관세감면액	
6단위	10단위		2022년	2023년
845811	8458110000	미양허	135.5	356.8
845891	8458910000	미양허	-	-
845970	8459701000	20단계	-	-
845970	8459709000	10단계	166.0	147.4
846023	8460230000	미양허	180.1	105.2
		20단계		
846024	8460241000	미양허	209.6	28.1
		20단계		
846024	8460242000	20단계	61.9	12.8
846024	8460249000	미양허	306.7	294.4
		20단계		
846029	8460291000	20단계	-	33.5
		20단계		
846029	8460292000	10단계	-	32.8
		20단계		
846029	8460293000	20단계	-	-
		20단계		
846029	8460294000	10단계	219.9	164.4
		20단계		
846029	8460299000	20단계	106.8	32.1
846031	8460310000	미양허	-	-
846040	8460401000	20단계	49.2	-
846040	8460402000	20단계	-	-
846090	8460900000	20단계	24.7	-
846140	8461401010	미양허	-	-
846140	8461401090	20단계	-	-
846140	8461402000	20단계	-	-
846150	8461500000	미양허	-	-
846190	8461900000	미양허	-	-
846290	8462900000	20단계	83.6	98.7
		미양허		
		20단계		

<표 III-19>의 계속

(단위: 백만원)

품목번호		양허유형	관세감면액	
6단위	10단위		2022년	2023년
846290	8462900000	20단계	83.6	98.7
		20단계		
		10단계		
		미양허		
		20단계		
		15단계		
		미양허		
		미양허		
846390	8463900000	20단계	-	-
846420	8464201000	20단계	-	-
846420	8464202000	20단계	-	-
846420	8464209000	20단계	-	-
847982	8479821000	미양허	-	-
847982	8479822000	20단계	-	-
847982	8479823000	20단계	-	-
847982	8479824000	20단계	-	-
847982	8479829000	20단계	-	-
847989	8479891010	10단계	-	-
847989	8479891090	20단계	-	-
847989	8479892010	미양허	-	-
847989	8479892090	미양허	-	-
847989	8479899010	20단계	-	-
847989	8479899020	10단계	-	-
847989	8479899030	20단계	-	-
847989	8479899050	20단계	-	-
847989	8479899060	미양허	-	-
847989	8479899080	20단계	-	-
847989	8479899091	15단계	-	-
847989	8479899099	20단계	-	-
		미양허		
851419	8514191000	10단계	-	-
851419	8514192000	10단계	-	-

<표 III-19>의 계속

(단위: 백만원)

품목번호		양허유형	관세감면액	
6단위	10단위		2022년	2023년
851419	8514193000	10단계	-	-
851419	8514199000	10단계	-	-
851580	8515801000	20단계	-	-
851580	8515802000	20단계	-	-
851580	8515803000	20단계	-	-
851580	8515809000	20단계	-	-
854330	8543301000	10단계	-	-
854330	8543309000	10단계	-	-
902910	9029101000	즉시철폐	-	-
902910	9029102000	10단계	-	-
902910	9029109000	10단계	-	-

주: RCEP이 발효된 2022년 이후 공장자동화 물품 감면 대상
 자료: 저자 작성

3) 적용 실적이 없는 품목

- 관세감면 대상 공장자동화 물품 품목이지만 감면을 적용받은 실적이 없는 품목은 2015년부터 2023년까지 HS 6단위 기준 21~37개가 있음
 - 특히 HS 6단위 기준으로 6개 품목군은 최근 9년간 감면실적이 없음
 - 제8445.11호(카드기), 제8445.12호(코핑기), 제8448.11호(도비기·자카드기 등), 제8448.19호(방적기 등의 기타 보조기계), 제8448.32호(방적준비기계의 부분 품), 제8451.80호(기타 직물·의류용 기계)는 최근 9년간 감면실적이 없음
 - 다만, 제8445호에서 제8445.19호(기타 방적준비기계)는 2015년, 2016년과 2020년에 감면을 적용받음

<표 III-20> 관세감면 대상 공장자동화 물품 중 미적용 품목

(단위: 개)

연도	미적용 품목 수 ¹⁾	미적용 품목 HS 코드
2015	37	730900, 841939, 842230, 842240, 842420, 842839, 842890, 843780, 843910, 843999, 844230, 844511, 844512, 844513, 844520, 844590, 844811, 844819, 844832, 845180, 845630, 845891, 846190, 846210, 846299, 847431, 847480, 847710, 847980, 847989, 848630, 854330, 901120, 901180, 902219, 902480, 903149
2016	35	820810, 841989, 842420, 845180, 844819, 844832, 846040, 844230, 843910, 844110, 844530, 844511, 844512, 844590, 844811, 846029, 846031, 846120, 846190, 847989, 902480, 845891, 841939, 843780, 845610, 845630, 845929, 846229, 846299, 847980, 851430, 901120, 901180, 902219, 903149
2017	32	842129, 842230, 844230, 842420, 842430, 843920, 844530, 844511, 844512, 844519, 844590, 844811, 844819, 844832, 846090, 845180, 845630, 845891, 846229, 847590, 854330, 848340, 851410, 854231, 854232, 854233, 854239, 854290, 901120, 901180, 902219, 902480
2018	33	841360, 844230, 842420, 842489, 843920, 844530, 844511, 844512, 844519, 844513, 844520, 844811, 844819, 844832, 846090, 845180, 845590, 845891, 845970, 846299, 847940, 854330, 854231, 854232, 854233, 854239, 854290, 901110, 901120, 901180, 902219, 902480, 903149
2019	21	843930, 844180, 844511, 844512, 844513, 844519, 844520, 844530, 844811, 844819, 844832, 845180, 845690, 845891, 846090, 846190, 846229, 846299, 851410, 851521, 854330
2020	27	842230, 842290, 842430, 843920, 844311, 844511, 844512, 844513, 844520, 844530, 844540, 844811, 844819, 844832, 845180, 845611, 845690, 845970, 846040, 846090, 846140, 846150, 846229, 846299, 847989, 851521, 903180
2021	32	841989, 842230, 842240, 842290, 842430, 843920, 844180, 844311, 844511, 844512, 844513, 844519, 844520, 844530, 844540, 844811, 844819, 844832, 845180, 845690, 845891, 845970, 846090, 846140, 846150, 846190, 846299, 847989, 851410, 854330, 902910, 903180
2022	25	842290, 842430, 843920, 844511, 844512, 844513, 844519, 844530, 844540, 844811, 844819, 844832, 845180, 845611, 845690, 845891, 846140, 846150, 846190, 846420, 847989, 851419, 851580, 854330, 902910
2023	30	842290, 842430, 843930, 844180, 844511, 844512, 844513, 844519, 844520, 844530, 844540, 844811, 844819, 844832, 845180, 845611, 845690, 845891, 846031, 846040, 846090, 846140, 846150, 846190, 846420, 847982, 847989, 851419, 854330, 902910

주: 1) HS 6단위 기준

자료: 관세청 내부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3. 관세감면 적용대상 분석

- 공장자동화 물품에 대한 관세감면제도의 정책대상자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및 중견 기업임
 - 2012년 이후 관세감면 대상에서 대기업을 제외되면서, 중소기업만 남게 되었음
 - 2014년 이후 중견기업을 포함하여 현재 정책대상자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및 중견 기업임

가. 중소기업 현황

1) 전체 중소기업 수 및 매출액

- ‘중소기업기본통계’²⁶⁾에 따르면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수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증가하고 있으나, 이는 소상공인의 증가에 기인함
 - 2017년 중소기업 제조업체 수는 약 55.6만개에서 2021년에는 약 61.8만개로 증가함
 - 하지만 같은 기간동안 중기업의 수는 1만 3,000여개 수준이고, 소기업의 수는 5만 8,000개에서 5만 3,000개로 감소함
 - 반면 소상공인의 수는 48만명에서 55만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표 III-21> 중소기업 수 현황

(단위: 개, 명)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중소기업 수	555,679	567,815	576,627	585,217	617,517
중기업 수	12,971	13,365	12,952	12,772	13,319
소기업 수	58,188	58,576	53,274	53,362	53,149
소상공인 수	484,520	495,874	510,401	519,083	551,049

- 주: 1. 해당자료는 기업 단위로 작성됐기 때문에, 사업체 단위 통계와 상이하므로 해석 시 유의
 2. 중소기업 판단의 기준이 되는 매출액은 기준연도를 포함한 3년 평균 매출액임
 3. 제조업에 한정하여 작성

자료: 중소기업기본통계(2017~2021)를 이용해 저자 작성

26) 중소기업기본통계는 기업 단위 전수조사로서 기준연도를 포함한 3년 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함

-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매출액 합계는 2017년 722조원에서 2021년 764조원으로 증가하였는데, 소상공인의 매출 증가에 기인함
 - 코로나19로 인해 2019년과 2020년에 중기업과 소기업의 매출액은 감소하였음
 - 하지만 2019년에 소상공인 매출액은 증가함

〈표 III-22〉 중소기업 기본 현황

(단위: 조원)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중소기업 매출액 합계	722	739	713	684	764
중기업 매출액 합계	344	351	322	308	347
소기업 매출액 합계	205	208	198	193	208
소상공인 매출액 합계	172	179	194	183	209

주: 1. 해당자료는 기업 단위로 작성됐기 때문에, 사업체 단위 통계와 상이하므로 해석 시 유의
 2. 중소기업 판단의 기준이 되는 매출액은 기준연도를 포함한 3년 평균 매출액임
 3. 제조업에 한정하여 작성

자료: 중소기업기본통계(2017~2021)를 이용해 저자 작성

2) 중소기업실태조사에 따른 중소기업 재무상태

- ‘중소기업실태조사’²⁷⁾에 따르면 2018년 이후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감소한 중소기업 평균 매출액은 2021년부터 반등 추세에 있으며 매출액 순이익률, 평균 영업이익, 평균 당기순이익, 부채비율 등도 반등 추세에 있음
 - 2018년 제조업 영위 중소기업의 평균 매출액은 약 43.3억원이었으나 2020년 약 41.9조원으로 감소한 뒤 2022년 약 42.9조원으로 반등함
 - 영업이익도 2018년 약 2.2억원에서 2021년 약 2.0억원으로 감소한 뒤 2022년 2.2억원으로 반등함
 - 당기순이익도 유사한 흐름을 보임
 - 순이익률은 2021년 이후 4.1%로 증가하였고, 부채 비율은 136.6%에서 125.2%로 감소함

27) ‘중소기업실태조사’는 매출액 5억원 이상의 중소기업만을 모집단으로 하여 표본추출을 통해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음. 따라서 ‘중소기업기본통계’와 중소기업의 수 등이 일치하지 않음. 추가로 2021년 기준 조사부터 모집단 표본추출 틀을 변경하여 이전 조사 결과와 비교 시 유의해야 함

<표 III-23> 중소기업 재무상태

(단위: 백만원, %)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매출액(평균)	4,327	4,277	4,194	4,236	4,293
매출액 순이익률(평균)	3.8	3.7	3.8	4.1	4.1
영업이익(평균)	223	220	220	196	224
당기순이익(평균)	167	157	159	174	175
부채 비율(평균)	136.6	141.2	130.1	129.9	125.2

- 주: 1. 중소기업실태조사의 경우 매출액 5억원 이상의 중소기업만을 모집단으로 선정 후 표본추출을 진행하였음에 유의
 2. 2021년 기준 조사부터는 모집단 표본추출 틀 변경으로 이전 조사와 모집단 수가 크게 변화하여, 이전 연도와 조사결과 비교 시 주의를 요함
 3. 제조업에 한정하여 작성

자료: 중소기업실태조사(2018~2022)를 이용해 저자 작성

- 한편 중소기업의 평균 자산뿐만 아니라 평균 유형자산은 2020년 정점을 찍은 뒤 감소하고 있음
 - 특히 기계장치의 경우 2018년 기준 약 3.1억원이었으나 감소 추세가 이어지면서 2022년 기준 약 2.5억원으로 감소함
 - 중소기업 평균 자산총계는 2018년 45억원에서 2022년 47억원으로 증가함

- 이러한 흐름은 설비투자액으로도 살펴볼 수 있는데, 평균 설비투자액은 2020년까지 증가하다가 2021년부터 감소하고 있음
 - 2018년 제조업 영위 중소기업의 평균 설비투자액은 약 2.0억원이었으나, 2020년 약 3.2억으로 증가한 이후 2022년 3.1억원으로 감소함
 - 평균 기계장치투자액도 2020년에 약 8,400만원까지 증가한 이후 2022년에는 8,200만원으로 감소함

<표 III-24> 중소기업 자산 및 설비투자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자산총계(평균)	4,486	4,615	4,893	4,836	4,661
유형자산(평균)	1,950	2,060	2,125	2,116	2,038
기계장치(평균)	312	290	298	265	247
설비투자액(평균)	202	240	323	313	308
기계장치투자액(평균)	71	77	84	75	82

- 주: 1. 중소기업실태조사의 경우 매출액 5억원 이상의 중소기업만을 모집단으로 선정 후 표본추출을 진행하였음에 유의
 2. 2021년 기준 조사부터는 모집단 표본추출 틀 변경으로 이전 조사와 모집단 수가 크게 변화하여, 이전 연도와 조사결과 비교 시 주의를 요함
 3. 제조업에 한정하여 작성

자료: 중소기업실태조사(2018~2022)를 이용해 저자 작성

□ 중소기업의 설비투자 비중 중 기계장치 설비투자 비중은 2018년 35.2%에서 감소 추세가 이어져 2022년 26.6%로 하락함

○ 이는 중소기업의 설비투자 중에서 토지, 건축 및 구축물에 대한 설비투자 비중이 2018년에 약 51%에서 2022년에는 약 65%로 증가한 것에 기인함

<표 III-25> 중소기업 설비투자 비중

(단위: %)

구분	토지	건물 및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기타
2018년	26.4	24.6	35.2	6.5	7.3
2019년	40.8	15.2	32.0	5.8	6.1
2020년	40.4	26.2	26.1	4.2	3.1
2021년	44.8	23.5	24.0	4.3	3.3
2022년	41.9	23.1	26.6	6.1	2.3

- 주: 1. 중소기업실태조사의 경우 매출액 5억원 이상의 중소기업만을 모집단으로 선정 후 표본추출을 진행하였음에 유의
 2. 2021년 기준 조사부터는 모집단 표본추출 틀 변경으로 이전 조사와 모집단 수가 크게 변화하여, 이전 연도와 조사결과 비교 시 주의를 요함
 3. 제조업에 한정하여 작성

자료: 중소기업실태조사(2018~2022)를 이용해 저자 작성

□ 결과적으로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평균 매출액, 평균 매출액 순이익률, 평균 영업이익, 평균 당기순이익, 평균 부채비율 등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감소하였으나, 2021년부터 반등 추세에 있음

- 한편 중소기업의 평균 유형자산 및 기계장치 자산은 2020년 정점을 찍은 뒤 감소하고 있고, 평균 설비투자액 및 평균 기계장치투자액도 2020년까지 증가하다가 2021년부터 감소하고 있음
- 중소기업의 설비투자 비중 중 기계장치 설비투자 비중은 2018년 35.2%에서 감소 추세가 이어져 2022년 26.6%로 하락함
 - 중소기업의 설비투자 중에서 토지, 건축 및 구축물에 대한 설비투자 비중이 2018년에 약 51%에서 2022년에는 약 65%로 증가하여, 결과적으로 기계장치 설비투자 비중이 2022년 26.6%로 하락함

나. 중견기업 현황

- ‘중견기업기본통계’²⁸⁾에 따르면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견기업의 수는 2018년 이후 증가하면서 2020년부터는 약 1,980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매출액 합계는 2018년 394조원에서 2022년 961조원으로 크게 증가함
 - ‘중견기업기본통계’의 일반현황은 중견기업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의 실적을 조사하는 반면, 실태조사는 중견기업 중 일부를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표 III-26〉 중견기업 기본 현황

(단위: 개, 조원)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중견기업 수	1,737	1,809	1,977	1,989	1,980
중견기업 매출액 합계	394	397	390	853	961

주: 제조업에 한정하여 작성

자료: 중견기업기본통계(2018~2022)를 이용해 저자 작성

-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견기업 평균 매출액, 평균 영업이익, 평균 자산 모두 2020년 이후 증가하고 있음

28) ‘중견기업기본통계’는 중견기업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의 실적을 조사하고 있음

- 평균 매출액, 평균 영업이익, 평균 자산 모두 2020년까지 감소하다가 2020년 이후 증가하고 있음
 -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도 있는 것으로 추측함
- 평균 매출액은 2020년 1,973억원에서 2022년 2,454억원으로 증가함
- 평균 영업이익은 88억원에서 140억원으로 증가함
- 평균 자산은 2,384억원에서 2,599억원으로 증가함

<표 III-27> 중견기업 재무상태

(단위: 십억원)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매출액(평균)	227.1	219.3	197.3	215.7	245.4
영업이익(평균)	10.4	9.8	8.8	12.7	14.0
자산(평균)	247.8	248.0	238.4	248.3	259.9
부채(평균)	109.2	106.9	101.2	106.0	110.6

주: 제조업에 한정하여 작성
 자료: 중견기업기본통계(2018~2022)를 이용해 저자 작성

- 중견기업의 관심 투자 분야로 설비 자동화의 비중은 조사 기간 26~30% 수준으로 신제품개발과 함께 관심 투자 분야 중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신사업진출과 연구개발에 대한 관심 비중은 줄어드는 추세
 - 에너지절약과 관련한 관심 비중은 증가하고 있음

<표 III-28> 중견기업 관심 투자 분야

(단위: %)

구분	신사업 진출	신제품 개발	설비 자동화	설비 확장	설비 교체 보수	연구 개발	에너지 절약	환경 오염 방지	공장 이전	기타
2018년	27.8	32.8	30.1	19.9	28.3	17.2	5.8	6.8	4.3	2.8
2019년	26.4	34.6	26.5	18.0	27.1	17.2	5.7	5.6	5.2	5.5
2020년	22.6	31.9	30.4	22.4	25.5	14.4	7.2	8.4	4.2	5.8
2021년	22.3	28.6	26.5	22.1	23.3	14.1	7.2	8.1	6.0	8.4
2022년	22.8	28.6	28.3	21.6	25.7	13.8	8.0	8.6	5.1	7.8

주: 제조업에 한정하여 작성
 자료: 중견기업기본통계(2018~2022)를 이용해 저자 작성

- 중견기업의 설비투자 참여 비율은 약 85%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설비투자액의 총액과 평균은 2020년까지 감소하다가 그 이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음
 - 제조업 중견기업의 설비투자액 총액은 2018년 기준 약 15.7조원이었다가 2020년 12.9조원으로 감소했으나 그 이후 반등해 2022년 17.9조원으로 늘어남
 - 평균 설비투자액도 2018년 105억원에서 2020년 79억원으로 감소했다가 2022년 다시 105억원으로 증가함

〈표 III-29〉 중견기업 설비투자 현황

(단위: %, 십억원)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설비투자 참여 비율	85.5	84.2	84.7	84.3	85.6
설비투자액 총액	15,664	14,047	12,880	15,420	17,938
설비투자액 평균	10.5	9.2	7.9	9.3	10.5

주: 제조업에 한정하여 작성

자료: 중견기업기본통계(2018~2022)를 이용해 저자 작성

- 종합하면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견기업의 평균 매출액, 평균 영업이익, 평균 자산 등은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감소하였으나, 2021년부터 반등하면서 결과적으로 2018년에 비해 2022년에 증가하였음
 - 중견기업의 평균 매출액, 평균 영업이익, 평균 자산 등은 모두 2018년에 비해 2022년에 증가하였음
 - 중견기업의 매출액 합계도 2018년에 비해 2022년에 증가하였음

- 한편 중견기업의 설비투자 참여 비율, 설비투자액 합계, 평균 설비투자액 등도 동일하게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감소하였으나, 2021년부터 반등하면서 결과적으로 2018년에 비해 2022년에 증가하였음

IV. 타당성 평가



IV. 타당성 평가

1. 정부 역할로서의 적절성

- 공장자동화 물품에 대한 관세감면은 일반적인 관세감면 기준을 적용하면 타당성이 낮다고 볼 수 있음
 - 공장자동화 물품에 대한 관세감면은 국제적 관례나 관세 적용 원칙에 따른 감면에 포함되지 않음
 - 외교관용 물품(「관세법」 제88조), 재수출면제(「관세법」 제97조), 재수입면제(「관세법」 제96조) 등에 대한 관세감면세
 - 외부효과 교정, 형평성, 편의성 등에 의한 관세감면이라고 보기도 어려움
 - 학술연구용품(「관세법」 제90조), 자선용품·장애인용품(「관세법」 제91조), 정부용품(「관세법」 제92조), 여행자휴대품·이사물품(「관세법」 제96조) 등에 대한 관세감면세

- 하지만 현재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공장자동화 물품에 대해 관세를 감면해 주는 것은 정부의 산업지원 측면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함
 - 우리나라 경제에서 생산 및 고용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활동을 지원하는 것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정책으로 관세감면의 타당성을 찾을 수 있음
 - 공장자동화 물품에 대한 관세감면을 통해 중소기업의 생산성 기여 및 부차적인 인건비 절감 등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음

- 이론적으로 조세감면 대상 재화가 최종재로 소비되는 것이 아니고 생산의 중간재라면, 즉 정부가 중간 투입재에 대해 조세감면을 하게 되면 혜택(정부 세수손실)은 중간재를 사용하는 구매자뿐만 아니라 중간재 생산자에게 나누어지게 되고, 소비자는 가격 인하의 혜택을 받게 됨
 - 다시 말해, 공장자동화 물품이라는 중간재에 대해 관세감면을 실시하면, 그 혜택은 공장자동화 물품 생산자(해외생산자), 공장자동화 물품의 구매자(국내 중소·중견

기업), 그리고 공장자동화 물품을 이용해 생산된 최종재화의 소비자가 받게 됨

- 정부가 중간재에 대해 지원하는 경우 그 혜택은 중간재를 사용하는 구매자뿐만 아니라 중간재 생산자, 최종소비자 등으로 누출되며, 이러한 현상은 중간재 생산자의 독점성이 강할수록, 최종재가 가격에 대해 비탄력적일수록 커짐

- 정부가 공장자동화 물품을 수입하는 국내 중소·중견기업에 혜택을 주기 위해 관세감면을 실시하고 있지만, 만약 해당 공장자동화 물품을 생산한 해외생산자의 독점성이 강하다면, 정부의 의도와 달리 조세감면 혜택이 국내 중소·중견기업보다는 해외생산자에 더 귀속될 수도 있음
 - 만약 정부 의도와는 달리 조세 혜택이 정부가 의도한 대상보다 그렇지 않은 대상으로 귀속된다면 정부가 관세감면 정책을 시행할 이유가 작아짐
 - 특히 관세감면 대상이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공장자동화 물품이기 때문에 해외생산자의 독점성이 강할 가능성이 있음
 - 관세감면 대상 공장자동화 물품의 90% 이상을 일본에서 수입하고 있음
 - 중국 등이 아닌 일본에서 대부분 수입되고 있다는 것은 가격 측면이 아니라 해당 공장자동화 물품의 성능 등이 필요하기 때문으로 예상되며, 이 경우 해외생산자의 독점성이 강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함

- 정부에서 인위적으로 관세감면 대상 물품을 한정함으로써 인해 자원배분의 인위적인 왜곡을 발생시킬 수 있고, 관세장벽의 고유 기능인 국내산업 보호를 훼손한다는 문제점도 있음
 - 이런 특정 품목에 대한 관세감면 정책이 우리나라 전체 관세율 정책에서 추구하는 시장을 통한 자원배분이라는 정책과 상반되고 이로 인해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음
 - 현재 우리나라는 중심관세율로 8%를 설정하고 대부분의 공산품에 8%의 관세율을 부과하면서 시장 중립적인 관세율 정책을 운영하고 있음
 - 이는 관세율 수준을 통해 자원분배에 인위적인 왜곡을 줄이고 시장에 그 기능을 맡기려는 것이 정책의도임
 - 특정한 공장자동화 물품에 대해 관세감면을 실시함으로써 인해 시장이 아닌

- 그리고 국내에서 제작이 곤란한 물품에 한정하고 있지만, 오히려 국내에서 제작이 곤란하므로 국내 산업을 키우기 위해서는 관세장벽을 이용해서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도 있음
 - 국내에서 제작이 곤란한 물품임을 알고 국내 사업자가 해당 물품을 개발하고 있을 수도 있는데, 관세감면제도로 개발이 어려워질 수 있음
- 종합하면, 공장자동화 물품에 대한 관세감면은 정부의 중소·중견기업 지원 정책으로서 관세감면을 시행할 타당성은 있지만, 감면 혜택의 귀착 및 관세 고유의 기능 등을 감안할 때 보수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관세감면으로 타당성이 가장 높은 국제적 관례나 관세 적용 원칙에 의한 타당성은 없으며 외부효과 교정, 형평성, 편의성 등과도 관련성이 낮아서 이와 관련된 타당성도 없다고 볼 수 있음
 - 정부가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공장자동화 물품 등에 대해 관세를 감면해 주는 산업지원 정책을 실행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됨
 - 다만 국내 중소기업을 돕기 위한 정부 의도와는 달리 조세 혜택이 정부가 의도하지 않은 대상(해외생산자)에 귀속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도 감안할 필요가 있음
 - 정부의 인위적인 감면 대상 물품 선정으로 인해 자원배분의 왜곡과 시장 중립적인 관세정책에 반하는 측면이 있음
 - 국내 산업 보호라는 관세 본연의 기능을 이용해 국내에서 아직 제작하지 못하는 물품을 생산하는 해당 국내 산업을 육성한다는 측면도 있음

2. 수혜대상의 적절성

- 공장자동화 물품에 대한 관세감면은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한정되어 있음
 - 1993년에 관세감면제도가 실행되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에 대해 관세감면을 적용하였음
 - 그 이후 2012년부터 중소기업에 대해서만 관세감면을 적용하였음

- 2014년 10월부터 중견기업에 대해서도 관세감면이 적용되어 현재까지 운영 중임
 - 2012년에 대기업이 제외되고 중소기업만 남으면서 자연스럽게 중견기업도 감면 대상에서 함께 제외되었음
 - 중견기업의 투자를 확대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중견제조업체를 공장자동화 물품 관세감면 적용대상자에 추가하였음²⁹⁾

- 2012년부터 관세감면 대상에서 대기업을 제외한 것은 WTO 보조금협정 위반과 이에 따른 상계관세 부과 등의 통상문제를 감안할 때 적절한 정책이었다고 생각함
 - 기본적으로 공장자동화 물품에 대한 관세감면제도는 기업의 규모와 무관하게 운용하는 것이 경제학적으로 적절하지만, 중소기업과 달리 대기업에 대해서는 통상분쟁 가능성이 높아서 제외하는 것이 적절함
 - 또한 대기업은 투자세액공제 등 여타 조세지원제도를 이용할 여지가 있음

- 향후 중견기업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WTO 보조금협정의 특정성을 위반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중견기업의 관세감면 규모를 지속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고, 중견기업에 대한 관세감면율을 낮추거나 혹은 중견기업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까지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수출 주도적인 특정 중견기업이 관세감면 혜택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면, 다른 국가들과 통상분쟁이 발생할 수 있음
 - WTO 보조금협정에서는 정부가 재정지원을 하거나, 정부가 받을 세수입을 받지 않거나, 그리고 이러한 정부의 지원이 특정한 기업에 한정될 경우(특정성), 이를 보조금으로 보고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음
 - 만약 다른 국가들로부터 상계관세를 받을 경우, 공장자동화 물품에 대한 관세감면제도 자체를 폐지해야 해서, 혜택을 보고 있는 중소기업에도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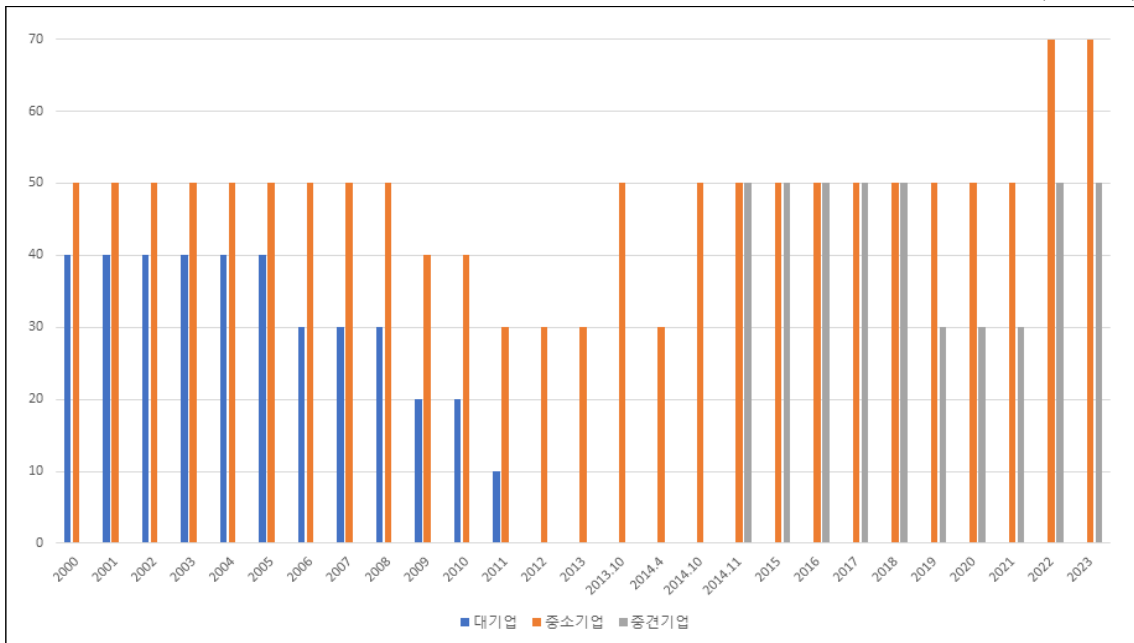
- 공장자동화 물품에 대한 관세감면제도가 실시된 이후 최근 2022년과 2023년의 관세감면율이 가장 높는데, 코로나19 위기 상황도 종료되었고, 앞서 언급한 부작용 등을 감안할 때 이전의 관세감면율 수준으로 조정하는 게 적절할 것으로 여겨짐

29) 「관세법 시행규칙」 [시행 2014. 11. 1.] [기획재정부령 제440호, 2014. 10.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2022년과 2023년의 관세감면율이 50%와 70%로 지난 20여년 기간 동안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코로나19 발생으로 전례 없는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하여 경영 여건이 어려워진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설비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공장자동화 물품 관세감면율을 50%와 70%로 상향 조정³⁰⁾하였지만, 현재는 이런 위기 상황이 종료되었음
- 중소기업의 관세감면율은 50% 수준이었고, 중견기업도 이전처럼 중소기업과 차별을 뒤서 30%를 적용하면 중견기업의 특정성 등의 문제도 약해질 것으로 여겨짐

[그림 IV-1] 공장자동화 물품 관세감면율 추이

(단위: %)



자료: 「관세법 시행규칙」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3. 유사 중복 여부

- 공장자동화 물품에 대한 관세감면 수혜대상은 중소·중견기업이기 때문에, 현재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다수의 조세 및 재정 지원 사업과 중복될 가능성이 높음

30) 「관세법 시행규칙」 [시행 2022. 1. 1.] [기획재정부령 제881호, 2021.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다만, 공장자동화 물품 설치 등을 제외한 다른 조세 및 재정을 지원하는 제도는 없음
-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로 중복될 수 있는 제도로는 특별세액감면제도와 통합투자세액공제제도가 있음
 -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제도
 - 통합투자세액공제제도: 중소기업 10%, 중견기업 5%
 -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제도와 통합투자세액공제제도는 공장자동화 물품 설치 등을 포함해서 더 넓은 범위의 투자에 대해 세액을 감면 혹은 공제해주는 제도임
- 따라서 공장자동화 물품에 대한 관세감면은 직접적인 비용 절감을 지원하는 제도이지만, 세액공제는 법인세 등 납부할 세액이 존재할 때만 유효한 제도라는 차이가 있음
 - 투자세액공제는 법인세 등 납부할 세액이 존재할 때만 유효한 제도임
 - 법인세 감면 등은 이익이 나서 법인세를 납부할 수 있을 때 혜택이 제공되지만, 공장자동화 관세감면은 이와 상관없이 적용됨
 - 그래서 다른 조세지원제도와 달리 관세감면은 물품 구매비용을 직접 낮추기(가격 할인) 때문에 기업(납세자)들이 선호할 수밖에 없음
- 공장자동화 물품에 대한 관세감면을 재정지원으로 할 경우보다 현재의 조세지원 제도가 더 효율적일 수 있음
 - 공장자동화 물품을 설치한 기업에 재정지원을 할 경우에는 기업 확인 및 물품 확인 등의 행정비용이 발생하지만,
 - 관세감면이라는 조세지원제도는 신청 기업 및 물품 확인이 기존 수입신고를 통해 추가적인 행정비용 없이 이루어진다는 장점이 있음

V. 효과성 평가



V. 효과성 평가

1. 분석 자료

- 효과성 분석을 위해 관세청과 국세청에서 제공한 자료와 더불어 KoDATA 자료를 활용하였음
- 관세청과 국세청이 보유한 자료가 상이하어, 양 기관의 협조를 통해 동일한 기준을 기준으로 병합한 자료를 제공받았음
 - 관세청: 「조세특례제한법」상 공장자동화 물품 외 관세감면 혜택 대상에 해당하는 HS 10단위 부호를 기준으로 해당 부호의 물품을 수입한 업체 전체에 대한 자료
 - 국세청: 관세청 자료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자에 대한 자료
 - 국세청에서 제공한 자료에는 매출액, 영업손익, 당기순손익, 경상개발비, 자산총계, 자본총계, 산출세액에 대한 정보만 포함되어 있음
- 국세청 자료에는 한정된 정보만 포함되어 있어서 기업의 고용 관련 분석을 수행할 수 없어 KoDATA 자료와 병합하여 분석을 수행함
 - KoDATA(舊 KED): 기업 일반 현황 및 재무정보 등을 포함한 자료
 - KoDATA는 2005년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의 일환으로 정책금융기관과 시중은행이 출자하여 기업 신용평가 전문기관으로 설립됨
 - 전국 최대 규모인 약 1,200만개 이상의 기업 데이터베이스를 축적하고 있음
 - 관세청과 국세청 자료에는 무작위 추출된 기업ID 번호가 부여되어 있어 KoDATA의 사업자등록번호 정보와 다르므로 병합을 위해서는 기준이 되는 변수를 설정해야 함
 - 자산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손익, 당기순손익을 십만원의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백만원단위로 환산하였고, 해당 변수들을 기준으로 KoDATA와 병합하였음
 - 최대한 유사한 기업끼리 병합하고 충분한 수의 관측치가 병합될 수 있도록 단위를 조정하였음

- 분석 기간은 2021~2022년이며, 총 3,399개의 관측치가 분석에 활용되었음
 - 국세청에서 2018~2022년, 관세청에서 2021~2023년에 해당하는 자료를 제공하였으며, 공통되는 기간이 2021~2022년이므로 분석 기간을 2021~2022년으로 설정하였음
 - 국세청 자료의 관측치 수는 35,022개, 관세청은 38,199개, KoDATA는 1,318,972개
 - 국세청과 관세청 자료를 병합한 결과 총 18,810개의 관측치가 두 자료 모두에 포함되어 있었으며, 그중 8,233개의 관측치가 KoDATA와 병합되었음
 - 국세청과 관세청 병합자료 중 약 19%가 KoDATA 자료와 병합되어 일정정도 무작위표본으로 볼 수 있음
 - 그러나 주요 설명변수 및 통제변수가 누락된 경우가 있어 최종 3,399개의 관측치가 분석에 활용되었음

2. 분석에 활용한 변수

- 공장자동화 물품에 대한 관세감면 제도는 생산력 제고와 품질 향상 등 제조업 경쟁력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관세감면이 기업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음
 - 다양한 기업활동 중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투자, 고용, 순이익 증가율, 매출액 증가율 등을 설명변수로 설정하였음
 - 관세감면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유사한 물품을 수입하였으나 관세를 감면받은 기업과 감면받지 않은 기업을 비교하는 것이 바람직함
 - 공장자동화 물품을 구입하지 않은 기업과 구입한 기업을 비교하게 되면 설명변수의 차이가 공장자동화 물품 구입 여부로 인한 것인지 관세감면으로 인한 것인지 구분할 수 없음

- 생산력을 제고하고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기업수준에서 적절한 투자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자산총계에 로그를 취한 금액과 경상개발비와 연구개발비를 합한 금액을 투자로 보았음
 - 자산에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이 있으나 자료에 자산총계만 제공되어 있어 자산총계를 이용하였음

- 공장자동화 물품은 유형자산이며, 이와 같은 구체적 형태를 갖는 고정자산의 증감을 통해 기업의 설비투자 동향 및 성장잠재력을 유추해볼 수 있음
 - 경상개발비는 특정 신기술 연구 또는 신제품의 개발과 관련하여 개발단계에서 발생한 지출 중 무형자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로서 제조활동 관련 비용을 일컫음
 - 연구개발비는 연구 및 개발 활동에 소요된 비용 중 무형자산의 요건을 갖춘 경우이며, 경상개발비와 연구개발비를 합하여 연구투자로 정의하였음
- 관세감면으로 경쟁력이 향상되어 생산량이 증가한다면 고용도 달라질 수 있음
- 공장자동화 제품은 자본의 증가로 이해할 수 있으므로 자본과 보완요소로 알려져 있는 숙련 근로자의 고용이 증가할 수 있으나 자본과 대체요소를 여겨지는 저숙련 근로자의 고용은 감소할 수 있음
 - 따라서 숙련 근로자의 고용 증가, 저숙련 근로자의 고용 감소의 상대적 크기에 따라 고용의 증감 방향이 결정됨
 - 자료에서 숙련 근로자와 비숙련 근로자를 구분할 수는 없었지만, 피보험자 수가 기업에 고용된 근로자 수를 의미하여 해당 변수를 종속변수로 활용하였음
 - 종업원 수 증가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두 효과의 상대적 크기에 대해 논할 수 있음
- 공장자동화 물품 수입 및 관세면제로 기업의 경쟁력이 증가한다면 매출액과 순이익이 증가하게 될 것으로 예상됨
- 매출액 증가율 및 순이익 증가율을 종속변수로 하는 분석을 수행하여 관세감면이 매출액과 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음
- 유사한 규모의 기업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변수를 적절히 통제할 필요가 있어 매출액에 로그를 취한 변수와 부채비율을 통제변수로 설정하였음
- 매출액은 기업의 규모를 잘 나타내는 변수이며, 부채비율은 기업의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지표로 활용하기 위해 포함하였음
 - 관세감면금액에 로그를 취한 변수를 주요 설명변수로 설정한 분석에서는 연평균

- 과세가격(미화금액)에 로그를 취한 변수, 연평균 관세금액에 로그를 취한 변수, 연간 공장자동화 물품 관세감면 대상물품 수입횟수를 통제변수로 추가하였음
- 기업규모가 유사하다고 하더라도 공장자동화 물품을 수입하는 규모가 다른 공장자동화의 정도 혹은 공장을 자동화하는 추세가 다르다고도 해석할 수 있으므로 최대한 유사한 특성을 가진 기업 간 비교를 위하여 통제변수를 추가하였음

3. 분석 방법

- 분석을 위해 최소제곱회귀분석모형(Ordinary least squares model, OLS), 고정효과모형(Fixed effect model, FE), 확률효과모형(Random effect model, RE)을 이용함
 - 분석 자료를 통합(pooling)하여 최소제곱회귀분석 수행
 - 분석 기간이 2년(2021년, 2022년)이므로 패널자료로 볼 수 있어 패널분석도 함께 수행하였음

가. 최소제곱회귀분석모형

- 최소제곱회귀분석모형을 위해 이용한 회귀식은 아래와 같음

$$y_{it} = \alpha + \beta \text{benefit}_{it} + X_{it}\gamma + \epsilon_{it}, \quad i = 1, \dots, N, \quad t = 2021, 2022$$

- y_{it} : 기업 i 의 t 연도 투자(자산총계 및 연구투자에 로그를 취한 금액), 자기자본증가율, 피보험자 수, 순이익 증가율, 매출액 증가율
- benefit_{it} : 기업 i 의 t 연도 관세감면 여부 혹은 연평균 관세감면금액에 로그를 취한 금액
- X_{it} : 기업 i 의 t 연도 통제변수(로그를 취한 매출액, 부채비율, 연간 공장자동화 물품 수입횟수, 로그를 취한 연간 과세가격(미화금액), 로그를 취한 관세금액)
- ϵ_{it} : 오차항
- 연구의 주된 관심이 되는 회귀계수는 β 로, 공장자동화 물품 외 관세감면이 기업활동에 미치는 한계효과(Marginal effect)를 나타냄

- 관세감면 여부 분석에서는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관세감면을 받은 기업이 감면을 받지 않았으나 같은 HS 코드를 가진 물품을 수입한 여타 기업에 비해 종속변수가 얼마만큼 변화하는지를 나타냄
- 관세감면금액에 로그를 취한 금액을 주요 설명변수로 한 분석에서는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관세감면금액이 1% 증가할 때 종속변수가 얼마만큼 변화하는지를 나타냄

나. 확률효과모형과 고정효과모형

- 확률효과모형과 고정효과모형은 분석에 이용한 자료가 패널자료일 때 활용 가능한 모형
 - 최소제곱회귀분석모형은 설명변수와 오차항 간에 상관관계가 발생하지 않을 때 일치추정량을 얻을 수 있으므로 내생성으로 인한 편의(bias)가 발생할 수 있음
 - 고정효과모형을 이용하게 되면 자료에 나타나지 않고 오차항에 포함되어 편의를 일으키는 요소 중 시간에 따라 변화하지 않는 특성을 제거하여 일치추정량을 얻을 수 있음
 - 고정효과모형을 추정하는 과정에서 각 변수를 시간에 대한 평균을 취하여 차감하게 되므로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특성이 사라지게 됨
 - 그러나 고정효과모형의 경우 통제변수에 포함하였으나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특성의 효과를 추정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음
 - 고정효과모형으로 일치추정량(consistent estimator)을 얻을 수 있지만 확률효과모형을 이용하게 되면 효율적인 추정량(efficient estimator)을 얻을 수 있음
 - 분석기간 동안 변화하지 않으나 자료로는 관측되지 않는 기업의 특성(예를 들어 위험기피정도, 선호 등)이 분석에 이용한 설명변수와 상관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효율적인 확률효과모형을, 상관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일치추정량을 제공하는 고정효과모형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확률효과모형과 고정효과모형 중 어느 모형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를 판단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하우스만 검정을 수행할 수 있음
 - 귀무가설은 두 모형 모두가 일치추정량을 제공한다는 것임

- 귀무가설을 기각하게 되면 고정효과모형이 일치추정량을 제공한다는 것으로 해석
- 본 연구의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하우스만 검정을 수행한 결과 귀무가설을 기각하였음

4. 효과성 분석

가. 기초통계

□ <표 V-1>은 분석에 활용한 자료의 기초통계임

- 공장자동화 물품 외에 해당하는 물품을 수입한 기업의 연간 평균 수입건수는 4.08회이며, 관세감면율은 4.48%, 감면받은 관세는 218,750원이며, 과세가격의 원화금액은 2,600만원이었음
- 연간 총관세감면금액의 평균은 353,436원이었으며, 과세가격은 8,600만원 이었음
- 자산은 27억원, 연구투자금액은 8,000만원, 자기자본 증가율은 50%, 피보험자 수는 9명, 순이익 증가율은 153%, 매출액 증가율은 170%였음
 - 자기자본 증가율을 살펴보면 자기자본이 도리어 감소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자기자본 증가율이 매우 낮은 일부 기업의 영향임
 - 자기자본 증가율이 하위 1%인 기업을 제외한 평균은 약 100%이며, 최소한 자기자본이 감소하지 않는 정도로 나타남
- 연평균 매출액은 약 33억원, 부채비율은 2.87이었음
 - 부채비율은 자산 대비 부채로 정의하였는데, 통상 부채비율이 200%를 초과하면 안정성이 낮은 기업으로 평가하는 것을 고려하면 기업의 재무상태가 상당히 좋지 않은 것임
 - 그러나 이는 부채비율이 매우 높은 일부 기업의 영향으로, 상위 1%를 제외한 평균을 다시 살펴보면 1.35였으며, 이는 2022년 평균 부채비율인 1.22와 유사한 수준임
 - 2022년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평균 매출액이 42.9억원이며, 자료에 중소기업과 영세기업이 혼재되어 있음을 고려하면 합리적인 수준임

<표 V-1> 기초통계

(단위: 백만원, %, 명, 회, 백만달러, 원)

구분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중속변수				
자산총계	2,717.09	7,109.76	7	144,384
연구투자금액	80.33	694.544	0	27,315.44
자기자본증가율	50.33	1421.00	-36,344.90	57,279.22
피보험자 수	8.87	18.40	0	361.00
순이익증가율	152.97	7,371.72	-132,983.48	255,053.66
매출액증가율	169.99	2,046.78	-99.94	91,564.16
통제변수				
매출액	3,356.28	7,859.28	1	192,527
부채비율	2.88	22.34	-241.90	752.08
관세면제 관련 변수(연평균)				
관세감면율	4.48	18.62	0	100
관세율	3.17	3.46	0	8
수입횟수	4.087	14.541	1	614
과세가격 미화금액	21,183.88	79,128.44	1	1,663,220
과세가격 원화금액	25.87	99.24	0	2,191.77
관세	582,392.90	3,383,625.70	0	70,501,600
관세감면금액	218,750.58	3,102,262.80	0	104,600,000
관세면제 관련 변수(연간 총액)				
과세과격 미화금액	72,188.67	295,078.88	1	10,495,485
과세가격 원화금액	86.71	346.77	0	12,049.03
관세	1,870,930.40	13,716,218.00	0	415,000,000
관세감면금액	363,436.23	4,460,532.40	0	155,500,000

자료: 관세청 내부자료, 국세청 내부자료, KoDATA

□ <표 V-1>에서는 관세를 감면받은 기업과 감면받지 않은 기업이 혼재되어 있어 다음의 <표 V-2>는 관세를 감면받은 기업과 감면받지 않은 기업을 구분하여 기초통계량을 제시하였음

○ 총 3,399개의 관측치 중 167개는 관세를 감면받았고, 3,232개는 관세를 감면받지 않았음

- 동일한 HS코드를 가진 물품을 수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관세를 감면받은 기업이 더 적음

- 해당 관세감면제도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감면신청을 한 경우에만 감면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제한적인 수의 관측치만이 감면을 받은 것으로 보임
- 전반적으로 관세를 감면받은 기업규모가 더 크고, 관세감면 대상이 되는 물품의 수입횟수도 더 많으며, 평균 과세가격 및 관세도 더 많았음
 - 기업의 종업원 수, 매출액, 자산, 투자금액이 관세를 면제받은 기업이 더 많았음
- 기업활동을 나타내는 일부 지표는 관세를 감면받지 않은 기업이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남
 - 관세를 감면받지 않은 기업이 자기자본 증가율, 순이익 증가율, 매출액 증가율은 더 높고, 부채비율은 더 낮았음
 - 그러나 관세를 면제받은 기업의 연구투자금액이 더 많았음
- 관세가 감면되는 품목을 더 많이 수입하는 기업이 비용최소화를 위해 해당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유인이 있으므로 관세감면을 받은 기업의 연평균 및 연간 총과세가격, 수입횟수가 관세를 감면받지 않은 기업보다 더 많은 것은 합리적임
 - 관세를 감면받은 기업의 평균 관세율이 더 높은데, HS코드가 같은 물품이라고 하더라도 원산지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은 다를 수 있음
 - 예를 들어 FTA가 체결된 국가와 체결되지 않은 국가 사이에 세율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표 V-2> 관세감면 여부에 따른 기초통계

(단위: 백만원, %, 명, 회, 달러, 원)

구분	관세를 감면받지 않은 기업		관세를 감면받은 기업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종속변수				
자산총계	2,549.95	5,961.59	7,678.83	18,749.77
연구투자금액	62.39	379.70	166.35	797.15
자기자본증가율	53.22	1,393.68	30.19	254.18
피보험자 수	8.47	16.08	20.57	44.57
순이익증가율	196.03	7,495.94	-16.96	676.11
매출액증가율	175.47	2,097.66	65.47	385.51

<표 V-2>의 계속

(단위: 백만원, %, 명, 회, 달러, 원)

구분	관세를 감면받지 않은 기업		관세를 감면받은 기업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통제변수				
매출액	3,259.54	7,266.06	7,692.38	16,574.97
부채비율	2.93	22.71	3.89	20.74
관세면제 관련 변수(연평균)				
관세감면율	-	-	63.13	36.46
관세율	2.98	3.42	6.40	2.45
수입횟수	4.03	14.77	7.15	16.79
과세가격 미화금액	18,854.34	68,966.26	62,489.25	178,026.00
과세가격 원화금액	22.96	87.57	77.00	214.31
관세	533,774.25	3,104,116.40	1,335,361.10	4,871,355.70
관세감면금액	-	-	4,263,701.80	12,817,767.00
관세면제 관련 변수(연간 총액)				
과세과격 미화금액	66,480.20	287,199.01	201,036.40	471,921.93
과세가격 원화금액	79.75	337.32	241.16	550.67
관세	1,635,532.80	11,616,876.00	6,575,827.00	35,461,300.00
관세감면금액	-	-	7,359,247.10	18,733,727.00
관측치 수	3,232		167	

자료: 관세청 내부자료, 국세청 내부자료, KoDATA

- KoDATA 자료와 모든 기업이 병합된 것이 아니므로 병합된 기업과 병합되지 않은 기업 사이에 차이가 존재하는지 살펴보기 위해 추가로 기초통계를 살펴보았음
- <표 V-3>은 KoDATA에 병합된 기업과 병합되지 않은 기업의 기초통계를 요약한 것임
 - 병합된 기업은 병합되지 않은 기업보다 기업규모가 작은 것으로 나타남
 - 종속변수로 이용한 자산총계, 피보험자 수, 연구투자금액, 자기자본증가율, 순이익 증가율, 매출액 증가율 모두 KoDATA에서 병합되지 않은 기업보다 더 작았음
 - 병합된 기업 매출액은 병합되지 않은 기업보다 적었지만 부채비율은 높았음
 - 관세면제와 관련한 변수도 관세청 및 국세청 자료에서 병합되지 않은 기업보다 병합된 기업의 평균값이 더 작았음

- 관세감면율, 관세율, 연간 총수입횟수, 과세가격, 관세, 관세감면금액 모두 병합된 기업이 더 작은 평균값을 보임

<표 V-3> 자료별 기초통계

(단위: 백만원, %, 명, 회, 달러, 원)

구분	관세청&국세청		병합		KoDATA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중속변수						
자산총계	304,061.31	(4,023,525)	2,476.23	(6,680)	11,295.71	(561,703.27)
연구투자금액	-	-	70.57	(648.81)	203.01	(1,162.09)
자기자본증가율	-	-	48.06	(1,369.27)	83.44	(6,344.90)
피보험자 수	-	-	8.87	(18.40)	18.55	(274.65)
순이익증가율	-	-	-37.39	(12,843.28)	18.15	(10,761.37)
매출액증가율	-	-	258.95	(5,497.93)	247.90	(7,569.54)
통제변수						
매출액	234,727.96	(2,998,201)	3,088.99	(7,395.57)	9,096.11	(367,513)
부채비율	-	-	5.51	(308.56)	2.69	(21.17)
관세면제 관련 변수(연평균)						
관세감면율	7.89	(23.79)	4.25	(18.11)	-	-
관세율	3.59	(3.48)	3.12	(3.46)	-	-
수입횟수	9.61	(52.01)	4.08	(13.92)	-	-
과세가격 미화금액	67,946.92	(245,556)	20,647	(75,806)	-	-
과세가격 원화금액	82.81	(299.31)	25.17	(94.82)	-	-
관세	1,918,544	(10,520,682)	555,504	(3,229,399)	-	-
관세감면금액	683,045	(6,931,469)	199,503	(2,921,774)	-	-
관세면제 관련 변수(연간 총액)						
과세과격 미화금액	443,479	(3,369,096)	71,137	(281,117)	-	-
과세과격 원화금액	533.86	(4,024)	85.45	(330.76)	-	-
관세	14,267,832	(240,700,000)	1,799,561	(13,009,275)	-	-
관세감면금액	2,501,964	(41,866,104)	326,268	(4,181,986)	-	-
관측치 수	14,706		4,104		1,217,076	

자료: 관세청 내부자료, 국세청 내부자료, KoDATA

나. 계량 분석: 관세감면 여부

- <표 V-4> 내지 <표 V-6>은 관세감면 여부를 설명변수로 하여 분석한 결과이며, 공장자동화 물품 외 관세감면은 투자 및 고용을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났으나 추정모형에 따라 다른 결과를 보임
- 최소제곱회귀분석모형과 확률효과모형에서 관세를 감면받은 기업의 자산총계 증가율, 피보험자 수 증가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종속변수에 로그를 취하였으므로 변화율로 해석해야 함
 - 구체적으로, 최소제곱회귀분석에서는 관세를 감면받은 기업의 자산총계증가율은 감면받지 않은 기업보다 34%, 종업원 수 증가율은 33% 높은 것으로, 확률효과모형에서는 자산총계증가율이 18%, 종업원 수 증가율은 33%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고정효과모형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를 발견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분석모형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 단정적인 해석은 어려움
- 여타 종속변수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음
- 매출액 증가율이 높은 기업은 자산총계 증가율과 연구투자 증가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매출액에 로그를 취한 변수를 설명변수로 설정하였으므로 한계효과를 나타내는 회귀계수는 탄력성으로 해석할 수 있음
 - 구체적으로, 매출액이 1% 증가할 때 자산총계는 약 0.6~0.2%, 연구투자는 0.3~1% 증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이외의 종속변수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거나 분석모형에 따라 통계적 유의성이 달라졌음
- 부채비율이 높은 기업이 자산총계 및 연구투자 증가율도 높았으나, 해당 설명변수 또한 분석모형에 따라 다른 결과를 보임

<표 V-4> 공장자동화 물품 외 관세감면 혜택 여부가 기업활동에 미친 영향 1

(단위: 백만원, %, 개)

구분	ln자산총계		
	OLS	RE	FE
관세감면 여부	0.336*** (0.0618)	0.181*** (0.0520)	-0.0833 (0.0801)
ln매출액	0.670*** (0.0103)	0.638*** (0.0105)	0.186*** (0.0382)
부채비율	0.000746 (0.000588)	0.00101** (0.000482)	0.00132* (0.000729)
2022년 연도더미	0.0599** (0.0285)	0.0798*** (0.0158)	0.129*** (0.0182)
상수항	15.99*** (0.0763)	16.25*** (0.0781)	19.53*** (0.279)
관측치 수	-	3,399	-
R ²	0.566	-	0.270
기업 수	-	3,126	-

주: 1. () 안의 숫자는 표준오차를 의미함

2. *, **, ***은 각각 10%, 5%,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

자료: 관세청 내부자료, 국세청 내부자료, KoDATA

<표 V-5> 공장자동화 물품 외 관세감면 혜택 여부가 기업활동에 미친 영향 2

(단위: 백만원, %, 개)

구분	ln연구투자		
	OLS	RE	FE
관세감면 여부	-0.0353 (0.383)	-0.000717 (0.350)	0.178 (0.684)
ln매출액	0.287*** (0.0636)	0.290*** (0.0648)	1.008*** (0.326)
부채비율	0.00661* (0.00364)	0.00678** (0.00326)	0.00742 (0.00622)
2022년 연도더미	-0.309* (0.176)	0.0296 (0.120)	0.171 (0.155)
상수항	-6.432*** (0.472)	-6.488*** (0.482)	-11.88*** (2.379)
관측치 수	-	3,399	-
R ²	0.008	-	0.050
기업 수	-	3,127	-

주: 1. () 안의 숫자는 표준오차를 의미함

2. *, **, ***은 각각 10%, 5%,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

자료: 관세청 내부자료, 국세청 내부자료, KoDATA

<표 V-6> 공장자동화 물품 외 관세감면 혜택 여부가 기업활동에 미친 영향 3

(단위: 백만원, %, 개)

구분	자기자본증가율		
	OLS	RE	FE
관세감면 여부	-21.39 (108.5)	-15.01 (109.9)	10.60 (405.7)
ln매출액	0.296 (18.04)	1.748 (18.48)	240.4 (193.6)
부채비율	-0.0514 (1.033)	-0.372 (1.033)	-4.549 (3.690)
2022년 연도더미	-17.61 (50.02)	-34.09 (47.41)	-169.2* (92.24)
상수항	56.84 (133.9)	49.72 (137.2)	-1,642 (1,412)
관측치 수	-	3,399	-
R ²	0.000	-	0.019
기업 수	-	3,127	-

주: () 안의 숫자는 표준오차를 의미함
 자료: 관세청 내부자료, 국세청 내부자료, KoDATA

다. 계량 분석: 증가율

- <표 V-7> 내지 <표 V-12>는 공장자동화 물품 외 관세감면금액에 로그를 취하여 설명변수로 활용한 결과이며, 감면 여부를 대상으로 한 분석과 마찬가지로 관세감면금액 증가율이 높은 기업이 투자와 고용 증가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분석모형에 따라 통계적 유의성이 달라짐
- 최소제곱회귀분석모형과 확률효과모형에서 공장자동화 물품 외 관세감면금액의 증가율이 높을수록 자산총계 증가율과 종업원 수 증가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구체적으로, 최소제곱회귀분석모형에서는 관세감면금액이 1% 증가할 때 자산총계와 종업원 수가 0.02%, 확률효과모형에서는 관세감면금액이 1% 증가할 때 자산총계가 0.01%, 종업원 수가 0.02%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즉, 관세감면금액에 대한 자산총계와 종업원 수의 탄력성이 0.01이라고 해석할 수 있음

- 관세를 감면받은 기업만을 대상으로 한 분석도 수행하였으나 주요 설명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며, 관측치 수도 167개로 매우 적어서 일치추정량으로 해석하기는 어려움

- 그러나 고정효과모형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발견하지 못함
 - 더불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도 탄력성이 1보다 작아 경제적 효과성이 크지 않음
 - 탄력성이 1이라는 것은 관세감면금액이 1% 증가할 때 투자 혹은 고용이 동일하게 1% 증가한다는 것임
 - 그러나 현재 분석결과는 탄력성이 0.01으로 낮은 수준
- 매출액 증가율이 높은 기업이 자산총계 증가율과 연구투자 증가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과세가격 증가율이 높은 기업이 자산총계 증가율이 높았으나, 분석모형에 따라 통계적 유의성이 달라짐
- 흥미로운 점은 관세 증가율이 높을수록 연구투자 증가율은 감소한다는 것임

<표 V-7> 공장자동화 물품 외 관세감면이 기업활동에 미친 영향 1

(단위: 백만원, 회, 백만달러, 원, %, 개)

구분	ln자산총계		
	OLS	RE	FE
ln관세감면금액	0.0155*** (0.00308)	0.00780*** (0.00265)	-0.00596 (0.00426)
수입횟수	-0.000848 (0.000932)	-0.000549 (0.000938)	0.00167 (0.00334)
ln과세가격	0.0281*** (0.00566)	0.0272*** (0.00526)	0.00991 (0.0105)
ln관세	-0.000512 (0.00141)	0.000577 (0.00124)	-0.000266 (0.00214)
ln매출액	0.659*** (0.0106)	0.627*** (0.0107)	0.181*** (0.0386)
부채비율	0.000741 (0.000586)	0.00101** (0.000481)	0.00139* (0.000741)

<표 V-7>의 계속

(단위: 백만원, 회, 백만달러, 원, %, 개)

구분	ln자산총계		
	OLS	RE	FE
2022년 연도더미	0.0610** (0.0290)	0.0822*** (0.0160)	0.133*** (0.0187)
상수항	15.94*** (0.0876)	16.15*** (0.0871)	19.44*** (0.293)
관측치 수	-	3,399	-
R ²	0.569	-	0.276
기업 수	-	3,126	-

주: 1. () 안의 숫자는 표준오차를 의미함

2. *, **, ***은 각각 10%, 5%,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

자료: 관세청 내부자료, 국세청 내부자료, KoDATA

<표 V-8> 공장자동화 물품 외 관세감면이 기업활동에 미친 영향 2

(단위: 백만원, 회, 백만달러, 원, %, 개)

구분	ln연구투자		
	OLS	RE	FE
ln관세감면금액	0.00112 (0.0191)	0.00396 (0.0177)	0.0143 (0.0364)
수입횟수	-0.00436 (0.00578)	-0.00304 (0.00582)	-0.00250 (0.0285)
ln과세가격	-0.0351 (0.0352)	-0.0332 (0.0341)	-0.0765 (0.0900)
ln관세	-0.0225** (0.00878)	-0.0193** (0.00821)	0.00848 (0.0183)
ln매출액	0.321*** (0.0656)	0.319*** (0.0667)	1.043*** (0.330)
부채비율	0.00663* (0.00364)	0.00668** (0.00326)	0.00739 (0.00634)
2022년 연도더미	-0.226 (0.180)	0.0520 (0.121)	0.154 (0.160)
상수항	-6.290*** (0.543)	-6.313*** (0.545)	-11.40*** (2.503)
관측치 수	-	3,399	-
R ²	0.010	-	0.054
기업 수	-	3,127	-

주: 1. () 안의 숫자는 표준오차를 의미함

2. *, **, ***은 각각 10%, 5%,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

자료: 관세청 내부자료, 국세청 내부자료, KoDATA

<표 V-9> 공장자동화 물품 외 관세감면이 기업활동에 미친 영향 3

(단위: 백만원, 회, 백만달러, 원, %, 개)

구분	자기자본증가율		
	OLS	RE	FE
ln관세감면금액	-1.200 (5.435)	-0.915 (5.515)	-1.239 (21.62)
수입횟수	-0.266 (1.642)	-0.219 (1.668)	8.216 (16.95)
ln과세가격	3.090 (9.980)	2.636 (10.20)	-5.628 (53.46)
ln관세	1.667 (2.493)	1.513 (2.530)	0.988 (10.88)
ln매출액	-1.429 (18.62)	0.179 (19.08)	232.4 (196.2)
부채비율	-0.0540 (1.033)	-0.369 (1.034)	-4.211 (3.766)
2022년 연도더미	-24.72 (51.18)	-39.18 (48.40)	-159.1* (95.10)
상수항	31.59 (154.3)	29.29 (157.6)	-1,584 (1,487)
관측치 수	-	3,399	-
R ²	0.000	-	0.020
기업 수	-	3,127	-

주: () 안의 숫자는 표준오차를 의미함
 자료: 관세청 내부자료, 국세청 내부자료, KoDATA

<표 V-10> 공장자동화 물품 외 관세감면이 기업활동에 미친 영향 4

(단위: 백만원, 회, 백만달러, 원, %, 개)

구분	ln피보험자수		
	OLS	RE	FE
ln관세감면금액	0.0195** (0.00788)	0.0195** (0.00777)	0.0333 (0.0245)
수입횟수	-0.000256 (0.00238)	-0.000188 (0.00238)	-0.0104 (0.0192)
ln과세가격	-0.0255* (0.0145)	-0.0218 (0.0145)	-0.0590 (0.0605)
ln관세	0.000478 (0.00362)	-0.000668 (0.00357)	-0.00435 (0.0123)
ln매출액	0.818*** (0.0270)	0.797*** (0.0273)	0.248 (0.222)

<표 V-10>의 계속

(단위: 백만원, 회, 백만달러, 원, %, 개)

구분	ln피보험자수		
	OLS	RE	FE
부채비율	0.00211 (0.00150)	0.00227 (0.00145)	0.00358 (0.00426)
2022년 연도더미	-0.178** (0.0743)	-0.112* (0.0640)	0.0767 (0.108)
상수항	-4.460*** (0.224)	-4.342*** (0.225)	0.0643 (1.684)
관측치 수	-	3,399	-
R ²	0.024	-	0.031
기업 수	-	3,127	-

주: 1. () 안의 숫자는 표준오차를 의미함

2. *, **, ***은 각각 10%, 5%,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

자료: 관세청 내부자료, 국세청 내부자료, KoDATA

<표 V-11> 공장자동화 물품 외 관세감면이 기업활동에 미친 영향 5

(단위: 백만원, 회, 백만달러, 원, %, 개)

구분	순이익 증가율		
	OLS	RE	FE
ln관세감면금액	-11.67 (29.20)	-10.92 (28.85)	-7.747 (72.96)
수입횟수	7.450 (8.821)	7.764 (9.080)	17.02 (57.19)
ln과세가격	-40.83 (53.62)	-45.43 (54.49)	-123.2 (180.4)
ln관세	-10.45 (13.39)	-9.488 (13.29)	5.704 (36.70)
ln매출액	112.8 (100.1)	131.6 (104.1)	1,969*** (661.9)
부채비율	-3.498 (5.551)	-2.580 (5.342)	4.189 (12.71)
2022년 연도더미	-69.54 (275.0)	-116.2 (218.0)	-397.4 (320.9)
상수항	-314.9 (829.0)	-384.0 (854.8)	-13,200*** (5,019)
관측치 수	-	3,399	-
R ²	0.001	-	0.035
기업 수	-	3,127	-

주: 1. () 안의 숫자는 표준오차를 의미함

2. *, **, ***은 각각 10%, 5%,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

자료: 관세청 내부자료, 국세청 내부자료, KoDATA

<표 V-12> 공장자동화 물품 외 관세감면이 기업활동에 미친 영향 6

(단위: 백만원, 회, 백만달러, 원, %, 개)

구분	매출액 증가율		
	OLS	RE	FE
ln관세감면금액	-4.060 (8.169)	-0.538 (4.201)	-0.0411 (4.775)
수입횟수	-1.206 (2.468)	-0.486 (2.140)	0.849 (3.743)
ln과세가격	14.80 (15.00)	8.200 (9.379)	3.087 (11.81)
ln관세	1.241 (3.747)	6.994*** (2.052)	9.342*** (2.402)
ln매출액	-82.53*** (27.99)	-34.01 (24.40)	93.85** (43.32)
부채비율	-0.519 (1.553)	-0.529 (0.740)	-0.394 (0.832)
2022년 연도더미	-44.35 (76.93)	-32.42 (19.78)	-44.34** (21.00)
상수항	639.0*** (231.9)	345.7* (193.4)	-568.6* (328.5)
관측치 수	-	3,399	-
R ²	0.003	-	0.084
기업 수	-	3,127	-

주: 1. () 안의 숫자는 표준오차를 의미함

2. *, **, ***은 각각 10%, 5%,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

자료: 관세청 내부자료, 국세청 내부자료, KoDATA

5. 소결

- 공장자동화 외 물품에 대한 관세감면제도는 기업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분석모형에 따라 회귀계수의 통계적 유의성이 달라지고 탄력성도 1보다 작아 효과를 단정적으로 설명하기는 어려움
 - 최소제곱회귀분석모형과 확률효과모형에서 관세감면 여부 및 관세감면금액 증가율이 자산총계 증가율, 피보험자 수 증가율과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고정효과모형에서는 통계적 유의성이 사라졌음
 - 연구투자 증가율, 자기자본 증가율, 순이익 증가율, 매출액 증가율에는 통계적

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찾지 못했음

- 본 연구 결과의 해석과 적용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하여야 함
 - 분석기간이 2021~2022년으로 상대적으로 기간이 짧으므로 해당 기간에 국한된 결과일 수 있음
 - 관세청 및 국세청, KoDATA를 병합하는 과정에서 병합되지 않은 기업도 있으며, 분석자료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병합된 기업과 병합되지 않은 기업 사이에 차이가 존재함
 - 병합되지 않은 기업의 규모가 더 큰데, 해당 기업을 분석에 활용하면 다른 결과를 얻게 될 수 있음
 - KoDATA와 관세청 및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병합하는 과정에서 각 기업의 고유번호가 아니라 백만원 단위로 환산한 자산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손익, 당기순손익 변수를 이용하였기 때문에 유사한 특성을 가진 다른 기업의 자료가 병합되었을 수 있음
 - 사업자등록번호 혹은 KoDATA와 관세청, 국세청에서 동시에 사용 가능한 기업 고유번호를 이용하여 병합한다면 좀 더 정확한 분석이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개인정보보호 등으로 인해 실현 가능하지 않았음
 - 기업의 특성을 나타내는 다른 통제변수를 추가하고 다른 종속변수를 활용한다면 다른 결과를 얻을 수 있음
 - 예를 들어 해당 기업이 코스닥 및 코스피에 상장하였는지, 기업의 존속 연수 등과 같은 변수를 추가하여 좀 더 엄밀한 분석을 수행하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
 - 또한 기업의 자산총계가 아니라 유동자산을 이용하거나 현금흐름 등을 살펴보는 경우 다른 결과를 얻을 수 있음

VI. 결론 및 제도 개선방안



VI. 결론 및 제도 개선방안

1. 제도 운영 결과 평가

- 공장자동화 물품에 대한 관세감면제도는 「관세법」 제95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공장자동화 물품을 수입할 때 그 관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임
 - 본 제도는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공장자동화 물품에 한해 조세지원을 해 줌으로써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실시하고 있음
 - 본 제도의 정책대상자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중견기업
 - 2012년 이후 대기업 제외(중소기업만 남음)
 - 2014년 이후 중견기업 포함
 - 관세감면율은 30~70%로 경제 여건에 따라 변경되었음
 - 2022년 이후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관세감면율을 상향하여 중소기업은 70%, 중견기업은 50%를 적용하고 있음

- 공장자동화 물품에 대한 관세감면 규모는 최근 3년 평균 약 60억원 정도임
 - 대기업이 포함되었던 2005년에는 관세감면 규모가 약 1,234억원에 이르기도 하였음
 - 2012년 대기업이 제외된 이후 관세감면 규모는 60억원으로 감소하였음
 - 2023년 관세감면 규모는 약 42.9억원으로 추정됨

- 관세감면 대상 물품은 기계류(HS 제84류)가 거의 전부를 차지하고 있고, 이 밖에 전자기기(HS 제85류)와 정밀기기(HS 제90류)가 일부 있음
 - 2023년 관세감면이 적용된 공장자동화 물품 16개 중 15개가 제84류의 기계였으며, 1개의 물품만이 제85류의 전기제품이었음
 - 제90류의 광·정밀기기는 2020년부터 공장자동화 물품 관세감면을 적용받지 않고 있음

- 관세 감면이 적용된 공장자동화 물품은 거의 일본에서 수입하고 있음
 - 관세 감면이 적용된 공장자동화 물품은 수입액 기준으로 90% 이상이 일본에서 수입하고 있음
 - 이 밖에 독일, 중국, 대만 등이 있음
 - 2015년부터 계속하여 공장자동화 물품 관세감면 적용 물품을 수입한 국가는 일본, 독일, 대만, 중국 4개국임
 - 한EU FTA와 한중 FTA 발효로 독일, 중국의 감면 비중이 감소하고 상대적으로 일본의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보임

- (타당성 분석) 공장자동화 물품에 대한 관세감면은 일반적인 관세감면 기준으로 보면 타당성은 낮으나,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 등을 위해 관세를 감면해 주는 정부의 산업지원 측면에서는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
 - 일반적인 관세감면 기준: 국제관례, 관세 적용원칙, 외부효과, 형평성, 편의성 등
 - 외교관물품, 재수입면제, 장애인물품, 여행자휴대품 등
 - (정부 역할 적정성)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 등을 목적으로 정부 정책으로 수행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됨

- (타당성 분석) 공장자동화 물품에 대한 관세감면 혜택은 우리 기업뿐만 아니라 해외생산자(일본)에 귀착되는 효과가 있고, 자원배분의 인위적 왜곡을 발생시킬 수 있어, 감면 대상 물품 및 지원 대상을 보수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음
 - 공장자동화 물품 관세감면액 중에서 원산지가 일본인 수입품의 관세감면액이 대부분임(2023년 기준으로 96.1%)
 - 공장자동화 물품처럼 중간 투입재에 대한 조세감면 혜택은 해당 중간재를 사용하는 구매자(국내 기업)뿐만 아니라 중간재 생산자(해외 기업)와 감면받은 중간재를 이용해 생산된 최종재의 소비자(가격 인하)에게도 혜택이 돌아감
 - 관세감면 대상이 국내에서 제작 곤란한 물품이기에 해외생산자(일본)의 독점성이 강할 수 있고 중간재 생산자의 독점성이 강할수록 관세감면 혜택이 해외생산자(일본)에도 상당 부분 귀착될 가능성이 높음
 - 정부에서 관세감면 대상을 인위적으로 한정하여 자원배분의 왜곡을 발생시킴으로써 시장 중립적인 관세율 정책에 반함

- 국내 제작이 곤란하기에 국내 산업 보호라는 관세 본연의 기능을 통해 해당 국내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음
- 중견기업도 대기업과 마찬가지로 상계관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계속해서 감면액을 주시할 필요가 있음

□ (효과성 분석: 자료) 관세청과 국세청에서 제공한 자료에 KoDATA(한국기업자료) 자료를 병합하여 분석하였음

- 분석 기간은 2021년과 2022년임

□ (효과성 분석) 최소제곱회귀분석 추정 결과, 공장자동화 물품 관세감면이 기업의 투자 및 고용을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남

- 관세감면액이 1% 증가할 때 자산과 고용 모두 0.02% 증가
 - 다만, 탄력성이 1보다 작아 감면효과는 제한적임

<표 VI-1> 공장자동화 물품 관세감면 혜택이 기업활동에 미친 영향(OLS)

(단위: 백만원, %, 명)

구분	ln자산총계	ln연구투자	자기자본 증가율	ln 피보험자 수	순이익 증가율	매출액 증가율
관세감면 여부	0.336*** (0.0618)	-0.0353 (0.383)	-21.39 (108.5)	0.327** (0.158)	-251.0 (583.1)	-64.76 (163.1)
ln관세감면금액	0.0155*** (0.00308)	0.00112 (0.0191)	-1.200 (5.435)	0.02** (0.008)	-11.67 (29.20)	-4.060 (8.169)

관측치 수: 3,399 기업 수: 3,127

주: 1. 로그를 취한 매출액과 부채비율, 연도더미, 연간 공장자동화 물품 수입횟수, 연간 총공장자동화 물품 과세가격(미화), 연간 총공장자동화 물품 관세를 포함하여 분석하였으나 보고는 생략함

2. *, **, ***은 각각 10%, 5%,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

자료: 관세청 내부자료, 국세청 내부자료, KoDATA

□ 하지만 고정효과모형회귀분석 추정 결과에서는 투자 및 고용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VI-2> 공장자동화 물품 관세감면 혜택이 기업활동에 미친 영향(FE)

(단위: 백만원, %, 명)

구분	ln자산총계	ln연구투자	자기자본 증가율	ln 피보험자 수	순이익 증가율	매출액 증가율
관세감면 여부	-0.0833 (0.0801)	0.178 (0.684)	10.60 (405.7)	0.490 (0.461)	-229.7 (1,370)	38.20 (92.27)
ln관세감면금액	-0.00596 (0.00426)	0.0143 (0.0364)	-1.239 (21.62)	0.0333 (0.0245)	-7.747 (72.96)	-0.0411 (4.775)

관측치 수 : 3,399 기업 수 : 3,127

주: 로그를 취한 매출액과 부채비율, 연도더미, 연간 공장자동화 물품 수입횟수, 연간 총공장자동화 물품 과세가격(미화), 연간 총공장자동화 물품 관세를 포함하여 분석하였으나 보고는 생략함
자료: 관세청 내부자료, 국세청 내부자료, KoDATA

□ (예산 사업 중복 여부) 공장자동화 물품에 대한 관세감면 수혜대상이 중소·중견 기업으로, 현재 다수의 중소·중견기업 지원 사업과 중복될 가능성은 높지만 공장 자동화 물품 도입에 대한 지원제도를 유지한다면 관세감면제도가 다른 지원 제도에 비해 장점이 있음

- 공장자동화 물품 설치 등에 대하여 공장자동화 물품 관세감면을 제외한 다른 조세 및 재정을 지원하는 제도는 없음
- 공장자동화 물품에 대한 관세감면제도는 조세지원제도 중에서 중소기업 특별 세액감면, 통합투자세액공제 등과 중복될 수 있음
- 다만, 다른 조세지원제도는 법인세와 연계되어 납부할 세액이 있을 경우에만 유효한 제도이지만, 관세감면은 법인세와 상관없이 적용됨
- 그래서 다른 조세지원제도와 달리 관세감면은 물품 구매비용을 직접 낮추기 (가격 할인) 때문에 기업(납세자)들이 선호할 수밖에 없음
- 공장자동화 물품을 설치한 기업에 재정지원을 할 경우에는 기업 확인 및 물품 확인 등의 행정비용이 발생하지만, 관세감면은 신청 기업 및 물품 확인이 기존 수입신고를 통해 추가적인 행정비용 없이 이루어진다는 장점이 있음

□ 결과적으로 공장자동화 물품에 대한 관세감면제도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 등 정부의 산업지원 측면에서는 타당성이 있지만, 관세감면 혜택이 우리 기업뿐만 아니라 해외생산자(일본)에 귀착되는 효과가 있고, 자원배분의 인위적 왜곡을 발생시킬 수 있어, 감면 대상 물품 및 지원 대상을 보수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음

- 효과성 분석 결과, 관세감면제도가 투자와 고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결과가 도출되었으나, 효과의 크기가 제한적이고 효과가 없다는 분석결과도 있기 때문에 제도를 보수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음
- 감면대상에서 대기업을 제외한 이유 중 하나는 상계관세 문제이며, 중견기업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서 지속적으로 감면액을 주시할 필요가 있음
- 제도를 보수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우선 2022년에 감면율을 상향 조정한 사유(COVID-19)가 없어졌기 때문에, 기존의 관세감면율(50% 및 30%)을 적용하는 것을 검토

2. 제도의 목적 달성 여부 평가

- 공장자동화 물품에 대한 관세감면제도는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공장자동화 물품에 관세감면을 해줌으로써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목적으로 실시하고 있음
- 본 제도가 제조업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목적이므로 관세감면이 기업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음
 - 다양한 기업활동 중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투자, 고용, 순이익 증가율, 매출액 증가율 등을 살펴보았음
 - 생산력을 제고하고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기업 수준에서 적절한 투자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음
 - 관세감면으로 경쟁력이 향상되어 생산량이 증가한다면 고용도 달라질 수 있어서 고용의 변화도 살펴보았음
 - 마지막으로 관세감면으로 기업의 경쟁력이 증가한다면 매출액과 순이익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관세감면이 매출액과 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음
- 최소제곱회귀분석 추정 결과, 공장자동화 물품 관세감면이 기업의 투자 및 고용을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났지만, 회귀분석방법을 변경하여 고정효과모형회귀분석 추

정 결과에서는 투자 및 고용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 최소제곱회귀분석 추정 결과, 관세감면액이 1% 증가할 때 자산과 고용 모두 0.02% 증가시킴
 - 그러나 고정효과모형회귀분석 추정 결과에서는 투자 및 고용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 관세감면이 매출액과 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두 방법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표 VI-1>과 <표 VI-2> 참고

- 이런 결과는, 공장자동화 물품에 대한 관세감면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일정 부분 강화하는 효과가 발생할 수는 있지만, 중소·중견기업의 생산성 개선에는 다양한 요소들이 영향을 주고 있어서, 관세감면제도 하나만으로 기업의 경쟁력 개선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임
- 따라서 공장자동화 물품 관세감면이 기업의 투자 및 고용을 증가시킨다는 분석 결과 등을 감안하여, 본 감면제도의 시행으로 제도 목적을 일정 부분 달성하고 있다고 평가됨

3. 향후 제도 개선 방안

- (제도 운용) RCEP에 의해 관세가 즉시 철폐 혹은 미양허 품목인 일본산 물품과 장기간 감면실적이 없는 품목 등에 대해서는 감면대상 지정을 재고할 필요가 있음
- 공장자동화 물품 관세감면 대상 품목 중에서 RCEP에서 일본산 물품으로 미양허된 품목 31개와 10~20년 이후 관세가 철폐되는 92개 품목은 일본과의 RCEP 협상에서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공산품임에도 관세 철폐 기간을 10~20년으로 설정한 품목들인데, 이 품목들에 대해 관세감면을 적용하는 것은 모순된 상황임
 - 발효 10년차에 관세가 철폐되는 품목은 29개, 15년차 철폐 품목은 5개, 20년차 철폐 품목은 58개임

- 관세가 즉시 철폐되는 HS 10단위 기준 28개 품목은 여타 FTA 협정세율도 0% 이기에 관세감면 대상 공장자동화 물품에서 제외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음
 - 관세감면 대상 공장자동화 물품에서 제외하지 않아도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님

- RCEP 협정이 발효된 2022년 이후 일본이 원산지이면서 관세감면을 적용받은 품목은 HS 10단위 기준 28개이며, 대부분이 RCEP 미양허 품목 또는 장기 관세철폐 품목임³¹⁾
 - 해당 28개 품목은 모두 RCEP 협정에 따른 일본산 물품에 대한 관세가 2024년 현재 유지되고 있음
 - 이 중 13개 품목은 관세를 양허하지 않음
 - 2개 품목은 즉시철폐, 7개 품목은 10단계, 2개 품목은 15단계, 15개 품목은 20단계에 거쳐 관세가 철폐될 예정임³²⁾
 - 관세감면 실적이 있는 품목 중 2개는 관세 즉시철폐와 단계철폐 또는 미양허가 적용되는 품목임
 - 이들 품목은 하나의 품목번호에 여러 양허유형이 적용되는 경우로서 감면을 적용받은 물품이 즉시철폐가 적용되는 세부 품목인지는 알 수 없음
 - 이 중에서 RCEP 협정에서 미양허된 품목이지만, 공장자동화 관세감면 대상에는 포함되면서 관세감면 실적도 다른 품목에 비해 월등히 많은 품목이 있음
 - HS 8443.13-0000(그 밖의 오프셋(offset) 인쇄 기계)은 RCEP 협정에서 미양허된 품목이지만, 관세감면 실적이 다른 품목들보다 월등히 많은 20억~30억원을 상회하고 있음

- 공장자동화 물품 관세감면 대상 품목이지만 감면을 적용받은 실적이 없는 품목 중에서 HS 6단위 기준 6개 품목군은 최근 9년간 감면실적이 없음
 - 제8445.11호(카드기), 제8445.12호(코핑기), 제8448.11호(도비기·자카드기 등), 제8448.19호(방적기 등의 기타 보조기계), 제8448.32호(방적준비기계의 부분품), 제8451.80호(기타 직물·의류용 기계)는 최근 9년간 감면실적이 없음
 - 2015~2023년까지 HS 6단위 기준 21~37개 품목군에서 감면실적이 없음

31) 28개 품목 중 9개 품목은 하나의 품목번호에 2개 이상의 양허유형이 적용되고 있음

32) 28개 품목 중에는 하나의 품목번호에 2개 이상의 양허유형이 적용되고 있어, 중복 카운트되었음

참고문헌

- 강성훈, 『주요국의 재수입 면세제도 비교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6.
- 강성훈·이재선·노영예·김미정, 『주요교역국의 통관제도_일본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6.
- 관세청, 『일본관세정률법해설』, 2012.
- 관세청·일본관세연구회, 『일본세관 연수원 교재Ⅱ』, 2012.
- 기획재정부, 『조세지출예산서』, 각 연도
- 김학수·우석진, 『2017 조세특례 심층평가(I):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7.
- 박기백·정재호, 『조세감면의 합리화와 효율적 운용방안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03.
- 신상화·박지우·이재선, 『주요교역국의 통관제도_미국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7.
- 정재호·정재완, 『관세법 체계의 국제비교 연구: 조세법적 성격을 중심으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5.
- 정재호·강희우, 『[2018 조세특례 임의 심층평가]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 및 공장 자동화 물품 관세 감면』, 기획재정부·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9.
- CBP, *Tariff Classification*, 2004.

- 국가법령정보센터, 「관세법」
_____, 「관세법 시행령」
_____, 「관세법 시행규칙」
_____,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_____, 「외국인투자촉진법」
_____, 「조세특례제한법」
_____, 「중소기업기본법」

관세청, <https://www.customs.go.kr/kcs/ad/tr/trTermView.do?mi=2902&s=&termId=1509>, 검색
일자: 2024. 3. 6.

일본 관세국, https://www.customs.go.jp/tetsuzuki/c-answer/imtsukan/1603_jr.htm, 검색일자:
2024. 3. 11.

EU TAXUD, https://taxation-customs.ec.europa.eu/customs-4/calculation-customs-duties/customs-tariff/suspensions-autonomous-tariff-suspensions_en, 검색일자: 2024. 8. 14.